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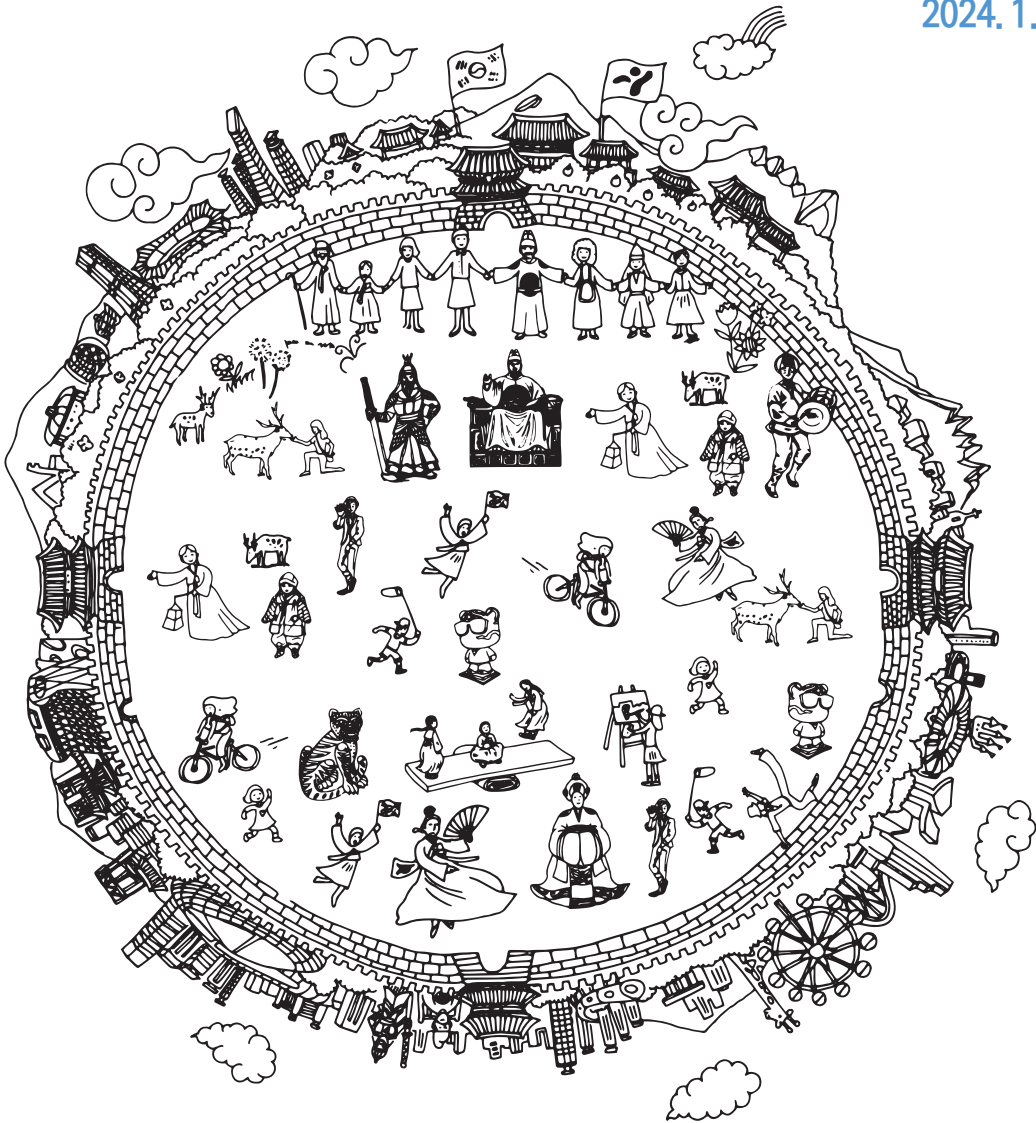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48호
2024. 1. 25.(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146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	---

◆ 고 시

제2024-48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14
제2024-50호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15
제2024-51호	도시관리계획(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
제2024-53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84
제2024-54호	보호수 지정 고시	85
제2024-55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6
제2024-56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	104
제2024-5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6
제2024-58호	건축허가등 제한(연장) 지형도면 정정 고시	139
제2024-5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40

◆ 공 고

제2024-128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61
제2024-13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162
제2024-13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64
제2024-1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65
제2024-16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및 등록 말소사항 공고	166
제2024-162호	수도요금 채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75
제2024-16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176
제2024-167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90
제2024-170호	수도요금 채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91
제2024-173호	<백동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192

제2024-174호	지방세 공시송달	193
제2024-17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공시송달 공고	195
제2024-179호	측량업 등록 공고	196
제2024-183호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197
제2024-185호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미술작품 공모 심의결과 공고	202
제2024-186호	2024년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203
제2024-202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재)공람 공고	207

◆ 구 고 시

제2024-9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최초) 작성 고시(서대문구)	213
제2024-9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221

◆ 구 공 고

제2024-87호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광진구)	228
제2024-101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내 소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동대문구)	231
제2024-1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235
제2024-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239
제2024-1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240
제2024-184호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241
제2024-214호	늘벗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247

◆ 사업소고시

제2024-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60
제2024-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60
제2024-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61
제2024-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61

◆ 사업소공고

제2024-4호	유물구입공고(서울역사박물관)	262
----------	-----------------	-----

◆ 기 타

제2024-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강남소방서)	265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267
제2024-2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68
제2024-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69
제2024-32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70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46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 변경(안 제22조의2)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나.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교육 이수 요건 변경(안 제13조)

－ 예산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시민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 위원 위촉 후 예산학교 교육과정 이수

다.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변경

－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2조 개정, 안 제22조의3 신설)

－ 운영실적이 저조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지원협의회 등 폐지(안 제23~2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2133-68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0825

(2) 우 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재정담당관

(3) 이메일: ala0000@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시와” 를 “시와” 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 및 운영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 을 “공개모집절차”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의회” 를 “분야별 분과위원회” 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7일” 을 “15일” 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관협의회의의 회장” 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관협의회의의 회의는 회장” 을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으로, “소집하고, 민관협의회의” 를 “소집하며, 분과위원회” 로, “출석과” 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민관협의회의의 회장은 민관협의회의” 를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로, “소분과” 를 “소분과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민관협의회의” 를 “분과위원회의” 로, “민관협의회의에” 를 “분과위원회에” 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 ⑦ 분과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제1호 중 “시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규”를 “신규 편성”으로, “사업”을 “사업, 행정운영경비 성격의 사업”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25조부터 제27호까지)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에게”를 “시민 또는 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을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를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로 한다.

-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② ----- <u>시와</u> ----- ----- ----- -----.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민참여예산 <u>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u> 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2. ----- <u>분과위원회</u> (이하 “ <u>분과위원회</u> ”라 한다) 및 <u>운영위원회</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④ ----- ----- ----- ----- -----.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u>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u> 에 의해 선정된 사람	1. ----- ----- <u>공개모집절차</u>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의 및 기능분과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 6. (생략) 제20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의(이하 “민관협의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의 회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의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원칙) ----- -----. 1. 2. (현행과 같음) 3. 분야별 분과위원회 ----- ----- 4.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 ----- 15일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

현행	개정안
에서 호선한다.	라 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u>소집하고</u> , 민관협의회의 위원 과반수의 <u>출석과</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u>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u> ----- ----- <u>소</u> <u>집하며, 분과위원회</u> ----- <u>출</u> <u>석으로 개의하고</u> , ----- -----.
⑤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소분과</u> 를 둘 수 있다.	⑤ <u>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u> ----- ----- <u>소분과위원</u> <u>회</u> -----.
⑥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⑥ <u>분과위원회의</u> ----- -- <u>분과위원회에</u> -----.
<신 설>	⑦ <u>분과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다.</u>
<신 설>	⑧ <u>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 ----- -----.
1. <u>시 전체</u> 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1. <u>사회적 약자</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u>신규</u>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u>사업</u> 은 제외한다.	3. ----- ----- <u>신규편</u> <u>성</u> ----- <u>사업, 행정운영</u> <u>경비 성격의 사업</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4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삭 제>

현행	개정안
제23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협치회의를 포함한다)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삭 제>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8월 초까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삭 제>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 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	<삭 제>

현행	개정안
<u>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u> <u>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⑥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업무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u> <u>⑦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장은 시민 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u> <u>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u> <u>에 대한 의견 제시</u> <u>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u> <u>3.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 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u> <u>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u> <u>5.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u> <u>6. 그 밖의 협의회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u> <u>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생략)</u> <u>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삭 제></u> <u><삭 제></u> <u>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u> <u>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u>시민에게</u>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생략)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 ----- <u>시민 또는 단체에</u> ----- -----. ⑤ ----- <u>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u> ----- ----- <u>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u> ----- -----. ⑥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숲나들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99-2(천)	미래한강본부(시설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 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 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호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76-1번지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영등포구 문래동 76-12번지 일대	17,794.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승인일 : 2022.0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8호 (2020.12.03.)

나. 해제기한 연장 : 2026.1.18.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1)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02-2670-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호

도시관리계획(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6.7.)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8-171호(2008.05.22.)로 재정비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3.9.2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1099호(2023.12.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 2008년 재정비 이후 서울도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중구 충무로 2가~ 충무로 5가 일대	93,575	-	93,575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89호 (1994.06.07.)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3,575	-	93,575	100.0	-
주거 지역	소계	76,588	-	76,588	81.8	-
	제1종일반주거지역	47	-	47	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72호 (2003.09.20.)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27	-	26,727	28.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72호 (2003.09.20.)
	제3종일반주거지역	45,167	-	45,167	48.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72호 (2003.09.20.)
	준주거지역	4,647	-	4,647	5.0	-
상업	소계	16,987	-	16,987	18.2	-
지역	일반상업지역	16,987	-	16,987	18.2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가) 최고고도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④	남산 주변	필동2가 82-1 일대	20m 이하 (완화 시 28m 이하)	1,434,427 (1,18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93호 (1995.04.06.)	※ 관련 고시문에 따름 ① <완화 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②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 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⑤	남산 주변	목정동 1-23 일대	20m 이하 (완화 시 28m 이하)	1,434,427 (10,34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93호 (1995.04.06.)	
기정	⑥	남산 주변	필동2가 30 일대	20m 이하 (완화 시 28m 이하)	1,434,427 (134)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93호 (1995.04.06.)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고도지구 변경 결정시 변경된 사항에 따름

(나) 방화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⑦	퇴계로변	주자동 17-12 ~ 장충동2가 173-1	55,464 (14,149)	건설부 고시 제1963-727호 (1963.12.13.)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4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987	9,774	2	284	1,863	4	382	5,364	3	267	2,331	2	54	216
대로	1	124	383	1	124	383	-	-	-	-	-	-	-	-	-
중로	4	372	5,599	-	-	-	3	309	4,780	1	63	819	-	-	-
소로	7	491	3,792	2	160	1,480	1	73	584	2	204	1,512	2	54	216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연장 면적은 CAD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구역내)	종점 (구역내)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	35~38	간선도로	3,500 (124)	서울역앞	신당동 제4호광장	일반도로	-	총고 70 (36.12.26.)	퇴계로
기정	중로	2	49	15	보조간선 도로	220 (50)	충무로4가 125-11	필동2가 29-2	일반도로	-	내고 449 (58.04.03.)	필동길
기정	중로	2	50	15	보조간선 도로	850 (159)	충무로5가 78-1	필동3가 10-25	일반도로	-	내고 449 (58.04.03.)	서애길
기정	중로	2	-	13~15	국지도로	100	필동2가 1-4	필동2가 83-1	일반도로	-	서고 2008-171 (08.05.22.)	-
기정	중로	3	-	12~15	보조간선 도로	170 (63)	목정동 27-5	목정동 27-1	일반도로	-	서고 354 (64.06.04.)	목정길
기정	소로	1	목정1	7	국지도로	95	목정동 29-23	목정동 29-32	일반도로	-	서고 2021-532 (21.09.23.)	서애로 1길
변경	소로	1	목정1	7	국지도로	135 (40)	목정동 31-21	목정동 26-10	일반도로	-	서고 2021-532 (21.09.23.)	서애로 1길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120	충무로5가 79-2	목정동 31-21	일반도로	-	서고 226 (88.03.28.)	학사길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73	주자동 40-3	주자동 41-10	일반도로	-	-	수표 다릿길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205 (132)	충무로4가 74-2	필동2가 64-2	일반도로	-	건고 432 (63.07.01.)	서애6길
변경	소로	3	41	6	국지도로	205 (132)	충무로4가 74-2	필동2가 64-2	보행자 우선도로	-	건고 432 (63.07.01.)	서애6길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72	충무로5가 88-5	충무로5가 85-4	일반도로	-	서고 2008-171 (08.05.22.)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구역내)	종점 (구역내)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	6	국지도로	72	총무로5가 88-5	총무로5가 85-4	보행자 우선도로	-	서고 2008-171 (08.05.22.)	-
기정	소로	4	11	4	국지도로	180 (44)	남학동 13-2	남학동 16-1	일반도로	-	건고 432 (63.07.01.)	남학당길
기정	소로	4	-	4	국지도로	10	총무로4가 75-4	총무로5가 88-2	일반도로	-	-	서애1길

※ 연정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사항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41	소로 3-41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서애로변 활성화를 위한 사용형태 변경 (일반도로→보행자우선도로)
소로 3-	소로 3-		
소로 1-목정1	소로 1-목정1	・기점변경 ・연장증가 L=95m → 135m, 증)40m	・도로의 연속성을 위해 소로 1-목정1 기점 변경 (필동 지구단위계획과 도로 연계)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필동2가 59-4 일대	315.0	-	315.0	중구 고시 제2017-45호 (17.06.08.)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중구 남학동 12-3	1,957.4	-	1,957.4	서울특별시 고시 제340호 (15.10.29.)	-

(나) 건축물의 규모

■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기준	허용		
5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50 이하	·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임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거 건폐율, 용적률 가중 평균 적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40호(2015.10.29.) 반영

다.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1) 친환경계획 : 변경

(가)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보존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조성 권장	권장사항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 갈수기 수자원 고갈 등 물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하여, 사용한 수돗물 및 우수 등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수도시설 설치 권장 · 집중 호우시 빗물을 저장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여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	권장사항
녹색주차장	· 친환경 개발 및 생태적 측면에서 녹색주차장의 설치 권장	권장사항
신·재생 에너지시설	· 청정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사용으로 대기환경 향상을 위하여 관련 시설 설치 권장	권장사항
에너지절약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설치 권장	권장사항
옥상녹화(전지역)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	권장사항
옥상녹화 설치의무지역	· 도심2축 삼일로변	규제사항

(나)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보존	지구 단위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조성 권장	권장사항
옥상녹화	계획 구역 전체	·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2017.12)」 에 따라 설치 권장	권장사항

구 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벽면녹화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2.4)」 및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에 따라 설치 권장	권장사항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치 권장	권장사항
물재생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2013.7)」 및 「물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2013)」에 따라 설치 권장	권장사항
신·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권장사항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권장	권장사항
생태면적률		· 건축물 신축 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른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며, 관계 법령·지침의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제·개정된 관계 법령·지침준수	규제사항

(2) 방재안전계획 : 신설

■ 방화지구 현황

구 분	지구명	적용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방화지구	주자동 17-12 ~ 장충동2가 173-1	55,464 (14,149)	건고 제1963-727호 (63.12.13.)	-

■ 방재안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 주요 구조부 지붕외벽은 내화구조로 함	방화지구 내
공작물	·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함	방화지구 내
지붕· 방화문 등	·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함	방화지구 내

※ 방재안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름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방재안전	방재안전계획 신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0.05.)」 개정에 따라 방재안전계획 항목 신설

라.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1)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활용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문화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서울특별시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 보호 ·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준수	-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 매장문화재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5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표본조사, 입회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 후 보존 조치 이행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 이행	-
역사적 장소 및 옛 길 흔적 표시		· 대지 내 역사유적터(열실유적지)가 있는 경우 표석 설치 · 설치위치, 형태 등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계획」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표석설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함 · 옛 길 인접 대지는 바닥재료 및 포장패턴을 달리하여 옛 길의 흔적 표시 권장	-
한양도성 주변 역사특성 관리		· 한양도성 열실/훼손 구간 한양도성 흔적표시를 위한 외부공간 확보를 위해 한양도성 추정선 주변 건축한계선 지정(1.5m 후퇴)	-
한옥 등 건축자산 (한옥 등 건축자산법)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특례 및 지원사항은 당해 법령에 따라 관리 ·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시 완화 계획(주차장완화 등) 적용 · 한옥 건축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따라 완화 적용 ·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적용 ·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완화항목(주차장완화 등)적용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보전을 인정받은 경우)	-

구 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역사문화자원 (서울도심기본계획)		·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에 따른 근현대건축, 일식주택 및 문화주택을 대상으로 적용 · 보전방법 및 범위 등은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에 따름 ※ 본 계획 결정 당시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의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에는 해당 계획을 적용함	-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 : 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 접도조건 및 대지규모를 고려하여 최대개발규모 축소 조정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적용대상	계획내용	적용대상	계획내용	
최대 개발규모	퇴계로변	3,000㎡	간선부 (퇴계로변)	1,500㎡	·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과 이면부 일반주거지역간 공동개발시 퇴계로변 최대개발규모 적용 · 이면부는 총무로를 기준으로 구분된 최대개발규모를 통합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제외 - 특별계획구역 - 공동개발계획(지정 또는 권장)이 수립된 대지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지 - 기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결정고시 이전 소유가 동일한 인접 필지는 기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로 인정함) - 별도의 획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퇴계로변 이면부 (총무로 서측)	1,200㎡	이면부	600㎡	
	퇴계로변 이면부 (총무로 동측, 최고고도지구)	800㎡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 최대개발규모의 10%범위 이내의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2)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 : 변경

- 기본방향
 - 획지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공동개발 권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 공동개발 수립기준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지구단위계획 전구역	· 맹지 · 과소필지, 세장형 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공동개발 (권장)		· 기 공동개발(하나의 대지로 사용) · 과소필지, 세장형 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정형화 유도가 필요한 경우	-

(가)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412.2	주자동 17-2	52.6	• 획지선지정 • 획지분할가능선
		주자동 17-12	51.5	
		주자동 18-1	191.1	
		주자동 18-2	11.6	
		주자동 19-2	70.1	
		주자동 19-3	2.6	
		주자동 19-4	32.7	
2	332.8	주자동 17-4	94.5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3
		주자동 17-15	4.6	
		주자동 18-3	233.7	
3	188.3	주자동 6-1	162.6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2
		주자동 6-37	25.7	
4	1,822.30	주자동 43-1	1,693.10	• 획지선 지정
		주자동 44-5	99.2	
		주자동 45-3	30.0	
5	1,957.4	남학동 12-3	1,957.4	• 획지선 지정
6	697.5	남학동 13-2	697.5	• 획지선 지정
7	119.7	필동1가 20-5	118.7	• 획지선 지정
		필동1가 20-6	1.0	
8	470.1	필동1가 21-11	267.8	• 획지선지정 • 획지분할가능선
		필동1가 21-12	202.3	
9	240.4	필동1가 21-2	135.9	• 획지선 지정
		필동1가 21-3	104.5	
10	469.4	필동1가 22-2	469.4	• 획지선 지정
11	409.9	필동1가 36-2	244.6	• 획지선 지정
		필동1가 37-3	165.3	
12	4,130.10	필동1가 30-1	3,567.9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획지13
		필동1가 32-2	17.2	
		필동1가 32-10	16.0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필동1가 32-11	9.6	
		필동1가 34	519.4	
13	132.2	필동1가 35-1	132.2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획지12
14	5,844.8 (5,818)	필동2가 82-1	5,591.2	• 특별계획구역1
		필동2가 82-4	253.6	
15	17,823.3 (17,858)	필동2가 3-1	263.5	• 특별계획구역2
		필동2가 3-5	49.6	
		필동2가 3-6	46.3	
		필동2가 4-3	49.6	
		필동2가 4-5	122.3	
		필동2가 4-7	284.3	
		필동2가 1-4	2.5	
		필동2가 5-2	3.6	
		필동2가 6-2	6.6	
		필동2가 7-2	221.5	
		필동2가 7-3	189.4	
		필동2가 8-2	1.3	
		필동2가 16-6	973.2	
		필동2가 16-7	595.0	
		필동2가 16-8	112.4	
		필동2가 16-9	109.1	
		필동2가 16-12	89.3	
		필동2가 16-13	161.3	
		필동2가 16-24	99.2	
		필동2가 14-2	20.8	
		필동2가 14-5	15.5	
		필동2가 15-2	59.5	
		필동2가 15-7	531.9	
		필동2가 15-8	130.9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필동2가 29-3	6.6	
		필동2가 29-8	111.4	
		필동2가 29-10	56.7	
		필동2가 29-13	101.1	
		필동2가 29-14	2.7	
		필동2가 29-15	1.7	
		필동2가 29-19	1.6	
		필동2가 29-21	78.6	
		필동2가 29-22	51.2	
		필동2가 29-23	60.2	
		필동2가 32-11	273.4	
		필동2가 32-12	2.5	
		필동2가 32-25	21.7	
		필동2가 32-26	70.2	
		필동2가 32-27	1.9	
		필동2가 33-3	54.2	
		필동2가 33-4	90.6	
		필동2가 33-5	43.0	
		총무로4가 116-9	22.1	
		총무로4가 116-10	110.1	
		총무로4가 116-11	27.2	
		총무로4가 116-18	10.8	
		필동2가 30	105.8	
		필동2가 31	79.3	
		필동2가 32-1	139.8	
		필동2가 32-2	39.7	
		필동2가 32-7	253.5	
		필동2가 32-13	38.7	
		필동2가 32-14	72.8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필동2가 15-12	9.9	
		필동2가 15-14	79.3	
		필동2가 17-1	79.3	
		필동2가 17-2	155.7	
		필동2가 17-3	1,088.3	
		필동2가 17-5	128.3	
		필동2가 17-6	16.5	
		필동2가 17-7	55.9	
		필동2가 17-9	124.0	
		필동2가 17-10	99.5	
		필동2가 17-11	4.6	
		필동2가 17-14	28.8	
		필동2가 1-6	210.4	
		필동2가 19-1	1,857.9	
		필동2가 19-2	114.5	
		필동2가 19-3	512.4	
		필동2가 19-4	486.0	
		필동2가 19-36	38.4	
		필동2가 19-37	0.7	
		필동2가 72-15	46.4	
		필동2가 72-18	44.3	
		충무로4가 125-11	705.7	
		충무로4가 125-18	231.4	
		충무로4가 125-24	18.5	
		충무로4가 125-36	50.9	
		충무로4가 125-43	54.1	
		충무로4가 125-45	226.5	
		충무로4가 125-52	34.9	
		충무로4가 125-53	0.9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필동2가 29-2	52.0	
		필동2가 32-18	6.6	
		필동2가 32-19	54.9	
		필동2가 32-20	5.6	
		필동2가 32-21	219.8	
		필동2가 32-24	66.8	
		필동2가 34-1	82.6	
		필동2가 34-2	92.6	
		필동2가 35-1	76.0	
		필동2가 35-2	66.1	
		필동2가 37-1	154.4	
		필동2가 37-3	16.5	
		필동2가 37-5	33.1	
		필동2가 37-6	29.8	
		필동2가 37-7	59.5	
		필동2가 37-8	43.0	
		필동2가 37-9	125.6	
		필동2가 37-10	105.8	
		필동2가 37-11	125.6	
		필동2가 39-2	1.3	
		필동2가 47-5	404.7	
		필동2가 72-14	37.0	
		필동2가 72-16	8.8	
		필동2가 53	273.7	
		필동2가 53-1	1.0	
		필동2가 42-2	0.3	
		필동2가 47	148.1	
		필동2가 47-4	10.3	
		필동2가 48-2	62.5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필동2가 48-3	5.6	
		필동2가 49	109.1	
		필동2가 50	109.4	
		필동2가 51-1	494.2	
		필동2가 51-3	132.2	
		필동2가 54	204.9	
		필동2가 55	138.8	
		필동2가 56-1	66.1	
		필동2가 57	89.3	
		필동2가 58-1	63.9	
		필동2가 58-2	82.6	
		필동2가 58-3	18.8	
		필동2가 58-4	3.2	
		필동2가 59-2	62.1	
		필동2가 59-3	51.9	
		필동2가 59-4	129.9	
		필동2가 60-1	239.7	
		필동2가 61-1	105.8	
		필동2가 61-2	137.5	
		필동2가 61-3	1.0	
		필동2가 62-1	132.2	
		필동2가 63-1	92.5	
		필동2가 64-2	414.5	
16	718	총무로5가 73-1	718.0	• 획지선 지정
17	283	총무로5가 76-2	283.0	• 획지선 지정
18	329.2	총무로5가 78-1	292.2	• 획지선지정
		총무로5가 78-3	22.5	
		총무로5가 78-5	14.5	
19	2,201.70	총무로5가 55-1	2,198.1	• 획지선 지정
		총무로5가 55-13	3.6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20	561.3	충무로5가 52-25	561.3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21, 22
21	997.6	목정동 32-5	86.9	• 획지선지정 • 획지분할가능성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분할된 획지와 획지 22 - 획지 20 • 맞벽건축권장 : 획지22 ※ 도로 용도폐지 가능할 경우 맞벽건축 권장
		목정동 32-6	417.6	
		목정동 32-7	149.1	
		목정동 32-8	123.0	
		목정동 32-12	5.0	
		목정동 26-10	216.0	
22	8,090.4	충무로5가 52-29	4.6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 21에서 분할된 획지 - 획지 20 • 맞벽건축권장 : 획지21 ※ 획지 21의 도로 용도폐지 가능할 경우 맞벽건축권장
		충무로5가 52-33	6.6	
		충무로5가 52-37	7.6	
		목정동 1-1	27.1	
		목정동 1-2	2,138.8	
		목정동 1-17	442.0	
		목정동 1-19	2,321.5	
		목정동 1-21	73.7	
		목정동 1-23	1,885.7	
		목정동 1-24	60.5	
		목정동 1-25	1.7	
		목정동 1-26	208.9	
		목정동 1-28	5.0	
		목정동 1-32	45.3	
		목정동 1-37	64.9	
		목정동 3-19	525.5	
		목정동 3-23	9.9	
		목정동 3-24	247.9	
		목정동 3-37	13.2	
23	1019.7	목정동 3-18	96.9	• 획지선 지정
		목정동 3-40	326.2	
		목정동 26-10	99.0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목정동 32-12	135.9	
		목정동 32-2	53.6	
		목정동 32-3	130.9	
		목정동 32-4	26.4	
		목정동 32-13	75.7	
		목정동 32-14	75.1	
24	396.7	목정동 30-2	109.1	• 획지선 지정
		목정동 30-20	145.5	
		목정동 30-21	142.1	
25	220.5	목정동 30-1	220.5	• 획지선 지정
26	453.5	목정동 27-10	125.6	• 획지선 지정
		목정동 27-11	135.9	
		목정동 27-13	2.6	
		목정동 27-19	124	
		목정동 27-20	55.6	
		목정동 27-21	8.0	
		목정동 27-22	1.8	
27	523	목정동 27-1	347.1	• 획지선 지정
		목정동 27-17	175.9	
28	264.5	장충동2가 173-6	264.5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29
29	175.8	장충동2가 173-5	163.6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28
		장충동2가 173-38	12.2	
30	346.5	장충동2가 173-38	346.5	• 획지선 지정
31	1031.3	장충동2가 173-2	822.4	• 획지선 지정
		장충동2가 173-13	75.0	
		장충동2가 173-17	20.8	
		장충동2가 173-19	20.8	
		장충동2가 173-21	62.8	
		장충동2가 173-44	24.2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장충동2가 173-48	5.3	
32	196.6	장충동2가 173-12	12.0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33
		장충동2가 173-26	15.5	
		장충동2가 173-27	19.8	
		장충동2가 173-28	4.3	
		장충동2가 173-29	40.7	
		장충동2가 173-31	30.4	
		장충동2가 173-32	9.6	
		장충동2가 173-33	23.1	
		장충동2가 173-35	16.5	
		장충동2가 173-36	16.5	
		장충동2가 173-41	0.2	
		장충동2가 173-42	3.5	
		장충동2가 173-51	4.5	
33	99	장충동2가 173-12	14.0	• 획지선지정 • 획지간공동개발권장 : 획지32
		장충동2가 173-23	23.1	
		장충동2가 173-24	10.9	
		장충동2가 173-25	36.4	
		장충동2가 173-43	9.9	
		장충동2가 173-49	3.3	
		장충동2가 173-50	1.4	
34	771.3	장충동2가 173-1	565.0	• 획지선 지정
		장충동2가 173-11	206.3	

(나)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1,822.3	주자동 43-1	1,693.1	• 획지선 지정
		주자동 44-5	99.2	
		주자동 45-3	30.0	
2	119.7	필동1가 20-5	118.7	• 획지선 지정
		필동1가 20-6	1.0	
3	4,130.1	필동1가 30-1	3,567.9	• 획지선 지정
		필동1가 32-2	17.2	
		필동1가 32-10	16.0	
		필동1가 32-11	9.6	
		필동1가 34	519.4	
4	2,245.1	충무로5가 55-1	2,198.1	• 획지선 지정
		목정동 1-25	1.7	
		목정동 1-32	45.3	
5	781.6	목정동 32-5	60.3	• 획지선 지정
		목정동 32-6	366.3	
		목정동 32-7	96.9	
		목정동 32-8	123.0	
		목정동 32-12	5.0	
		목정동 32-15	26.6	
		목정동 32-16	51.3	
		목정동 32-17	52.2	
6	7,756.9	목정동 1-2	2,138.8	• 획지선 지정
		목정동 1-17	442.0	
		목정동 1-19	2,321.5	
		목정동 1-21	73.7	
		목정동 1-23	1,765.9	
		목정동 1-43	119.8	
		목정동 1-26	208.9	
		목정동 1-37	160.8	
		목정동 3-19	525.5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1,031.3	장충동2가 173-2	822.4	• 획지선 지정
		장충동2가 173-44	24.2	
		장충동2가 173-21	62.8	
		장충동2가 173-19	20.8	
		장충동2가 173-17	20.8	
		장충동2가 173-48	5.3	
		장충동2가 173-13	75.0	

■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위치	비고
1	주자동 43-1, 44-5, 45-3	• 기 공동개발
2	필동1가 20-5, -6	• 기 공동개발
3	필동1가 30-1, 32-2, -10, 32-11, 34	• 기 공동개발
4	충무로5가 55-1 목정동 1-25, -32	• 기 공동개발
5	목정동 32-5, -6, -7, -8, -12, -15, -16, -17	• 기 공동개발
6	목정동 1-2, -17, -19, -21, -23, -26, -37, -43 목정동 3-19	• 기 공동개발
7	장충동2가 173-2, 173-13, -17, -19, -21, -44, -48	• 기 공동개발

(3) 대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주자동 42-2	245.6		필동1가 23-4	145.4	
			필동1가 23-5	158.7	
주자동 43-5	109.1	• 공동개발지정	필동1가 23-8	89.3	
주자동 43-2	178.5		필동1가 23-9	86	
주자동 43-8	8.3		필동1가 23-11	89.3	
주자동 44-1	101	• 공동개발지정	필동1가 23-10	79.3	
주자동 44-2	159.4		필동1가 28-1	69.4	• 공동개발지정
주자동 44-6	0.7		필동1가 28-2	72.7	
주자동 45-1	12.4		필동1가 29-1	39.7	
주자동 49-3	218.9		필동1가 29-2	29.8	
주자동 49-1	247.3		필동1가 32-8	127.3	
주자동 49-16	226.8		필동1가 32-6	244.6	• 공동개발지정
남학동 14-2	295.6		필동1가 32-7	165.3	
남학동 14-1	112.4	• 공동개발지정	필동2가 82-3	631.4	• 공동개발지정
남학동 15-1	91.2		필동2가 82-15	1051.2	
남학동 16-1	195		필동2가 15-8	130.9	
필동1가 21-13	225.1		충무로5가 77-2	55.5	
필동1가 21-14	239.5		충무로5가 77-3	47.9	
필동1가 21-4	152.4	• 공동개발지정	충무로5가 81	86	
필동1가 21-5	195.4		충무로5가 79-1	429	• 공동개발지정
필동1가 21-6	135.5	• 공동개발지정	충무로5가 79-5	105.8	
필동1가 21-18	148.8		충무로5가 82-1	29.8	
필동1가 21-7	318.7		충무로5가 82-3	35.7	
필동1가 23-13	59.5		충무로5가 82-6	38	
필동1가 23-14	59.5	• 공동개발지정	충무로5가 82-7	39	• 공동개발지정
필동1가 23-15	62.8		충무로5가 83	62.8	
필동1가 23-16	62.8	• 공동개발지정	충무로5가 82-2	114.1	
필동1가 23-17	69.4				
필동1가 23-1	152	• 공동개발지정	충무로5가 82-4	40.7	• 공동개발지정
			충무로5가 82-5	71.2	
필동1가 23-3	99.2		충무로5가 82-9	2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충무로5가 84-1	669		목정동 30-5	83.3	• 공동개발지정
충무로5가 86-1	86		목정동 30-15	86.3	
충무로5가 85-1	39.8	• 공동개발지정	목정동 30-6	355.7	
충무로5가 85-4	63.8		목정동 30-8	192.7	
충무로5가 85-2	178.5		목정동 30-9	138.2	
충무로5가 86-2	50.2	• 공동개발권장 : 충무로5가 86-3	목정동 30-10	99.8	
충무로5가 86-3	52.2	• 공동개발권장 : 충무로5가 86-2	목정동 30-12	71.7	• 공동개발지정
충무로5가 87-1	82.6		목정동 30-14	3.3	
충무로5가 87-2	79.3		목정동 30-13	85.6	
충무로5가 87-3	128.9		목정동 31-1	157.7	
충무로5가 88-2	52.6	• 공동개발권장 : 충무로5가 88-3	목정동 31-2	319.2	
충무로5가 88-3	108.1	• 공동개발권장 : 충무로5가 88-2	목정동 31-3	134.5	
충무로5가 88-4	74.4		목정동 31-4	847.9	
충무로5가 88-5	66.8		목정동 31-5	104.5	
충무로5가 79-2	1664.2	• 공동개발권장 : 목정동 1-33	목정동 31-7	1406.2	
목정동 1-33	1325.4	• 공동개발권장 : 충무로5가 79-2	목정동 31-10	171.9	
목정동 30-3	380.5		목정동 31-21	133.9	
목정동 30-22	139.8		목정동 27-2	138.5	• 공동개발지정
목정동 30-23	179.2		목정동 27-3	155.4	
목정동 30-24	135.5		목정동 27-4	93.2	
목정동 30-25	59.5		목정동 27-5	45.6	
목정동 30-4	157	• 공동개발지정	목정동 27-6	138.8	
목정동 30-27	127.3		목정동 27-7	101.8	
목정동 30-17	124.3	• 공동개발지정	목정동 27-8	85.6	
목정동 30-29	108.4		목정동 27-9	162.3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필동3가 15	623.5		필동3가 18-9	257.1	
필동3가 12-1	187.3		필동3가 18-11	139.9	
필동3가 12-2	2.3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8-12	111.7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8-13	90	
필동3가 16-2	227.3		필동3가 18-14	90.5	
필동3가 13-1	115.2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8-15	85.5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8-16, -17
필동3가 14	99.5				
필동3가 16-1	198		필동3가 18-16	95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8-15, -17
필동3가 16-3	159.7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8-17	131.6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8-15, -16
필동3가 16-4	87.8		필동3가 19-1	193.8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6-5	9.7		필동3가 19-20	6	
			필동3가 19-21	15.8	
필동3가 17-1	21.3	•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7-6	필동3가 19-5	81.4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6, -7
필동3가 17-5	26.2				
필동3가 17-2	35.6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9-6	92.2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5, -7
필동3가 17-3	32.6		필동3가 19-7	105.3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5, -6
필동3가 17-4	24.7		필동3가 19-8	92.7	
필동3가 17-6	42.4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7-1, -5	필동3가 19-9	80.4	
필동3가 18-3	344.9		필동3가 19-12	75.6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13, -17
필동3가 18-4	221.2		필동3가 19-13	69.4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12, -17
필동3가 18-5	154.9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9-17	118.9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12, -13
필동3가 20-4	14.7		필동3가 20-1	5.9	
필동3가 18-6	174.6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8-7	151.2	
필동3가 20-5	12.7		필동3가 18-8	151.5	
필동3가 20-34	3.6				

■ 변경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필동2가 58-1	63.9	146.5	· 공동개발(지정)	목정동 27-13	2.6	58.2	· 공동개발(지정)
필동2가 58-2	82.6			목정동 27-20	55.6		
필동2가 57	89.3	108.1	· 공동개발(지정)	필동2가 32-13	38.7	111.5	· 공동개발(지정)
필동2가 58-3	18.8			필동2가 32-14	72.8		
필동2가 47-4	10.3	504.5	· 공동개발(지정)	주자동 19-2	70.1	105.4	· 공동개발(지정)
필동2가 51-1	494.2			주자동 19-3	2.6		
목정동 30-12	71.7	75.0	· 공동개발(지정)	주자동 19-4	32.7		
목정동 30-14	3.3			충무로4가 116-9	22.1	253.5	· 공동개발(지정)
필동1가 23-5	158.7	244.7	· 공동개발(지정)	필동2가 37-9	125.6		
필동1가 23-9	86.0			필동2가 37-10	105.8		
필동2가 15-12	9.9	89.2	· 공동개발(지정)	필동2가 37-6	29.8	89.3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15-14	79.3			필동2가 37-7	59.5		
필동3가 16-3	163.3	262.5	· 공동개발(지정)	필동2가 47	148.1	257.2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6-4	89.9			필동2가 49	109.1		
필동3가 16-5	9.3			목정동 27-2	138.5	293.9	· 공동개발(권장)
주자동 43-2	178.5	295.9	· 공동개발(지정)	목정동 27-3	155.4		
주자동 43-5	109.1			주자동 18-1	191.1	202.7	· 공동개발(권장)
주자동 43-8	8.3			주자동 18-2	11.6		
필동2가 32-1	138.4	179.5	· 공동개발(지정)	주자동 17-2	52.6	104.1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32-2	39.7			주자동 17-12	51.5		
필동2가 32-28	1.4			필동3가 17-3	35.3	61.1	· 공동개발(권장)
충무로5가 52-29	4.6	382.4	· 공동개발(지정)	필동3가 17-4	25.8		
충무로5가 52-33	6.6			필동3가 17-2	35.8	79.5	· 공동개발(권장)
충무로5가 52-37	7.6			필동3가 17-6	43.7		
목정동 1-1	27.1			주자동 17-4	99.5	104.1	· 공동개발(권장)
목정동 1-28	5.0			주자동 17-15	4.6		
목정동 3-24	247.9			주자동 6-1	162.6	185.6	· 공동개발(권장)
목정동 3-37	13.2			주자동 6-37	23.0		
목정동 1-24	60.5			필동2가 17-1	79.3	152.0	· 공동개발(권장)
목정동 3-23	9.9			필동2가 17-13	72.7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필동3가 18-5	159.7	176.2	· 공동개발(권장)	장충동2가 173-23	23.1	128.1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20-4	16.5			장충동2가 173-24	10.9		
목정동 31-10	171.9	305.8	· 공동개발(권장)	장충동2가 173-25	36.4		
목정동 31-21	133.9			장충동2가 173-26	15.5		
목정동 30-5	83.3	169.6	· 공동개발(권장)	장충동2가 173-27	19.8		
목정동 30-15	86.3			장충동2가 173-28	4.3		
목정동 30-4	157.0	284.3	· 공동개발(권장)	장충동2가 173-42	3.5		
목정동 30-27	127.3			장충동2가 173-43	9.9		
목정동 27-11	135.9	143.9	· 공동개발(권장)	장충동2가 173-49	3.3		
목정동 27-21	8.0			장충동2가 173-50	1.4		
주자동 44-1	101.0	273.5	· 공동개발(권장)	충무로5가 88-2	52.6	301.9	· 공동개발(권장)
주자동 44-2	159.4			충무로5가 88-3	108.1		
주자동 44-6	0.7			충무로5가 88-4	74.4		
주자동 45-1	12.4			충무로5가 88-5	66.8		
필동2가 3-1	263.5	363.0	· 공동개발(권장)	충무로5가 76-2	283.0	472.4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3-5	49.6			충무로5가 77-2	55.5		
필동2가 3-6	46.3			충무로5가 77-3	47.9		
필동2가 5-2	3.6			충무로5가 81	86.0		
필동2가 17-7	55.9	308.2	· 공동개발(권장)	필동1가 23-13	59.5	314.0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17-9	124.0			필동1가 23-14	59.5		
필동2가 17-10	99.5			필동1가 23-15	62.8		
필동2가 17-14	28.8			필동1가 23-16	62.8		
필동2가 35-1	76.0	253.5	· 공동개발(권장)	필동1가 23-17	69.4	2215.1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36-2	6.6			충무로4가 125-18	231.4		
필동2가 37-1	154.4			충무로4가 125-36	50.9		
필동2가 37-3	16.5			충무로4가 125-52	34.9		
필동2가 30	105.8	471.7	· 공동개발(권장)	충무로4가 125-53	0.9		
필동2가 31	79.3			필동2가 19-1	1,857.9		
필동2가 32-21	219.8			필동2가 19-36	38.4		
필동2가 32-24	66.8			필동2가 19-37	0.7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필동1가 21-4	152.4	347.8	• 공동개발(권장)	총무로5가 78-1	292.2	329.2	• 공동개발(권장)
필동1가 21-5	195.4			총무로5가 78-3	22.5		
총무로5가 82-1	29.8	205.3	• 공동개발(권장)	총무로5가 78-5	14.5	188.4	• 공동개발(권장)
총무로5가 82-3	35.7			필동3가 18-6	175.2		
총무로5가 82-6	38.0			필동3가 20-5	9.6		
총무로5가 82-7	39.0			필동3가 20-34	3.6	113.9	• 공동개발(권장)
총무로5가 83	62.8			총무로5가 82-4	40.7		
총무로5가 79-1	429.0	534.8	• 공동개발(권장)	총무로5가 82-5	71.2	113.9	• 공동개발(권장)
총무로5가 79-5	105.8			총무로5가 82-9	2.0		
필동1가 21-2	135.9	240.4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12	72.7	264.1	• 공동개발(권장)
필동1가 21-3	104.5			필동3가 19-13	72.7		
필동1가 21-6	135.5	284.3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17	118.7	100.8	• 공동개발(권장)
필동1가 21-18	148.8			장충동2가 173-31	30.4		
총무로5가 85-1	39.8	103.6	• 공동개발(권장)	장충동2가 173-32	9.6		
총무로5가 85-4	63.8			장충동2가 173-33	23.1		
목정동 32-1	135.9	422.5	• 공동개발(권장)	장충동2가 173-35	16.5		
목정동 32-2	53.6			장충동2가 173-36	16.5		
목정동 32-3	157.3			장충동2가 173-41	0.2		
목정동 32-13	75.7			장충동2가 173-51	4.5		
필동3가 19-1	197.5	217.9	• 공동개발(권장)	총무로5가 86-2	50.2	102.4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9-20	5.8			총무로5가 86-3	52.2		
필동3가 19-21	14.6			필동3가 17-1	20.8	46.4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17-5	128.3	149.4	• 공동개발(권장)	필동3가 17-5	25.6		
필동2가 17-6	16.5			필동2가 4-3	49.6	171.9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17-11	4.6			필동2가 4-5	122.3		
필동2가 32-18	6.6	61.5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16-13	161.3	260.5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32-19	54.9			필동2가 16-24	99.2		
필동2가 32-20	5.6			필동1가 29-1	39.7	69.5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55	138.8	272.0	• 공동개발(권장)	필동1가 29-2	29.8		
필동2가 61-3	1.0			필동1가 28-1	69.4	142.1	• 공동개발(권장)
필동2가 62-1	132.2			필동1가 28-2	72.7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충무로5가 87-1	82.6	290.8	· 공동개발(권장)	목정동 27-19	124.0	-
충무로5가 87-2	79.3			목정동 27-22	1.8	-
충무로5가 87-3	128.9			목정동 30-1	220.5	-
장충동2가 173-38	12.2	-	-	목정동 33	1,272.7	-
필동2가 64-2	414.5	-	-	목정동 30-2	109.1	-
충무로4가 74-2	6.3	-	-	목정동 30-3	380.5	-
충무로4가 74-6	3.7	-	-	목정동 30-6	355.7	-
충무로4가 74-7	14.9	-	-	목정동 30-8	192.7	-
충무로4가 75-4	14.9	-	-	목정동 30-9	138.2	-
충무로4가 75-5	2.0	-	-	목정동 30-10	99.8	-
충무로4가 116-10	110.1	-	-	목정동 30-13	85.6	-
충무로4가 125-11	705.7	-	-	목정동 30-17	124.3	-
충무로5가 52-25	561.3	-	-	목정동 30-20	145.5	-
충무로5가 55-13	3.6	-	-	목정동 30-21	142.1	-
충무로5가 67-1	3.8	-	-	목정동 30-22	139.8	-
충무로5가 67-2	121.8	-	-	목정동 30-23	179.2	-
충무로5가 73-1	718.0	-	-	목정동 30-24	135.5	-
충무로5가 82-2	114.1	-	-	목정동 30-25	59.5	-
충무로5가 84-1	669.0	-	-	목정동 30-29	108.4	-
충무로5가 85-2	178.5	-	-	목정동 31-1	157.7	-
충무로5가 86-1	86.0	-	-	목정동 31-2	319.2	-
충무로5가 90	1,620.3	-	-	목정동 31-3	134.5	-
목정동 1-43	119.8	-	-	목정동 31-4	847.9	-
목정동 3-18	96.9	-	-	목정동 31-5	104.5	-
목정동 3-40	326.2	-	-	목정동 31-7	1,406.2	-
목정동 27-1	347.1	-	-	목정동 32-14	75.1	-
목정동 27-4	93.2	-	-	목정동 27-17	175.9	-
목정동 27-5	45.6	-	-	필동1가 20-7	8.9	-
목정동 27-6	138.8	-	-	필동1가 21-7	318.7	-
목정동 27-7	101.8	-	-	필동1가 21-10	356.7	-
목정동 27-8	85.6	-	-	필동1가 21-11	267.8	-
목정동 27-9	162.3	-	-	필동1가 21-12	202.3	-
목정동 27-10	125.6	-	-	필동1가 21-13	225.1	-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필동1가 23-4	145.4	-	필동2가 37-5	33.0	-
필동1가 23-8	89.3	-	필동2가 37-11	125.6	-
필동1가 23-10	79.3	-	필동2가 39-2	1.3	-
필동1가 23-11	89.3	-	필동2가 42-2	0.3	-
필동1가 32-7	135.0	-	필동2가 48-2	62.5	-
필동1가 32-8	127.3	-	필동2가 48-3	5.6	-
필동1가 35-1	132.2	-	필동2가 50	109.4	-
필동1가 36-2	244.6	-	필동2가 51-3	132.2	-
필동1가 37-3	165.3	-	필동2가 53	273.7	-
필동2가 4-7	284.3	-	필동2가 53-1	1.0	-
필동2가 7-7	221.5	-	필동2가 54	204.9	-
필동2가 7-3	189.4	-	필동2가 56-1	66.1	-
필동2가 8-2	1.3	-	필동2가 59-2	65.1	-
필동2가 14-2	95.8	-	필동2가 59-3	51.9	-
필동2가 15-7	531.9	-	필동2가 59-4	129.9	-
필동2가 15-8	130.9	-	필동2가 60-1	239.7	-
필동2가 16-6	973.2	-	필동2가 61-1	105.8	-
필동2가 16-7	595.0	-	필동2가 61-2	137.5	-
필동2가 16-8	112.4	-	필동2가 63-1	92.5	-
필동2가 16-9	109.1	-	필동2가 72-18	44.3	-
필동2가 17-2	155.7	-	필동2가 82-1	5,591.2	-
필동2가 17-3	1,088.3	-	필동2가 82-3	1,682.6	-
필동2가 19-3	512.4	-	필동3가 12-1	183.4	-
필동2가 19-4	486.0	-	필동3가 15	627.7	-
필동2가 29-2	52.0	-	필동3가 16-2	630.5	-
필동2가 29-8	111.4	-	필동3가 18-3	343.8	-
필동2가 29-14	2.7	-	필동3가 18-4	219.7	-
필동2가 29-15	1.7	-	필동3가 18-7	153.1	-
필동2가 32-11	273.4	-	필동3가 18-8	148.8	-
필동2가 32-12	2.5	-	필동3가 18-9	261.1	-
필동2가 34-1	82.6	-	필동3가 18-11	135.5	-
필동2가 34-2	101.9	-	필동3가 18-12	115.7	-
필동2가 35-2	66.1	-	필동3가 18-13	92.6	-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필동3가 18-14	92.6	-	남학동 15-1	91.2	-
필동3가 18-15	89.3	-	남학동 16-1	195.0	-
필동3가 18-16	95.9	-	주자동 18-3	233.7	-
필동3가 18-17	131.2	-	주자동 42-2	245.6	-
필동3가 19-5	86.0	-	주자동 49-1	247.3	-
필동3가 19-6	95.5	-	주자동 49-3	218.9	-
필동3가 19-7	106.8	-	주자동 49-16	226.8	-
필동3가 19-8	89.3	-	장충동2가 173-1	565.0	-
필동3가 19-9	79.3	-	장충동2가 173-3	346.5	-
필동3가 20-1	5.6	-	장충동2가 173-5	163.6	-
필동1가 23-3	99.2	-	장충동2가 173-6	264.5	-
필동1가 23-1	152.0	-	장충동2가 173-11	206.3	-
남학동 12-3	1,957.4	-	장충동2가 173-29	40.7	-
남학동 13-2	651.1	-	필동1가 21-14	239.5	-
남학동 14-1	112.4	-	필동1가 22-2	469.4	-
남학동 14-2	295.6	-			

※ 필동2가 29-15, 총무로4가 74-2, 6, 7, 75-4, 5, 총무로 5가 67-1은 도시계획도로변에 위치하여 도로 및 보도로 사용 중인 과소필지로서 현황을 유지함

나.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가)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	전층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병원부속시설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일반상업지역
	㉡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A) 간선변	전층	-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병원부속시설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 유사시설(경마장, 경정장등) - 운수시설 -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퇴계로변
	(B) 이면부	전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담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담골프연습장 - 공장(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퇴계로 이면 주거지역

(나)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A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연예장에 한함),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에 한함)	-
	B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연예장에 한함), 집회장(예식장에 한함),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	-
	C		- 판매시설(소매시장 및 상점(게임제공업소 제외)에 한함)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연예장에 한함), 전시장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에 한함)	-
	D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연예장에 한함),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에 한함)	-
변경	간선변	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연예장에 한함), 전시장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이면부	서애로변, 필동로변, 남산골 한옥마을 진입로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 서울도심기본계획에 따라 저층부 보행친화적 상업용도 유도

(다) 지정용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	비고
기정	-	남학동 13-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공용시설 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 건폐율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완화기준 준수 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특별계획구역은 계획지침에 따름

■ 건폐율 완화

구분		적용대상	완화기준	완화내용
기정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	전지역	•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대지면적)] 이내 ※ 단,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건폐율까지 완화적용
변경	리모델링에 따른 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용의 완화 항목 중 건축법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에 따른 기준 완화
	일반상업지역 높이 계획에 따른 건폐율 완화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로 건축 시 건축물 저층부(4층 이하)에 대해 건폐율 80%까지 완화 (방화지구 내 건폐율 90% 이하 완화)	•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적용 불가

※ 「건축물 저층부」라 함은 건축물 1층에서 4층이하 부분을 말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6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폐율을 90%이하 완화

- 대상 : 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 등 방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 완화적용 내용 : 옥외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등 방재시설에 해당하는 면적만 완화적용, 시행령에서 정한 건폐율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계획지침에 따름

(나) 용적률

■ 용적률계획 결정(변경)조서

적용지역		기정			변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0% 이하	20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특화가로변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600% 이하		450% 이하	600% 이하		-
남학동 13-2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83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830% 이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6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4조 적용

■ 용적률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기정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변경	· 일반주거지역 개발동력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체계 개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기정 200% 이하에서 230% 이하로 변경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기정 500% 이하에서 450% 이하로 변경	·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높이계획 조정과 그에 따른 밀도 조정	-

■ 상한 용적률

구분	내용	산출방법 (%)
기정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로 제공 (공공시설부지 제공의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 이내 ※ a: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변경	- 공공시설등 제공 시 인센티브 - 공공시설등을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따름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 \text{ 토지} + 1.0 \times a \text{ 현금} \cdot \text{건축물})$ a 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를 포함 a 현금 · 건축물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및 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가중평균한 용적률) ※ 건축물 계수 완화(1.2)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공공시설이란 권역생활서비스 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이 3천㎡ 이상인 경우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포함) -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권역생활서비스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 계수를 적용) -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시설 - 공공의 정책사업, 방재안전 시설 확보 등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a 값의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은 기부채납 부지는 제외하되 현금 · 건축물 환산부지는 포함
	- 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8항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frac{\text{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text{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frac{\text{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text{건물 연면적}}$ 이내

구분	내용	산출방법 (%)																																																							
변경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 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경미한 변경)을 통해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내 ※ 서울시 녹색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친환경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초과시 기부채납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전수요조사 의무 시행 ※ ZEB인증과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관련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 불가 및 건축물에 대한 준공 · 사용승인 ·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인증등급 등 증빙서류 제출	• 허용용적률 $\times (1+0.7\times(\sum\text{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beta)))$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1) ① 및 ② 항목 중복적용 불가 2) ①~③항목 중복적용시 완화비율 최대 15% 적용 3)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후 시행 <table><tr><th colspan="6">ZEB 인증</th></tr><tr><th>ZEB등급</th><th>ZEB1</th><th>ZEB2</th><th>ZEB3</th><th>ZEB4</th><th>ZEB5</th></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able>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table><tr><th colspan="3">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th></tr><tr><th>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th><th>최우수 (그린1등급)</th><th>우수 (그린2등급)</th></tr><tr><td>1++등급</td><td>9%</td><td>6%</td></tr><tr><td>1 등급</td><td>6%</td><td>3%</td></tr></table> <table><tr><th colspan="4">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r><tr><th>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h><th>15%</th><th>20%</th><th>25%</th></tr><tr><td>완화비율</td><td>이상</td><td>이상</td><td>이상</td></tr><tr><td></td><td>5%</td><td>10%</td><td>15%</td></tr></table> <table><tr><th colspan="3">장수명주택 인증</th></tr><tr><th>장수명주택 인증등급</th><th>최우수</th><th>우수</th></tr><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ZEB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20%	25%	완화비율	이상	이상	이상		5%	10%	15%	장수명주택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ZEB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20%	25%																																																						
완화비율	이상	이상	이상																																																						
	5%	10%	15%																																																						
장수명주택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 3]을 따름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 완화

구분	내용	산출방법 (%)
신설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계획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정 용적률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가능

■ 허용용적률(기정)

완화항목			완화기준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위 개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a (필지수 별)	· 획지구성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n = 1개 일 때 a = 0.08 n = 2~3개 일 때 a = 0.1 n = 4개 이상 일 때 a = 0.12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5	-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a (필지수 별)	·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n = 2~3개 일 때 a = 0.1 n = 4개 이상 일 때 a = 0.1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비대면적의 합계)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면적 × 0.2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면적의 20% 이상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 지침도에 지정된 위치 준수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1.2	· 건축한계선 준수에 의한 후퇴부분의 면적으로 산정 · 미관지구내 제공의무면적 제외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1.0	-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2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이내 적용 (법정 조경면적 제외)

완화항목			완화기준	비고
	중수도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 총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장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이상 설치시 적용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1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8	• 에너지절감율 33.5% 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81점 이상 •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 이상
		2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에너지절감율 23.5%~33.5% 미만 •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 미만 •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 미만

- ※ 획지계획에 관한 인센티브 적용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중 가장 높은 인센티브만 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대지 내 공지와 대지 내 도로 등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예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공보행도로 조성시 등)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20%이상은 환경친화적건축물 준수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완화항목으로는 대체 불가함
- ※ 에너지 절감율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 ※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 ※ 친환경건축물 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 '에너지 절약' 완화항목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건축물 포함)에 한하여 적용

■ 허용용적률(변경)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개념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점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계획유도 항목 이행 시 (70% 이내)	중점 계획항목 이행 시 (30% 이상)	공공시설등 제공시 등

-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 중점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 연면적 1만㎡ 초과 건축물(특별계획구역)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중점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 ※ 중점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중점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단,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900㎡ 이하)에 대해서는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 ※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 ※ 각 항목별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 시 중복 산정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
- ※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하여 필지수에 따라 상한용적률을완화받는경우 공동개발에 따른 허용용적률완화 불가
- ※ 둘 이상의 필지에 기 공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단, 기 공동개발 대지의 판단 시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일반)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180%/200% 이하	
중점계획목표		공동개발로 맹지 및 과소필지를 해소하고, 정주환경 개선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인센티브	생활SOC문화인프라	기준용적률 $\times a$	• $a = 0.04$
계획유도 인센티브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times a$	• $a = 0.70$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	• 지정 : $a = 0.03$ • 권장 : $a = 0.04$ • 자율적 : $a = 0.02$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특화가로변)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특화가로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180%/200% 이하	
중점계획목표		특화가로와 연계한 1층 전면 가로활성화용도 지정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인센티브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times a$	• $a = 0.02$ - 가로활성화 상업용도 등 별도 결정한 경우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옛길/옛물길 복원 및 재현	기준용적률 $\times a$	• $a = 0.07$
	역사 문화적 건축물 장소의 보전·활용	기준용적률 $\times a$	• $a = 0.07$
계획유도 인센티브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 면적 $\times a$	• $a = 0.70$
	공동개발(지정,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a$	• 지정 : $a = 0.03$ • 권장 : $a = 0.04$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230%/250% 이하	
중점계획목표		공동개발로 맹지 및 과소필지를 해소하고, 정주환경 개선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인센티브	생활SOC문화인프라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4$
계획유도 인센티브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60$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지정 : $\alpha = 0.02$ • 권장 : $\alpha = 0.03$ • 자율적 : $\alpha = 0.01$

－ 제3종일반주거지역 (특화가로변)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특화가로변)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230%/250% 이하	
중점계획목표		특화가로와 연계한 1층 전면 가로활성화용도 지정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인센티브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1$ － 가로활성화 상업용도 등 별도 결정한 경우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옛길/옛물길 복원 및 재현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6$
	역사 문화적 건축물 장소의 보전·활용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alpha = 0.06$
계획유도 인센티브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 = 0.60$

구분		계획내용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지정 : $\alpha = 0.02$ - 권장 : $\alpha = 0.03$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450%/600% 이하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인센티브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연면적) $\times 0.05$	· 지상층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이상 설치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times 0.05$	-
	옛길/옛물길 복원 및 재현	기준용적률 $\times 0.2$	-
	역사 문화적 건축물 장소의 보전·활용	기준용적률 $\times 0.2$	-
계획유도 인센티브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0.5$	-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0$	-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지정 : 0.02 - 권장 : 0.03 - 자율적 : 0.01

※ 옛 길 복원 및 재현은 ①옛 길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재료를 사용하여 도로포장, ②옛 길 주변 녹화, ③옛길 구간을 표시한 지도, 과거 옛 길의 스토리를 담은 안내판 설치를 말한다.

※ 옛 물길 복원 및 재현은 ①지상부 설계전 조성, ②바닥표시를 통해 옛 물길의 흔적 조성, ③옛 물길 주변 녹화 및 투수성 포장, ④옛 물길 구간을 표시한 지도, 과거 옛 물길의 스토리를 담은 안내판 설치를 말한다.

※ 옛 길/옛 물길 복원 및 재현,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마련에 따른 용적을 완화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가능

※ 역사문화적건축물·장소란 서울도심기본계획에 명시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근현대건축자산 등을 말한다.

※ 생활SOC문화인프라는 2030서울생활권계획 상 부족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육시설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을 연면적의 20%이상 설치한 경우 적용(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 계획유도 인센티브(전체)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친환경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20%이내 적용 (법정 조경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기준용적률×0.04	• 총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 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장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시 적용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5이내

(2)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높이계획(변경)

구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고
기정	퇴계로 및 삼일대로 변에 면한 지역	50m 이하	· 최고고도지구 -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적용(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70호 2005.09.08)
	퇴계로변 이면부 주거지역	28m 이하	
	고도지구 해당지역	5층, 20m 이하	
변경	퇴계로 및 삼일로 변에 면한 지역(일반상업지역)	기준 높이 : 30m 이하 최고 높이 : 50m 이하	· 서울도심기본계획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 녹지 등 공공공간 확보, 지역 특성 강화 시 완화
	퇴계로변 이면부 주거지역	기준 높이 : 28m 이하 최고 높이 : 40m 이하	· 관련계획(남산 고도지구 높이완화)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고도지구 해당지역	20m 이하 (28m 이하까지 완화)	-

※ 고도지구 관련결정사항 변경시 해당 기준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높이 기준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 20m 범위 내 높이 완화 가능

※ 세부조건은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중 아래 사항 적용

- 높이완화 인센티브 제공 조건 : 공공공간 확보(녹지 등), 역사 및 지역특성 강화

■ 건축물 높이계획(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 퇴계로 및 삼일대로 변에 면한 지역의 최고높이 50m이하 변경 결정	· 서울도심 기본계획 제시 사항(상업지역 기준높이 30m, 추가 20m 까지 완화 가능)에 따른 퇴계로변 지역 높이 계획 변경	-
변경	· 퇴계로변 이면부 주거지역의 최고높이 40m이하 변경 결정	· 관련계획(남산 고도지구 높이완화)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
변경	· 고도지구 해당지역 층수 제한 폐지	·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0호 2014.03.27.)에 따라 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	-

■ 기준높이 완화 결정조서

구분	변경내용			비고
	항목	세분	세부계획	
퇴계로 및 삼일대로 변에 면한 지역 (일반상업 지역)	녹지 등 공공공간 확보	공개공지 조성		- 출입이 상시 가능한 개방형으로 설치 - 필로티형설치 시 유효높이 6m 이상 준수 - 퇴계로변 보행공간과 연계를 고려한 실내형 공개공지 설치 - 법적 의무사항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법적 조성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이상 설치시(최소 45㎡이상 설치) - 개방형 : $\alpha=6.0$ / 필로티형: $\alpha=3.0$ / 실내형: $\alpha=2.0$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높이×(설치 면적/연면적) × 2.5 이내	2030 서울생활권계획 상 부족시설 등 또는 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시설을 연면적의 10%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 설치한 경우 적용
			옥상부 개방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다음 4가지 항목 중에 3가지 항목에 대해 인정받은 경우 - 남산의 열린 조망이 가능한 전망공간 조성 - 옥상에 녹화된 입체 개방형녹지 조성 - 시민에 무료 개방 - 별도의 수직이동 시설로 연결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대장상에 명시하고 개방한 옥상부분의 별도 옥외영업을 불허할 것
	지역 특성 강화	남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고층부 세장형등 남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폐율 하향하여,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건폐율 50%이하 일 때, $\alpha = 0.15$ - 건폐율 45%이하 일 때, $\alpha = 0.25$ - 건폐율 40%이하 일 때, $\alpha = 0.35$
	우수디자인		기준높이 × 0.3 이내	우수디자인 인증 체크리스트 중 3가지 이상 충족하여 구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퇴계로변 이면부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녹지 등 공공공간 확보	공개공지 조성		- 출입이 상시 가능한 개방형으로 설치 - 필로티형 설치 시 유효높이 6m 이상 준수 - 법적 의무사항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법적 조성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이상 설치시(최소 45㎡이상 설치) - 개방형 : $\alpha=3.0$ / 필로티형: $\alpha=1.5$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2030 서울생활권계획 상 부족시설 등 또는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시설을 연면적의 10%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 설치한 경우 적용

구분	변경내용			비고
	항목	세분	세부계획	
	지역 특성 강화	남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기준높이 X 0.25 이내	· 고층부 세장형 등 남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우수디자인	기준높이 X 0.25 이내	· 우수디자인 인증 체크리스트 중 3가지 이상 충족하여 구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 건축물 개방 항목에서 말하는 부속시설이란 2030 서울생활권계획상의 생활서비스시설 중 부속시설을 말함

※ 높이 완화 시 건폐율 완화 중복 적용 불가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중 구 건축위원회 심의와 중복대상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완화 가능

※ 우수디자인 인증 체크리스트

목적	비고
친환경 가로경관	· 건축물의 벽면, 배란다, 테라스, 옥상 중 한 곳 이상에 일반 대중이 가로변에서 조경식물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공지반을 조성 및 식재
가로활성화	· 1층부 상업공간을 소규모 상점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상업 입점이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계획
	· 가로변 1층부 개별 점포의 폭원을 10m 이하로 하거나 3~5m 간격으로 수직분절요소 적용
	· 전면공지를 제외한 대지내에 외부 데크 또는 테라스를 조성하고 상부 차양 설치
탐상형 건축물	· 간선가각부 및 간선도로변 탐상형 건축 유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야간조명	· 퇴계로변의 10층 이상 건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에 조명 투시, 야간 경관 제고 유도

■ 높이 완화내용

구분	적용대상	완화기준	변경사유
경관축 확보를 위한 높이완화	퇴계로 34길변, 필동로변, 서애로변	· 최대개발규모(1,500㎡) 이상 공동개발하며, 보행환경, 경관개선을 위한 아래의 건축배치 반영 시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고 50m 이내에서 높이완화 가능 - 건축한계선 3m 이상 추가 이격하여 보행로 확보 - 고층부 세장형 등 남산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로 건축물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특화가로변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남산조망 확보를 통한 경관 개선시 심의를 거쳐 높이완화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신설

※ 높이 완화 시 건폐율 완화 중복 적용 불가

※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 고도지구는 높이완화계획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따라 수립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높이계획에 따름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배치는 건축한계선으로 계획
- 간선도로변(퇴계로변)의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 이면도로에서의 보도 및 차도의 확보를 통하여 이면도로의 기능 및 효율성 증진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퇴계로변)		3~4m	-
		이면부		1~4m	-
	저층부 벽면 지정선	남학동 13-2	소로 4~11호	도로중심선에서부터 저층부 벽면지정선 3m	-
			폭 2~3m 도로변(서측)		
			폭 2m 도로변(남측)		
	고층부 벽면 한계선	한옥마을 진입로변		5m	• 건축물의 높이가 18m 이상인 부분부터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후퇴
변경	건축물의 방향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이 대지가 접하는 전면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성을 고려하여 조정 등 처리	-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옛 길, 옛 물길 등 역사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시조직 유지 • 옛 길, 옛 물길 및 기존 골목길이 포함된 공동개발 시 길의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
	기존 지형 및 수목 고려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기존 지형과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건축물을 배치	-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퇴계로변)		3~4m	• 퇴계로변 필지 중 건축한계선(3m~ 4m) 적용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도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보행 유효폭 확보가 가능하다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경우 건축한계선을 최대 1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면부		1~4m	• 건축법상 최소도로(4m)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고
	저층부 벽면 지정선	남학동 13-2	소로 4~11호	도로중심선에서부터 저층부 벽면지정선 3m	-
			폭 2~3m 도로변(서측)		
			폭 2m 도로변(남측)		
	고층부 벽면 한계선	한옥마을 진입로변		5m	• 건축물의 높이가 18m 이상인 부분부터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후퇴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서로 다른 계획을 적용받는 경우 국토계획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를 따름.

(나) 대지 내 공지계획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기정)

- 특별계획구역 2 폐지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휴게공간 확보
-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의 편의 증진
- 지역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전면 공지	간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4m	규제 사항
	이면 도로변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설치 금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건축한계선 1~4m	규제 사항
공개 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위치준수	규제 사항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 • 공개공지는 소공원(쌈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규제 사항
통로	보행자 우선가로	•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	폭 6m	규제 사항
	공공 보행통로	• 이면 필지의 점근성 향상과 전면도로에서의 진출입해소를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공공보행통로 계획	폭 4~6m	규제 사항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변경)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전면 공지	간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4m
	이면 도로변	· 보 · 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건축한계선 1~4m
공개 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위치준수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는 소공원(쌈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통로	보행자 우선도로	·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	폭 6m
	공공 보행통로	· 이면 필지의 접근성 향상과 전면도로에서의 진출입해소를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공공보행통로 계획	폭 4~6m
	보차혼용 통로	· 24시간 개방되어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보차혼용통로 계획	폭 4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기정)

- 연속성 및 통일성,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 구성
- 간선도로변 가로경관의 향상과 장소성 부여를 위한 기준 설정
- 이면도로변 저층부 입면계획으로 가로변 연속성 및 활성화 유도
- 야간경관조명 설치계획으로 야간경관의 향상과 야간 보행활동의 활성화 유도
- 옥외광고물의 정비 등으로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도시미관의 증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탑상형 건축물	• 간선 가각부 및 간선도로변은 탑상형 건축 유도	권장사항
건축물 외관	투시벽 및 투시형 서터	• 퇴계로변 건축물 1층 전면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 퇴계로변 건축물 투시형 서터를 사용	규제사항
	1층 바닥높이	• 퇴계로변에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규제사항
	개구부 없는 외벽면 처리	•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 없는 벽면 가로 노출 불가 • 단, 장식적 처리를 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규제사항
	측면공지 차폐	• 퇴계로변 건축물의 획지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차폐	규제사항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 • 통합간판 설치유도 •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권장사항
	야간조명	• 공공이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민간도 퇴계로, 필동길, 서애길, 남산한옥마을진입로변의 10층이상 건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 (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시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권장사항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탑상형 건축물	구역 전체	• 간선가각부 및 간선도로변 탑상형 건축 유도	권장
	투시형 셔터	구역 전체	• 퇴계로변 건축물 투시형 셔터 사용	규제
	투시벽	구역 전체	• 퇴계로변 건축물 1층 전면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규제
	1층 바닥높이	구역 전체	• 퇴계로변에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규제
건축물 외관	외벽면의 통일성	구역 전체	•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 필요 / 원색 사용 불가	권장
		필동로	• 자연재료의 사용 및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자연녹지경관 권장색채 적용	
		퇴계로34길 퇴계로		
	외벽면 및 진입구 처리	구역 전체	•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 없는 벽면 가로 노출 불가 • 단, 장식적 처리를 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규제
		필동로	• 옛 물길 변으로 1층 점포의 주출입구 조성	
		퇴계로34길	• 진입로에 면해 1층 점포의 주출입구 조성	
		퇴계로	• 1층 개방형 입면 조성	
	측면공지 차폐	구역 전체	• 퇴계로변 건축물의 경우 획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차폐	권장
건축설비의 노출	구역 전체	• 건축설비 시설은 도로변에 노출을 금지하며, 부득이 노출시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된 디자인요소로 차폐해야 함	권장	
옥외광고물		구역 전체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경우 통합간판 유도 •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권장
야간조명		구역 전체	• 퇴계로, 필동길, 서애길, 남산한옥마을진입로변의 10층 이상 건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에 조명 투시, 야간 경관 제고 유도	권장

■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관리지침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한옥 등 건축자산 (한옥 등 건축자산법)	구역 전체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특례 및 지원사항은 당해 법령에 따라 관리 •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시 완화 계획(주차장완화 등) 적용 • 한옥 건축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따라 완화 적용 •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적용 • 건축자산의 보존·활용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완화항목(주차장완화 등)적용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보전을 인정받은 경우)	권장
역사문화자원 (서울도심기본계획)	구역 전체	•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에 따른 근현대건축, 일식주택 및 문화주택을 대상으로 적용 • 보존방법 및 범위 등은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에 따름 ※ 본 계획 결정 당시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의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에는 해당 계획을 적용함	권장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동국대부지)	중구 필동2가 82-1 일대	5,818	-	5,818	-
변경	특별계획구역1 (동국대부지)	중구 필동2가 82-1 일대	5,818	증) 26.8	5,844.8	면적 변경 5,818㎡→5,844.8㎡ (증 26.8㎡)
폐지	특별계획구역2 (녹지축(3축)일대)	중구 충무로4가 125-11 일대	17,858	감) 17,858	-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 당위성 상실

< 이 하 여 백 >

(1) 특별계획구역1 (동국대부지)

(가) 개요

- 지정목적 : 동국대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남산한옥마을 및 한국의 집 진입로 확장 등을 위한 지정
- 위치 :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2-1 일대
- 면적 : 5,844.8㎡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나) 동국대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안) (기정)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동2가 82-1일대	5,818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공공 시설	도로 • 신설 1개소 - 위치 : 한옥마을 진입부 - 면적 : 472㎡ - 폭 : 5m	
			주차장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공공용지 부담율	• 도로 및 주차장은 총 17%이상 - 원인자 부담으로 조성후 기부채납	
		획지	• 특별계획구역을 대지로 하는 획지선 지정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일반상업 : 500%/600% 이하 • 제3종→준주거 : 250%/350% 이하 • 제2종→준주거 : 200%/33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용적률 완화는 본 계획 완화내용 준용	
		높이	• 최고높이 50m이하 ※높이완화는 본 계획 완화내용 준용 • 최고고도지구 : 5층 20m 이하 ※ 최고고도지구완화는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70호 2005.09.08.)' 적용	
		건축물 배치	• 남산 한옥마을 진입로변 - 1층 벽면한계선 후퇴(폭:3m, 높이:6m) - 고층부(18m이상)벽면한계선 지정 : 1층 벽면한계선으로부터 5m 후퇴 • 한국의집 진입로변 - 건축한계선 지정 - 위치지정된 공개공지 설치·조성	
		건축물 용도	지정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연면적 비율의 10%이상 ※ 지정용도 준수시 권장용도의 용도면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불허 용도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병원부속시설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상복합(공동주택 포함)	
			권장 용도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공공시설 주차장 조성은 남산한옥마을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확보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면적 및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다) 동국대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안)(변경)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동2가 82-1일대	5,844.8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공공 시설	도로	· 신설 1개소 - 위치 : 한옥마을 진입부 - 면적 : 472㎡ - 폭 : 5m
		공공공지 부담율		· 총 17%이상(원인자 부담으로 조성 후 기부채납) ※ 부족한 공공공지부담은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		· 특별계획구역을 대지로 하는 획지선 지정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일반상업 : 450%/600%이하/법적2배 이하 · 제3종→준주거 : 250%/350%/400% 이하 · 제2종→준주거 : 200%/330%/400% 이하 ※ 허용, 상한 용적률 완화는 본 계획 완화내용 준용
		높이		· 최고높이 50m이하 · 고도지구 : 20m 이하 ※ 고도지구완화는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0호(2014.03.27.))’ 적용 ※ 고도지구 내 높이계획은 당해 고도지구 관리계획에 따름
		건축물 배치		· 남산 한옥마을 진입로변 - 1층벽면한계선 후퇴(폭:3m, 높이:6m) - 고층부(18m이상)벽면한계선 지정 : 1층 벽면한계선으로부터 5m 후퇴 · 한국의집 진입로변 - 건축한계선 지정 - 위치 지정된 공개공지 설치·조성
		건축물 형태		· 남산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계획 수립 (남산 조망에 대한 건축물 시뮬레이션 제시)
		건축물 용도		지정 용도
불허 용도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병원부속시설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권장 용도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서울도심기본계획에 따른 근현대건축자산 지정으로 인해 공개공지 등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부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보전방법 등은 「서울도심기본계획」 및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퇴계로변에서의 차량출입 제한	-

■ 차량출입불허구간(변경)

구분	적용구역	완화계획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퇴계로, 동호로, 삼일대로)	· 간선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이면도로에 주차출입구 설치	해당 부분 도면표기
	퇴계로변 (이면도로에 주차출입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간선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을 금지하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통한 주차차량 수요 원천배제	해당 부분 도면표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①과 연계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진입이 가능한 옛 길 변 (퇴계로28길, 퇴계로30길, 퇴계로42길, 퇴계로44길, 서애로, 서애로1길, 퇴계로 내부골목)	· 차량진입이 가능한 생활가로(옛 길 변)을 대상으로 보행의 연속성 확보 및 보행친화가로 조성을 위해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해당 부분 도면표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②과 연계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지역	· 동국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지역 설정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지역은 주차장 설치 비용납부를 통해 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 시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미부여 시 : 주차장 설치비용 50% 감액	·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의 2

※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해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에 한함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변경)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완화조건	완화내용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① (이면도로에 주차출입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권장용도 도입 시(지상층 연면적의 50% 이상, 주차장 면적 제외)	• 50%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② (차량진입이 가능한 옛 길 변 및 서예문화길 견고 싶은 거리 조성 구역)	•권장용도 도입 시(지상층 연면적의 50% 이상, 주차장 면적 제외)	• 50% 완화	건축물 용도
		• 옛 길, 옛 물길 복원 및 재현 등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50% 완화	역사 문화 자원

※ 완화조건을 충족할 경우 완화계획 중복적용 가능(두 가지 조건 충족 시 100%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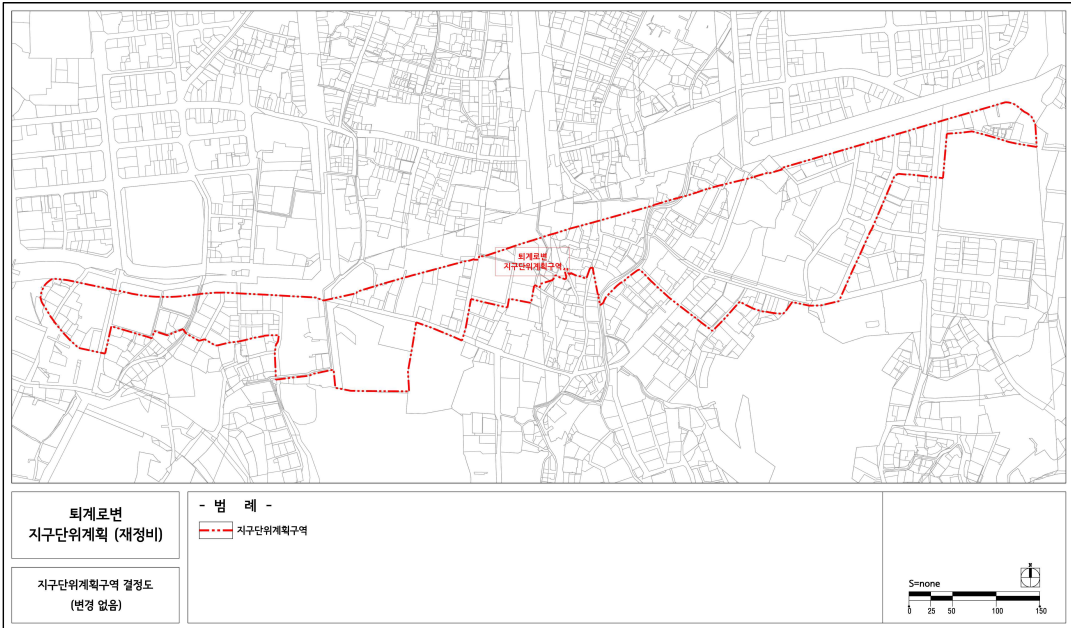
※ 허용용역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 미완화분은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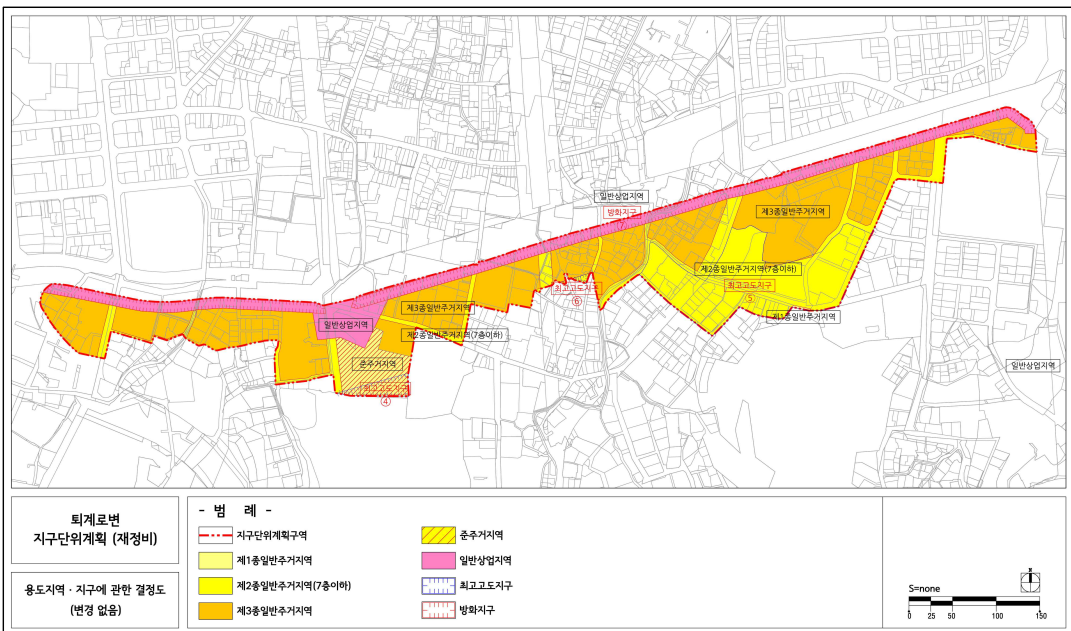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계획지침	비고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2.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우선가로, 보차혼용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식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최대개발규모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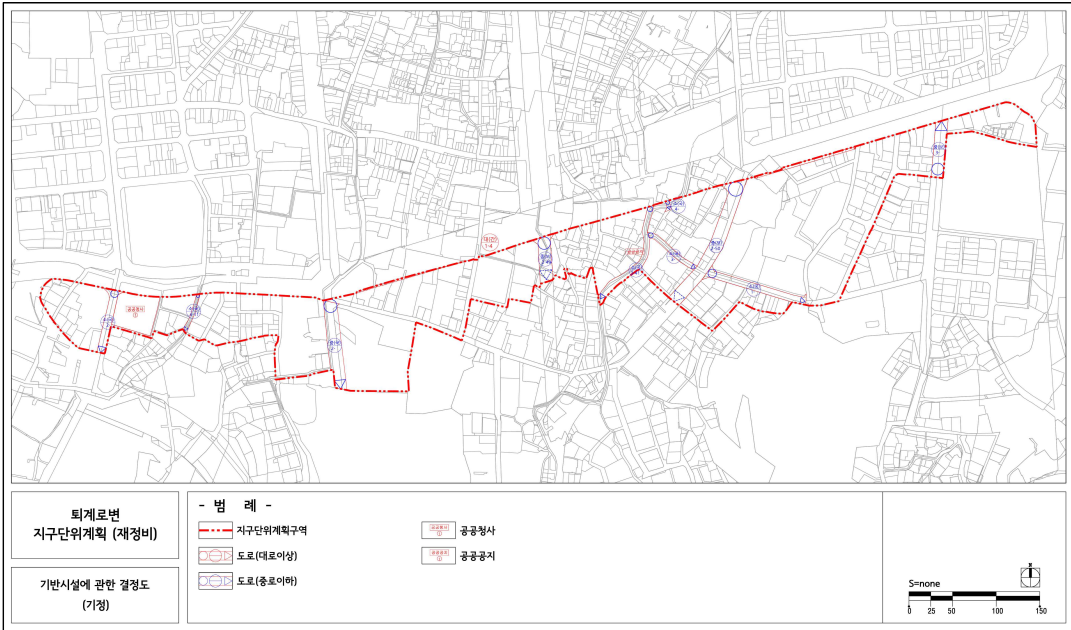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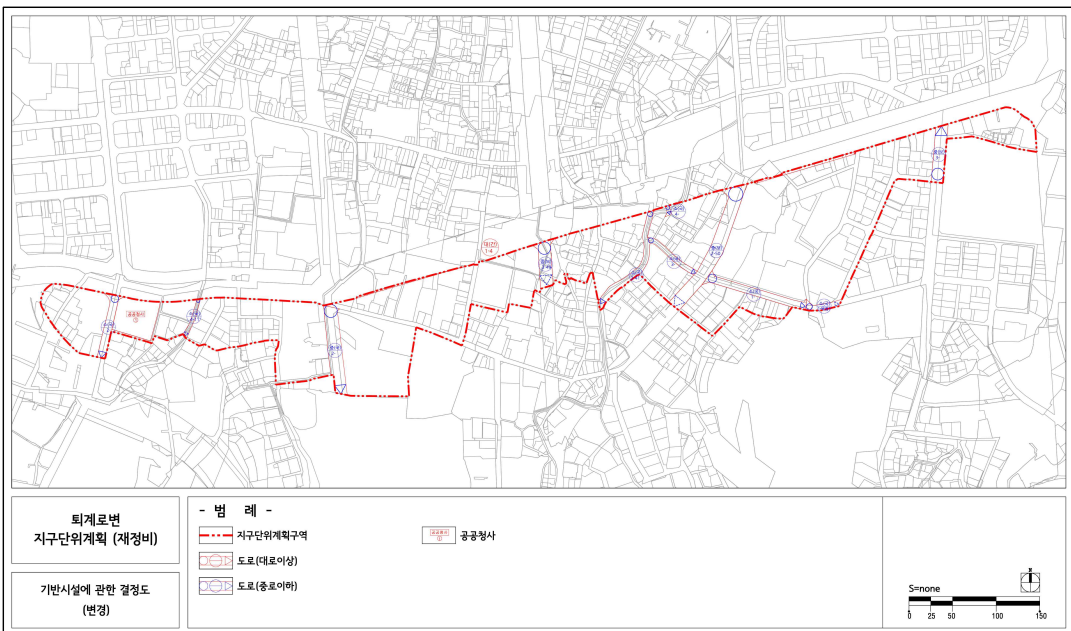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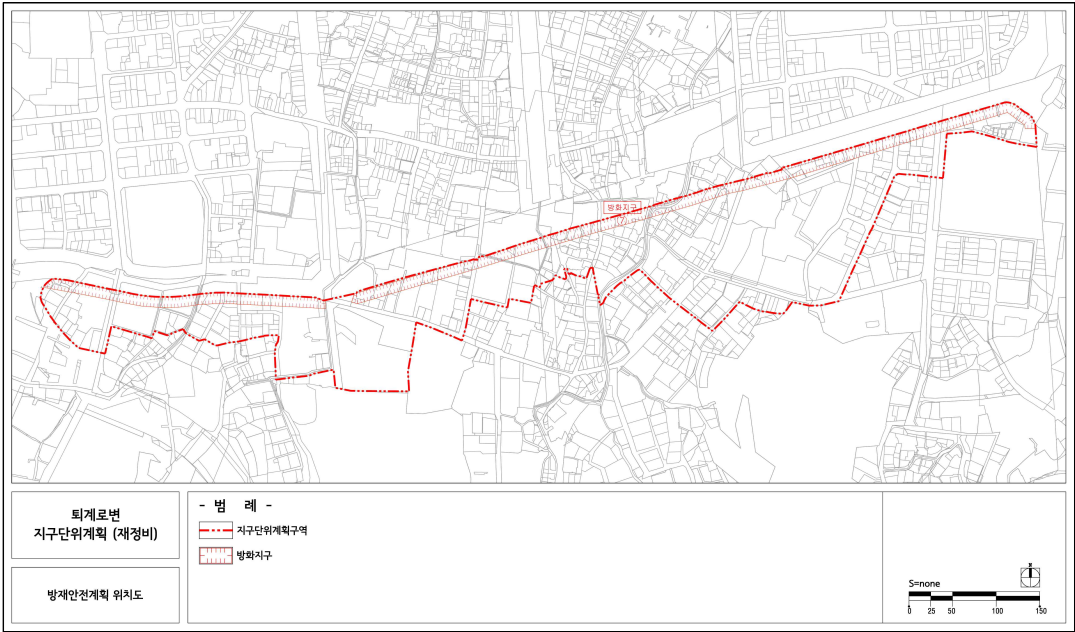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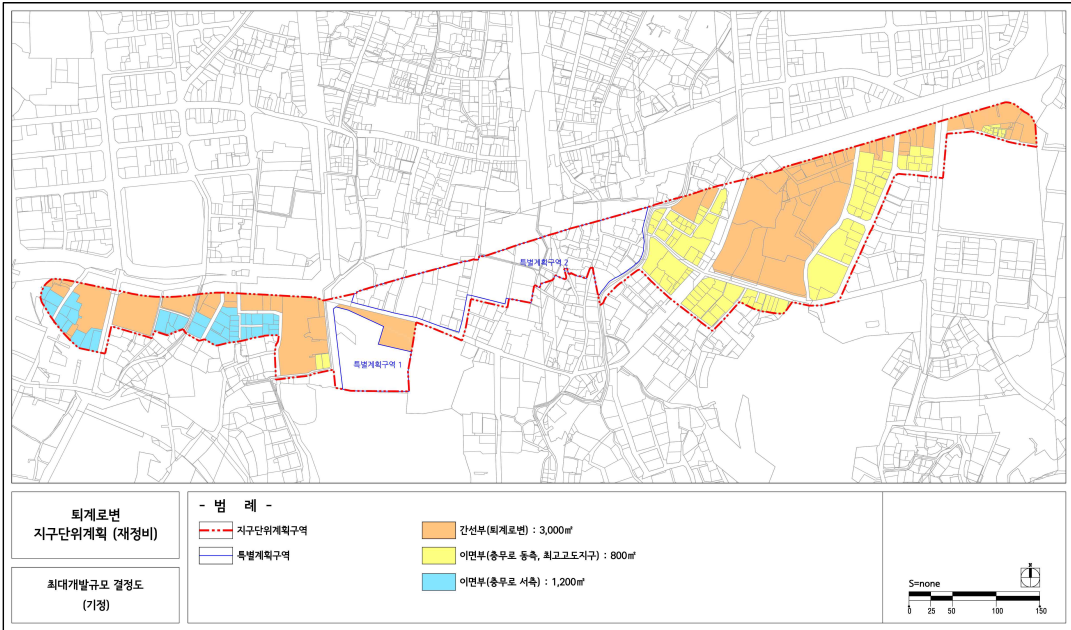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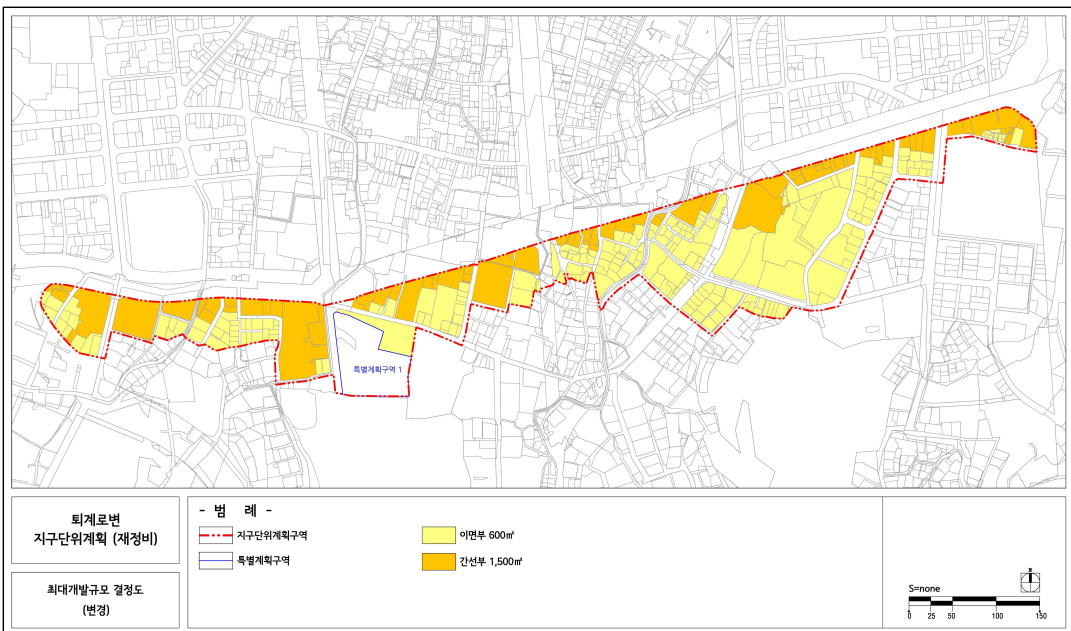
■ 방재안전계획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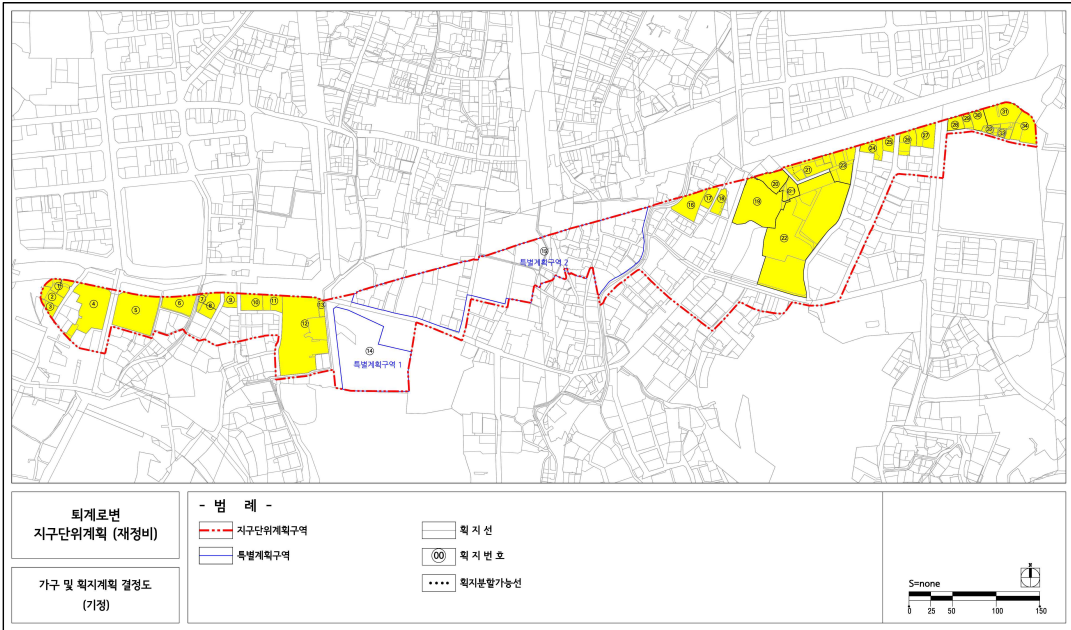
■ 최대개발규모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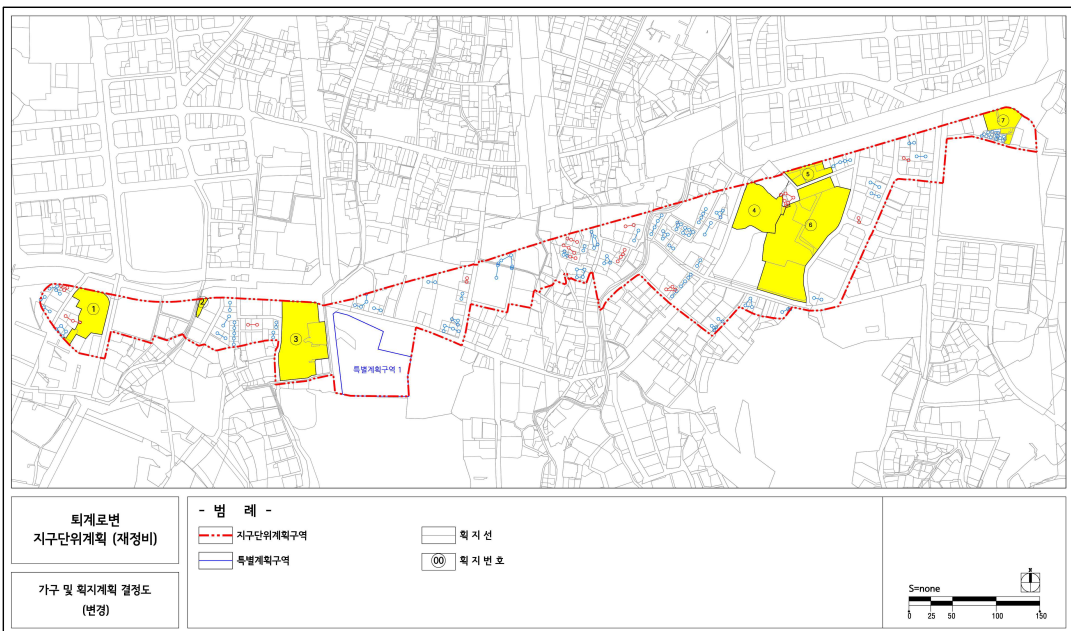
■ 최대개발규모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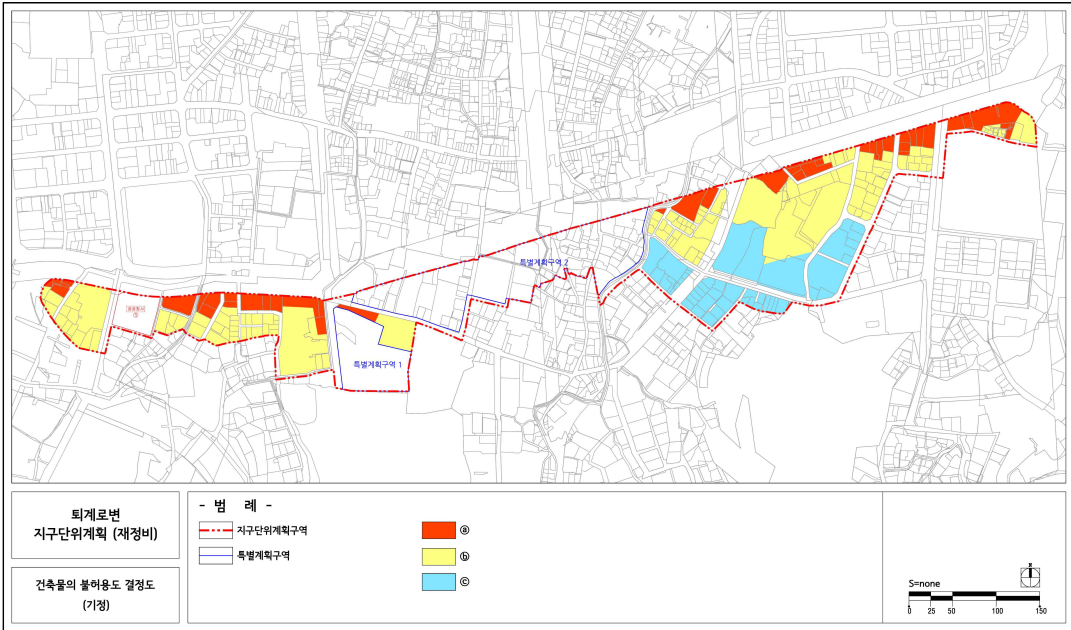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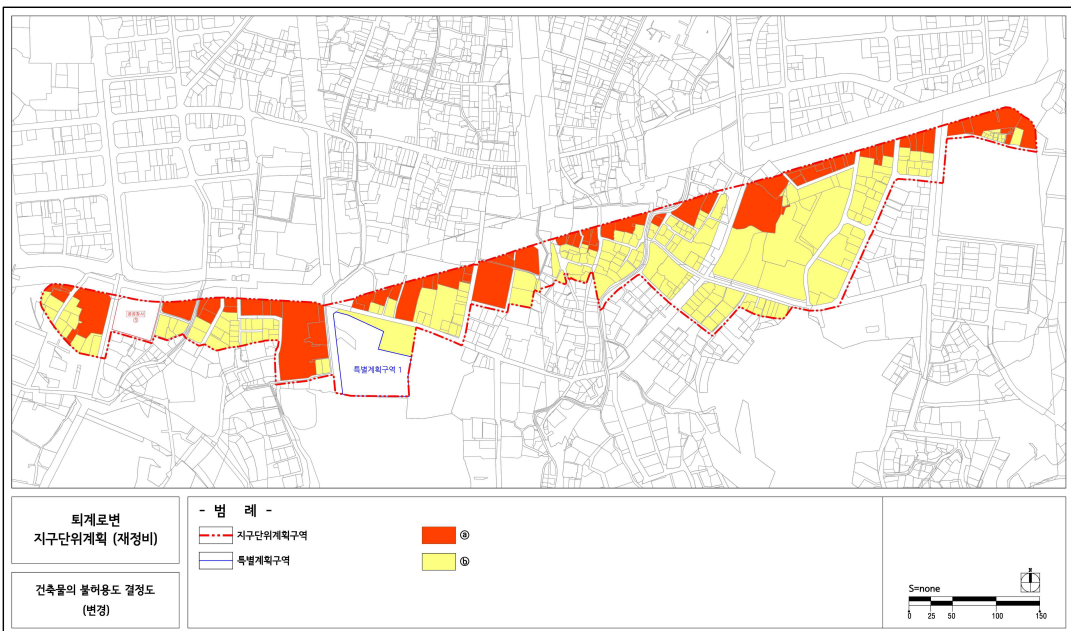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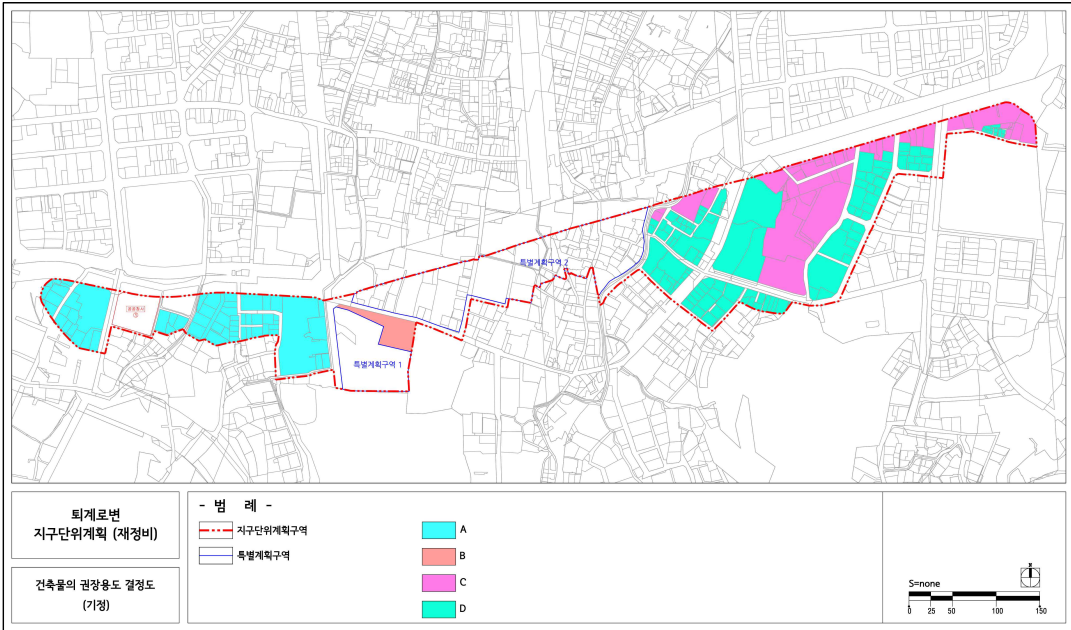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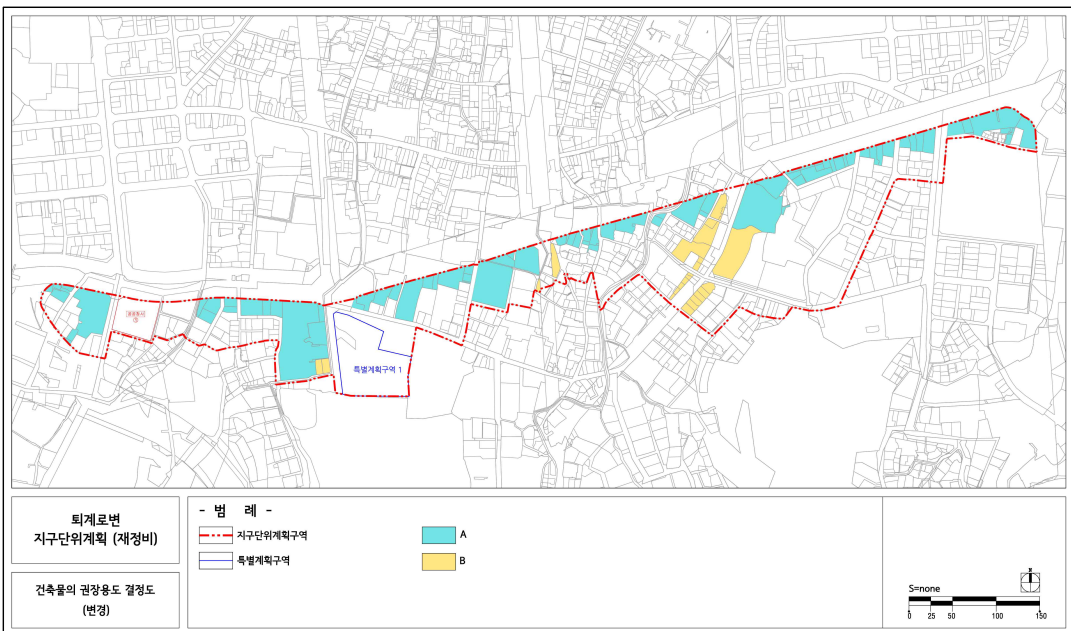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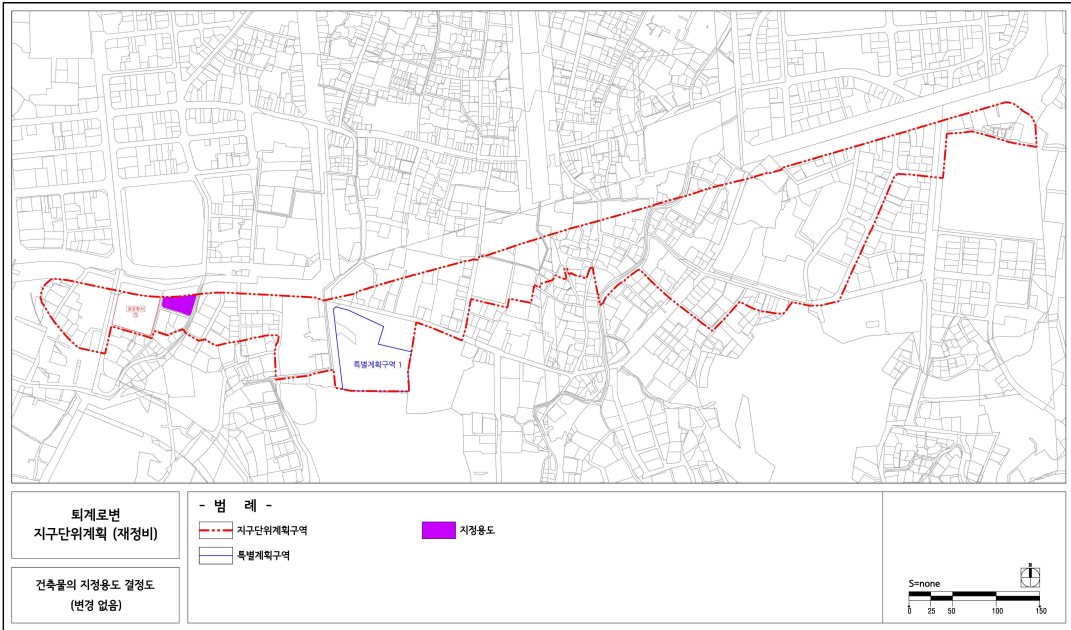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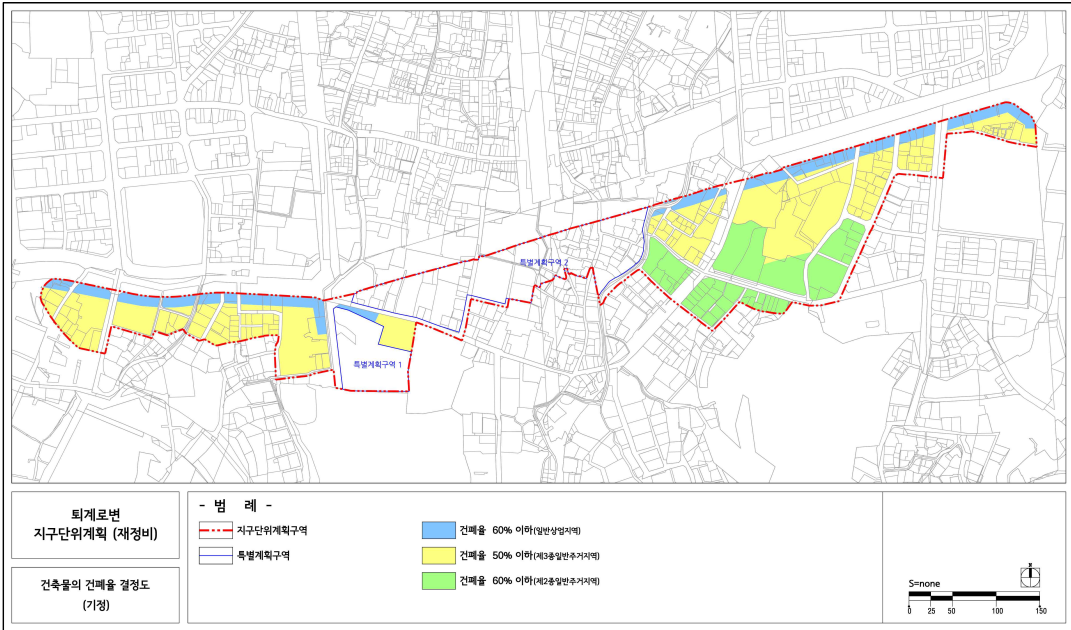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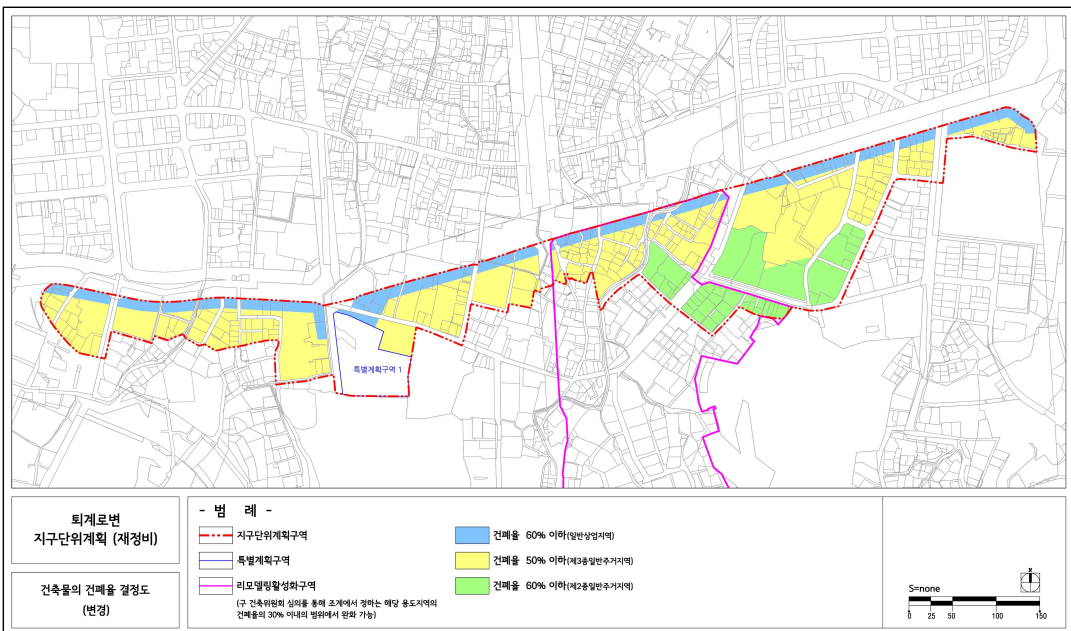
■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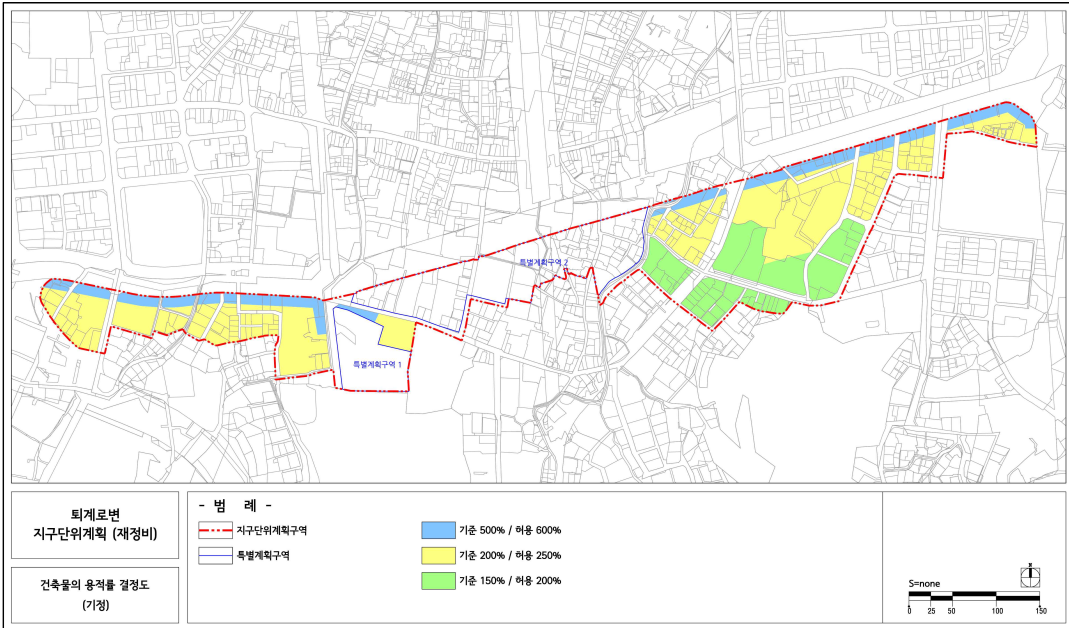
■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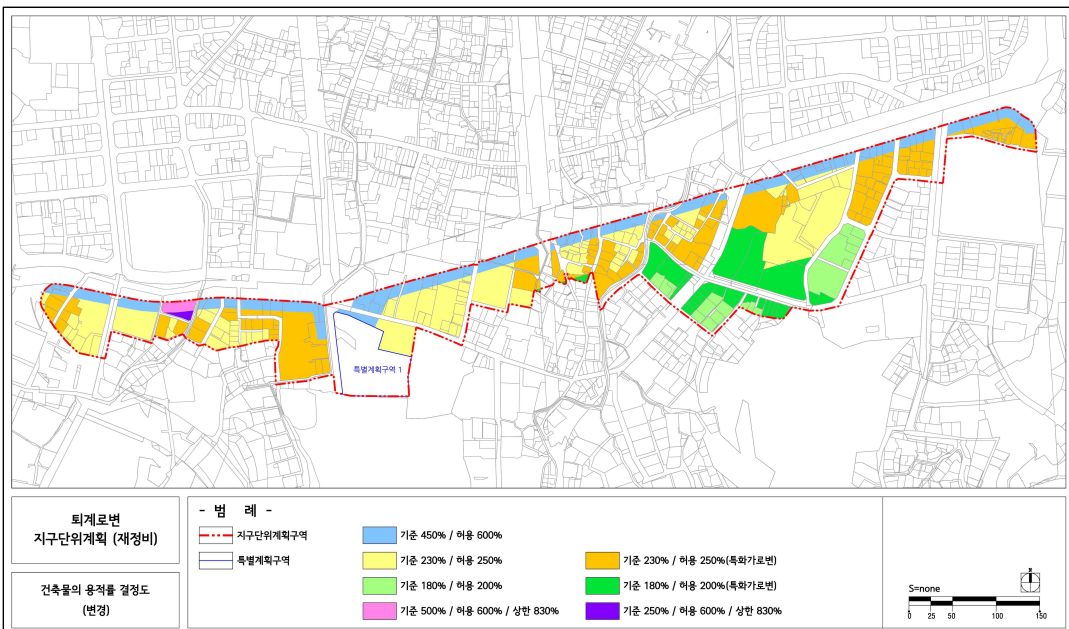
■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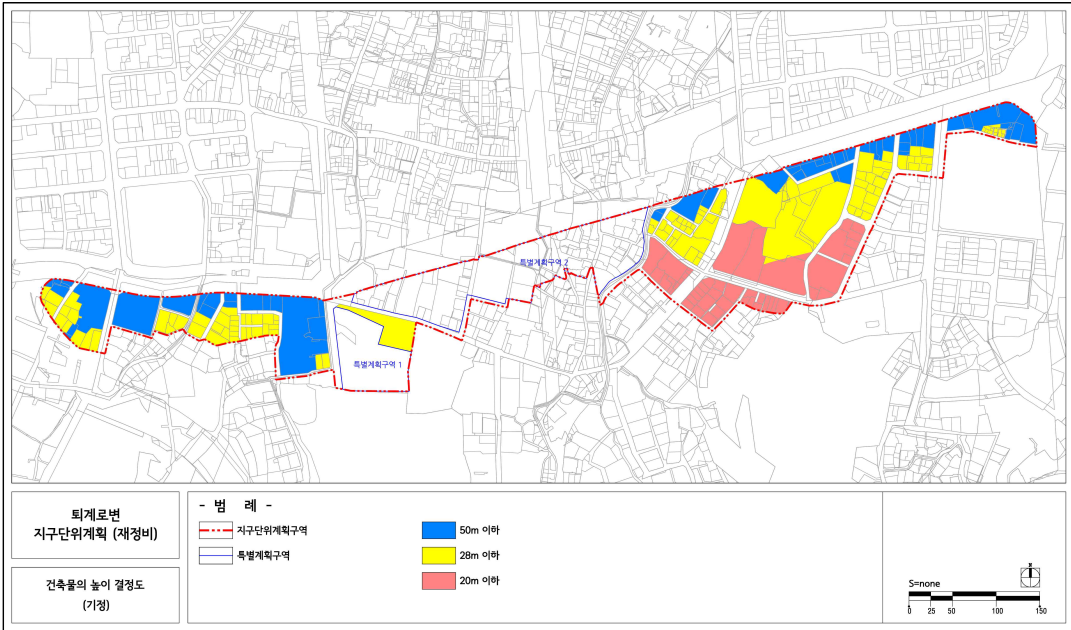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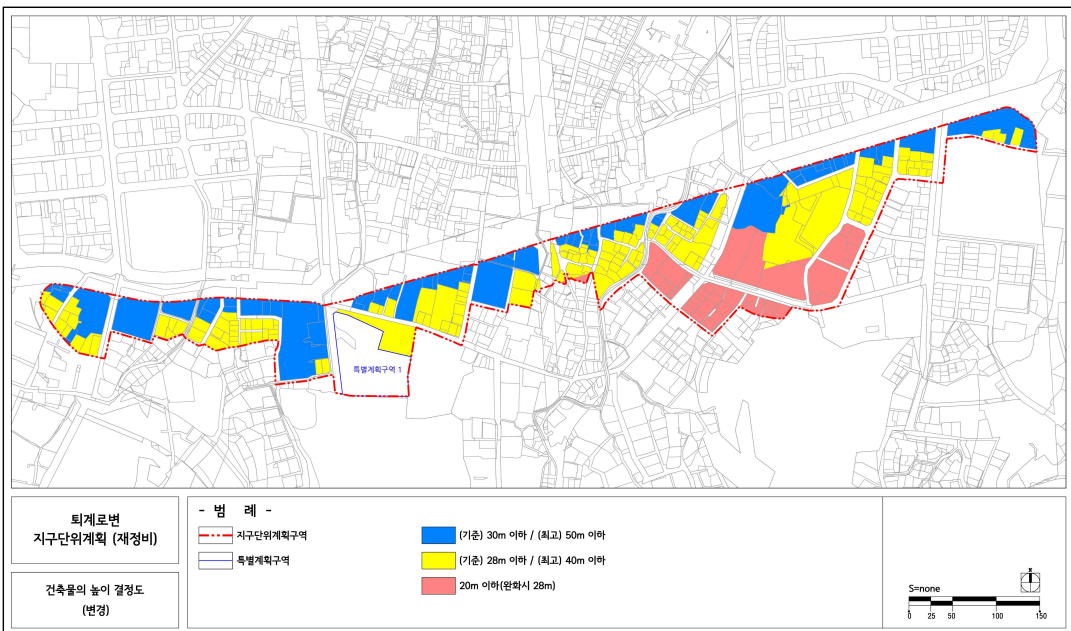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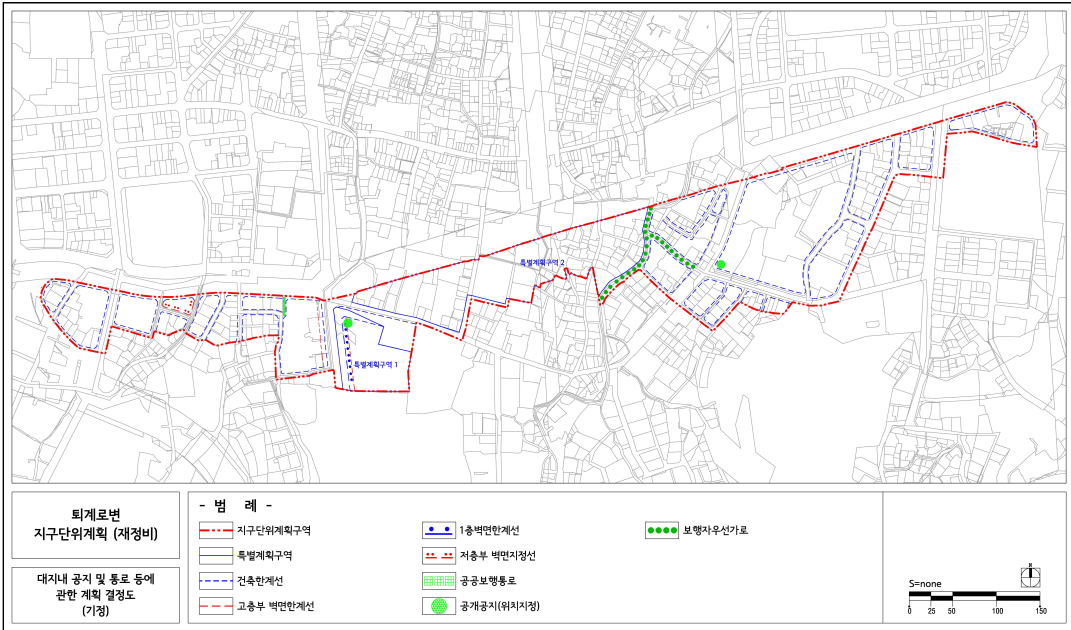
■ 건축물의 높이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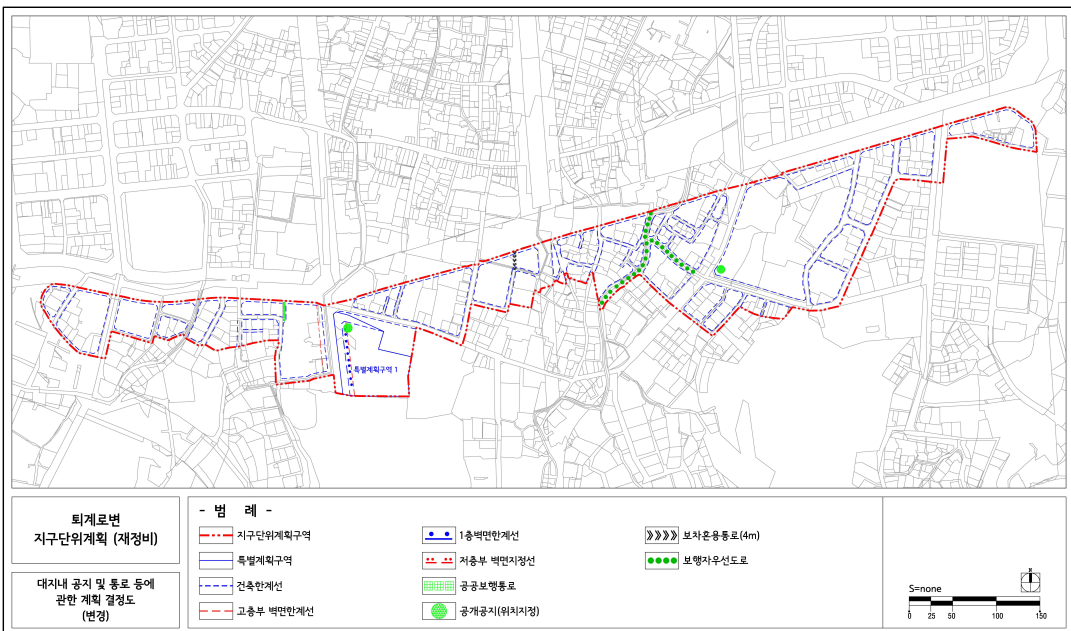
■ 건축물의 높이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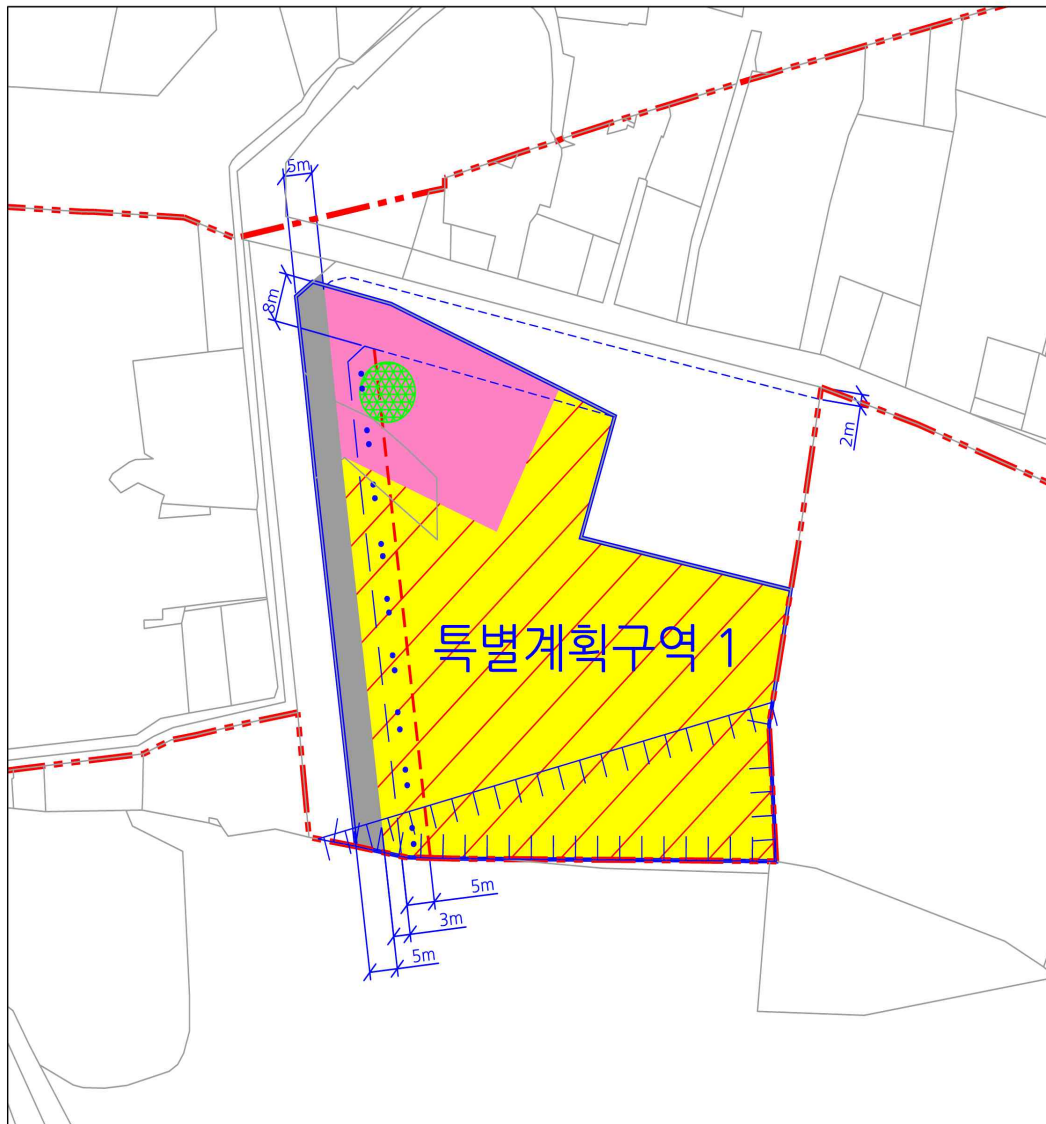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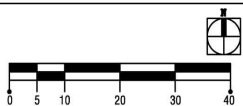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1(동국대부지)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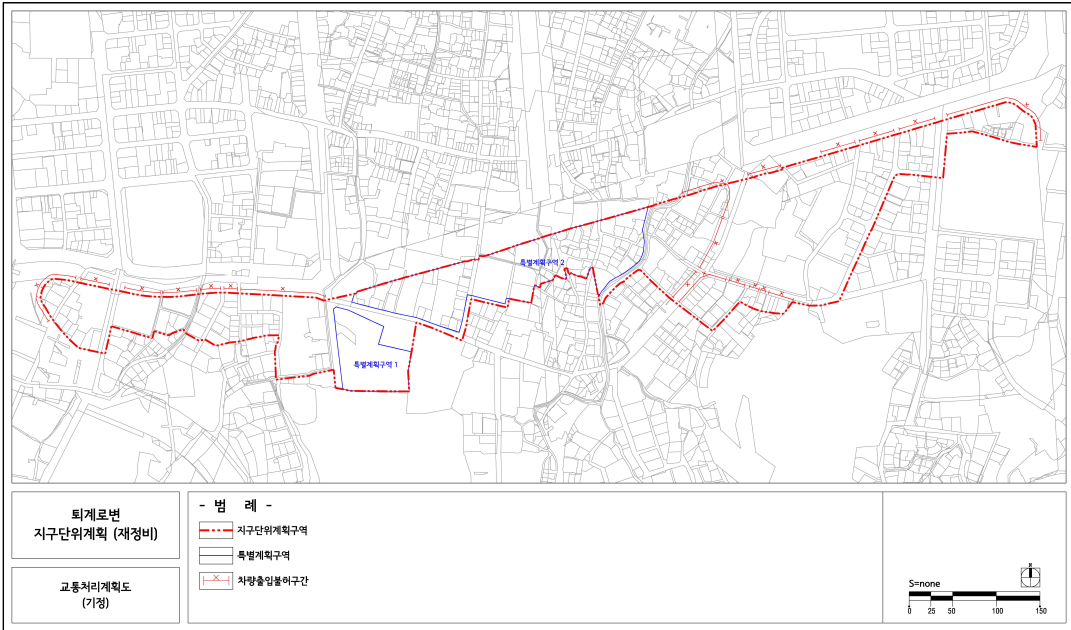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특별계획구역1(동국대부지)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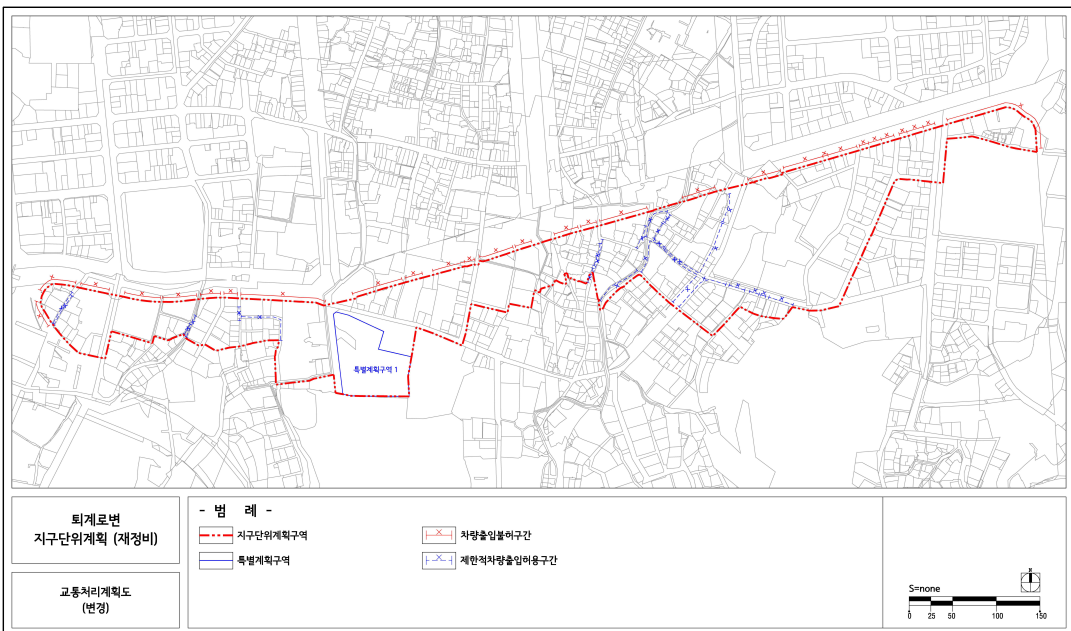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준주거지역 |
| 특별계획구역 | 일반상업지역 |
| 최고고도지구(20m이하) | 도로 |
| 건축한계선 | 공개공지(위치지정) |
| 고층부 벽면한계선 | |
| 1층벽면한계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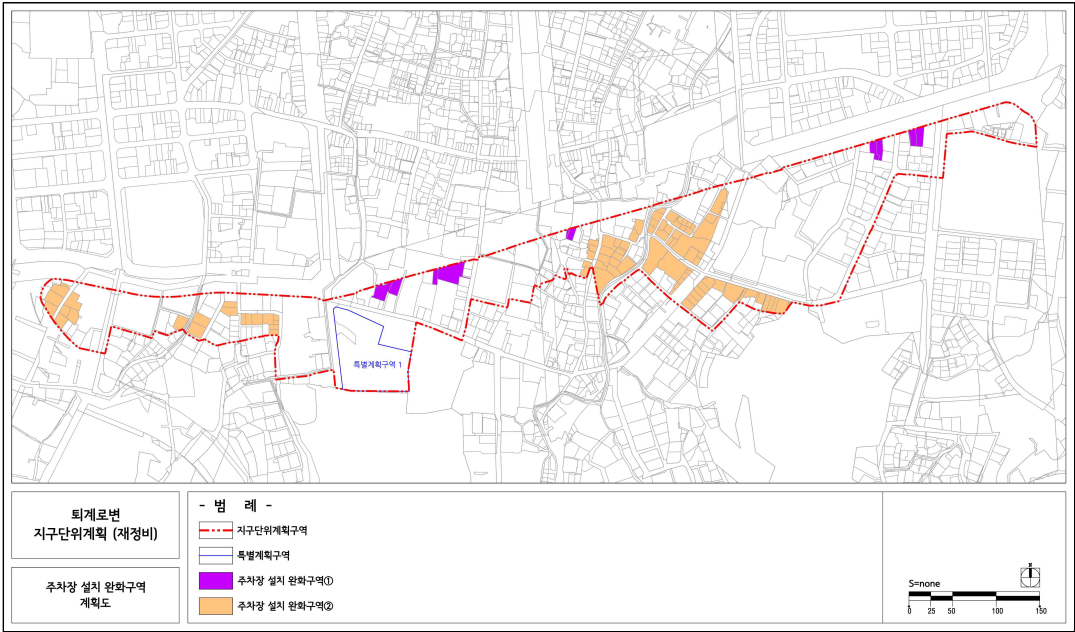
■ 교통처리계획도(기정)



■ 교통처리계획도(변경)



■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계획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장월교	성북구 장위동 270 ~ 노원구 월계동 472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장월교 개축공사(기존교량 철거후 신설)로 1종시설물 변경에 따른 3종시설물 지정 해제 (변경후 : 아치교)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에 의거 보호수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보호수 지정 수목내역

구분	관리번호	수종	소재지	수목 현황			토지소유자	비고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지정	서20-6	느티나무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 23	350	8	1.57	래미안트윈파크 임대위	

2. 지정 사유

관리번호	수종	지정 사유	비고
서20-6	느티나무	추정 수령 300년 이상의 노목으로 수형이 독특하고 수간 공동부의 조형미가 있는 등 아름다운 수목으로, 나무의사 등 전문가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지정 요청이 있어 보호수로 지정코자 함	

3. 지정고시 예정일 : 2024. 1. 25.(목)
4. 문 의 처

- 보호수 총괄 문의 : 서울특별시 조경과(☎02-2133-2124)
- 서20-6 느티나무 보호수 문의 : 동작구 공원녹지과(☎02-820-164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18호(2007.07.25.), 제2007-385호(2007.10.25.), 제2010-105호(2010.03.25.), 제2012-192호(2012.07.26.), 제2012-252호(2012.09.20.), 제2014-132호(2014.04.03.), 제2016-194호(2016.07.07.), 제2017-305호(2017.08.17.), 제2017-355호(2017.10.10.), 제2018-119호(2018.04.19.), 제2018-136호(2018.05.03.), 제2020-145호(2020.04.16.), 제2021-61호(2021.02.04.), 제2021-392호(2021.07.22.), 제2022-78호(2022.2.24.), 제2022-364호(2022.8.25.), 제2022-514호(2022.12.22.), 제2023-431호(2023.10.05.), 제2023-578호(2023.12.28.)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 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증 감	변 경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361,121.2	-	361,121.2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변경없음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361,121.2	-	361,121.2	100.0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촉진지구	택지	소 계	254,140.7	-	254,140.7	70.4	
		주택건설용지	254,140.7	-	254,140.7	70.4	
	정비기반시설용지	소 계	102,872.5	-	102,872.5	28.5	
		도 로	59,572.8	-	59,572.8	16.5	
		공원 및 녹지	13,099.7	-	13,099.7	3.6	
		광 장	326.0	-	326.0	0.1	
		학 교	27,478.0	-	27,478.0	7.6	
		공공청사	396.0	-	396.0	0.1	
		사회복지시설	656.0	-	656.0	0.2	
		문화시설	1,344.0	-	1,344.0	0.4	사회복지시설 중복
		종교시설	4,108.0	-	4,108.0	1.1	
	기타	종교시설	4,108.0	-	4,108.0	1.1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없음 (13,357인 / 5,197세대)

주택유형	계획세대(세대)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197	-	5,197	13,357	-	13,357	2.57인 적용
준치구역 (준치관리, 준치정비구역)	904	-	904	2,323	-	2,323	방화2구역, 준치아파트(해태,청성)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4,293	-	4,293	11,034	-	11,034	긴등마을구역, 방화6구역, 방화3구역, 방화5구역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육시설	계	2	-	2	27,478		27,478	-
	방화중학교	1	-	1	13,270		13,270	-
	공향중학교	1	-	1	14,208		14,208	-
문화·복지시설	계	5	-	5	2,396	-	2,396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문화시설	1	-	1	1,344	-	1,344	· 3구역(1개소) : 방화문화예술복합공간
	사회복지시설	3	-	3	656	-	656	· 3구역(1개소) :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 5구역(1개소) : 어린이집, 경로당 · 6구역(1개소) : 어린이집
	공공청사	1	-	1	396	-	396	· 6구역(1개소) : 공공청사

4) 공원·녹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및 녹지시설	합 계	5	-	5	13,099.7	-	13,099.7	
	소 계	4	-	4	12,773.9	-	12,773.9	
	어린이 공원	4	-	4	12,773.9	-	12,773.9	· 방화2, 3, 5, 긴등마을구역 (구역별 1개소)
	계	1	-	1	325.8	-	325.8	
	경관녹지	1	-	1	325.8	-	325.8	· 긴등마을구역(1개소)

5) 교통계획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6) 경관계획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7)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61,121.2	-	361,121.2	100.0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254,064.4	-	254,064.4	70.4	-	-
	긴등마을	31,634.2	-	31,634.2	8.8	주택재건축	-
	방화6구역	31,554.2	-	31,554.2	8.7	주택재건축	-
	방화3구역	92,139.0	-	92,139.0	25.6	주택재건축	-
	방화5구역	98,737.0	-	98,737.0	27.3	주택재건축	-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존치 지역	소 계		107,056.8	-	107,056.8	29.6	-	-
	존치 정비구역	방화2구역	35,076.0	-	35,076.0	9.7	-	-
	존치 관리구역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	71,980.8	-	71,980.8	19.9	-	-

8)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61,121.2	-	361,121.2	100.0
주거지역	소 계	360,904.2	-	360,904.2	99.9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93,953.4	-	93,953.4	26.0
	제2종일반주거지역	226,820.6	-	226,820.6	62.8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30.2	-	40,130.2	11.1
자연녹지지역		217.0	-	217.0	0.1

9)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역구분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비고
					기준(%)	상한(%)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긴등마을구역	공동주택	30	180	239.69	15	해발 57.86m 미만
	기정	방화6구역	공동주택	50	210	236	16	해발 57.86m 미만
	기정	방화3구역	공동주택	30	180	218	16	해발 57.86m 미만
	기정	방화5구역	공동주택	60	180	220.11	15	해발 57.86m 미만
존치 정비구역	기정	방화2구역	공동주택	60	180	230.00	15	해발 57.86m 미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기정	간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31,634.20	3,821.70	183.00	634.00	-	3,004.70	9.5
기정	방화6재정비 촉진구역	31,554.20	5,410.95	2,602.30	1,822.62	-	986.03	3.1
기정	방화3재정비 촉진구역	92,139.00	16,423.00	3,873.40	5,017.60	-	7,532.00	8.2
기정	방화5재정비 촉진구역	98,737.00	18,238.70	5,347.00	6,205.00	-	6,472.70	6.5

※ 계획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 + 공공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내 KH건축물(준치)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2017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17.7.11) 의견에 따라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함(214㎡)

※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은 2022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22.5.3.) 의견에 따라 공공주택 15세대 포함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구역구분	구분	구역명	계획세대수 (분양+공공)	분양	공공주택		비고
					세대	비율(%)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합계	4,293	4,097	196	5.4	
	기정	간등마을	603	544	59	9.8	
	기정	방화6구역	557	537	20	3.6	
	기정	방화3구역	1,476	1,420	56	3.8	
	기정	방화5구역	1,657	1,596	61	3.7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3)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4)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5) 기타계획(정보화계획, 에너지계획, 방재계획, 특성화계획 등)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가.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나.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다. 방화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라.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

■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위치,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촉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 (방화동 615-103) 일대	92,139.0	-	92,139.0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신설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종후자산 추정금액 - 추정사업비)/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3.33% ⇒ (17,393 - 9,731) / 7,637 × 100% = 100.33% - 종후자산 추정금액 : 17,393억원 - 추정 사업비 : 9,731억원 - 종전자산 추정금액 : 7,637억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가액 (토지, 건물 일괄평가액) - 단독주택 및 상가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59A(24평)	8.19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00.33%)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59B(24평)	8.18억		
	74A(30평)	10.08억		
	74B(30평)	10.1억		
	84A(34평)	10.32억		
	84B(34평)	10.47억		
	84C(34평)	10.34억		
	84D(34평)	10.34억		
	84E(34평)	10.45억		
	102A(41평)	11.77억		
	102A1(41평)	11.83억		
	102B(41평)	11.84억		
	102C(41평)	11.98억		
	118A(47평)	12.84억		
	118B(47평)	12.98억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134A(52평)	13.54억		
	153PH(62평)	20.75억		
	171PH(69평)	23.17억		
	64TH(26평)	8.34억		
	71TH(28평)	9.15억		
	79TH(31평)	10.11억		
	91TH(36평)	10.47억		
	103TH(41평)	11.23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2,139.0	-	92,139.0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5,112.0	-	15,112.0	16.6	
	도 로	8,596.0	-	8,596.0	9.6	
	공 원	4,610.0	-	4,610.0	5.0	
	학 교	562.0	-	562.0	0.6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1,344.0	-	1,344.0	1.4	사회복지시설 중복 결정
획 지	소 계	77,027.0	-	77,027.0	8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	75,567.0	-	75,567.0	82.0	
	획지2	685.0	-	685.0	0.7	
	획지3	92.0	-	92.0	0.1	
	획지4	461.0	-	461.0	0.4	
	획지5	222.0	-	222.0	0.2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4.7~20	집산 도로	414	방화동 618-9	방화동 산63-2	일반	-	-	
기정	중로	3	A	12~15	집산 도로	375 (308)	방화동 543-6	개화동로27길 13	일반	-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2	방화동 618-1	방화동 617-6	일반	-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82	방화동 612-190	방화동 산63-2	일반	-	-	
기정	소로	2	A	8	집산 도로	345	금녕화로 13	초원로6길 15	일반	-	-	
기정	소로	2	148	8	집산 도로	107	방화동 614-31	방화동로52길21	일반	-	-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40	방화동 596-1	금녕화로1길 7	일반	-	-	

나)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개화동로27나길 8-9 (방화동 616-22)	4,610	-	4,610	서고제2012-192 호 (2012.7.26.)	-

다)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1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개화동로27나길10 (방화동 617-17)	1,344	-	1,344	-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문화시설 연면적 900㎡,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900㎡ (어린이집 600㎡,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300㎡)

▶ 건축물의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방화문화예술복합공간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라) 문화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1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개화동로27나길10 (방화동 617-17)	1,344	-	1,344	-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문화시설 연면적 900㎡,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900㎡ (어린이집 600㎡,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300㎡)

▶ 건축물의 규모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방화문화예술복합공간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마)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1	학교	방화 중학교	개화동로27길 9 (방화동 636-1)	13,270.0	-	13,270.0	서고제50호 (1982.2.4.)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획지1)	소 계	-	증)9135.42	9,135.42	-
	맘스스테이션	-	증)33.75	33.75	지상
	주민운동시설	-	증)545.74	545.74	옥외
	주민공동시설	-	증)4,485.08	4,485.08	옥내
	경로당	-	증)385.22	385.22	지상
	어린이집	-	증)604.27	604.27	지상
	작은도서관	-	증)235.75	235.75	지상
	어린이놀이터	-	증)1,805.89	1,805.89	지상
	다함께돌봄센터	-	증)106.74	106.74	지상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	증)221.99	221.99	지하
	경비실	-	증)40.00	40.00	지상(2개소)
	지역문화센터	-	증)395.91	395.91	지상
	지역공동체지원센터	-	증)275.08	275.08	지상

※ 건축심의 결과 공동이용시설 세부계획 결정
※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변경될 수 있음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방화3 재정비 촉진구역	92,139	획지1	75,567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 (방화동 615-103)일대	413	-	-	413	-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 설
변경		92,139	획지1	75,567		408	-	-	408	-	

나) 건축시설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예정법적	
기정	방화3 재정비 촉진구역	92,139	획지1	75,567.0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 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0 이하	218 이하	해발 57.86m미만
			획지2	685.0	강서구 금남화로3길 16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3	92.0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4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4	461.0	강서구 방화동로7길10-6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5	222.0	강서구 금남화로 13	관계법령에 따름				
○ 총세대수 : 1,476세대										
구분(전용면적)						세대수(세대)	구성비(%)	비고		
합 계						1,476	100.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소형주택	소 계		41	2.8
							60㎡이하		31	2.1
							60㎡~85㎡		10	0.7
							기부채납		소 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예정법적																				
	분양			60㎡이하	10	0.7																							
				60㎡~85㎡	5	0.3																							
				소 계	1,420	96.2																							
				60㎡이하	354	24.0																							
				60㎡~85㎡	765	51.8																							
				85㎡초과	301	20.4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 × α토지) × 가중치 + (0.7 × α건축물)} = 185+185×{(1.3X0.08316)×0.96951+(0.7×0.01647)} = 206.52% ≒ 206% 이하 ※ 허용용적률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180% + 5% = 185%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6,283.9㎡/75,567.0㎡ = 0.08316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환산부지)/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248.1㎡/75,567.0㎡ = 0.0164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8%이하 (건축계획 용적률 217.89%) ●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률=(218%-206%)×30% = 3.6% ● 소형임대주택건설 연면적= 75,567㎡×3.6% = 2,720.40㎡ 이상 확보 필요 <table><tr><th>전용면적</th><th>공용면적</th><th>공급면적</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tr><td>59.94㎡</td><td>20.96㎡</td><td>80.90㎡</td><td>31</td><td>2,507.90㎡</td></tr><tr><td>84.90㎡</td><td>26.81㎡</td><td>111.71㎡</td><td>10</td><td>1,117.10㎡</td></tr><tr><td colspan="3">합 계</td><td>41</td><td>3,625.00㎡</td></tr></table>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4㎡	20.96㎡	80.90㎡	31	2,507.90㎡	84.90㎡	26.81㎡	111.71㎡	10	1,117.10㎡	합 계			41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4㎡	20.96㎡	80.90㎡	31	2,507.90㎡																								
	84.90㎡	26.81㎡	111.71㎡	10	1,117.10㎡																								
	합 계			41	3,625.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5m지정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① : 폭 8m 이상, 소로2-A~중로3-2호선 연결 ○ 공공보행통로② : 폭 6m 이상, 소로3-A~중로3-2호선 연결																										
기타사항		○ 공개공지 : 공공보행통로 결절부																											

※ 시설물기부채납 연면적 : 문화시설 900㎡, 사회복지시설 900㎡(어린이집 600㎡,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300㎡)

※ 공공주택 기부채납 : 전용 59㎡ 10세대(연면적 1,438.5㎡), 전용 84㎡ 5세대(연면적 1,004.35㎡)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단독주택재건축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2019.4.25.)변영. 현 사업단계에서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손실보상에 대한 용적률인센티브 5%를 적용하고, 향후 관리처분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계획 등을 재조정(최대 10%이내)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예정법적	
변경	방화3 재정비 촉진구역	92,139	획지1	75,567.0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 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0 이하	218 이하	해발 57.86m미만
			획지2	685.0	강서구 금남화로3길 16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3	92.0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4	관계법령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예정법적	
			획지4	461.0	강서구 방화동로7길10-6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5	222.0	강서구 금강화로 13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를	○ 총세대수 : 1,476세대									
	구분(전용면적)					세대수(세대)	구성비(%)	비고		
	합 계					1,476	100.0			
	공공 주택	소형 주택	소 계			41	2.8			
			60㎡이하			31	2.1			
			60㎡~85㎡			10	0.7			
		기부 채납	소 계			15	1.0			
			60㎡이하			10	0.7			
			60㎡~85㎡			5	0.3			
	분양	소 계			1,420	96.2				
		60㎡이하			349	23.6				
		60㎡~85㎡			770	52.2				
		85㎡초과			301	20.4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α토지)×가중치+(0.7×α건축물)} = 185+185×{(1.3×0.08316)×0.96951+(0.7×0.01647)} = 206.52% ≒ 206% 이하 ※ 허용용적률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180% + 5% = 185%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6,283.9㎡/75,567.0㎡ = 0.08316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환산부지)/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248.1㎡/75,567.0㎡ = 0.0164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8.0% (건축계획용적률 : 217.90%) ●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률 = (218%-206%)×30% = 3.6% ● 소형임대주택건설 연면적 = 75,567㎡×3.6% = 2,720.40㎡ 이상 확보 필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4㎡		20.96㎡		80.90㎡		31	2,507.90㎡		
	84.90㎡		26.81㎡		111.71㎡		10	1,117.10㎡		
	합 계						41	3,625.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5m지정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① : 폭 8m 이상, 소로2-A~중로3-2호선 연결 ○ 공공보행통로② : 폭 6m 이상, 소로3-A~중로3-2호선 연결									
기타사항	○ 공개공지 : 공공보행통로 결절부									

※ 시설물기부채납 연면적 : 문화시설 900㎡, 사회복지시설 900㎡(어린이집 600㎡, 아동청소년건강지원시설 300㎡)

※ 공공주택 기부채납 : 전용 59㎡ 10세대(연면적 1,438.5㎡), 전용 84㎡ 5세대(연면적 1,004.35㎡)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단독주택재건축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2019.4.25.)반영. 현 사업단계에서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손실보상에 대한 용적률인센티브 5%를 적용하고, 향후 관리처분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계획 등을 재조정(최대 10%이내)

▶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및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기부채납(㎡)		세부용도	관리청	비고
			대지면적	건축물/현금			
				건축면적(㎡)			
①	㉠	문화시설	1,344	900㎡	방화문화예술복합공간	강서구	-
②	㉡	사회복지시설1		600㎡	구립어린이집 (아이슬어린이집)	강서구	
③	㉢	사회복지시설2		300㎡	-	서울특별시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공공주택 기부채납 계획

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세대수	제공면적	비고
기 정	합계			15	3,625.00㎡	-
	전용59㎡	80.90㎡	143.85㎡	10	2,507.90㎡	
	전용84㎡	111.71㎡	200.87㎡	5	1,117.10㎡	
변 경	합계			15	2,442.85㎡	-
	전용59㎡	80.90㎡	143.85㎡	10	1,438.50㎡	
	전용84㎡	111.71㎡	200.87㎡	5	1,004.35㎡	

※ 기정 제공면적 오기 정정에 따른 변경

(7) 정비사업 시행 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기존	계획	증 감	
기정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일로 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주택재건축 조 합	1,142	1,476	증)334	-
변경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일로 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주택재건축 조 합	1,413	1,476	증)63	-

(8)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경		
계	-	77,027.0	-	77,027.0	-	77,027.0	100.0	-
①	I	77,027.0	1	75,567.0	-	75,567.0	98.3	공동주택
			2	685.0	-	685.0	0.8	획지
			3	92.0	-	92.0	0.1	획지
			4	461.0	-	461.0	0.5	획지
			5	222.0	-	222.0	0.3	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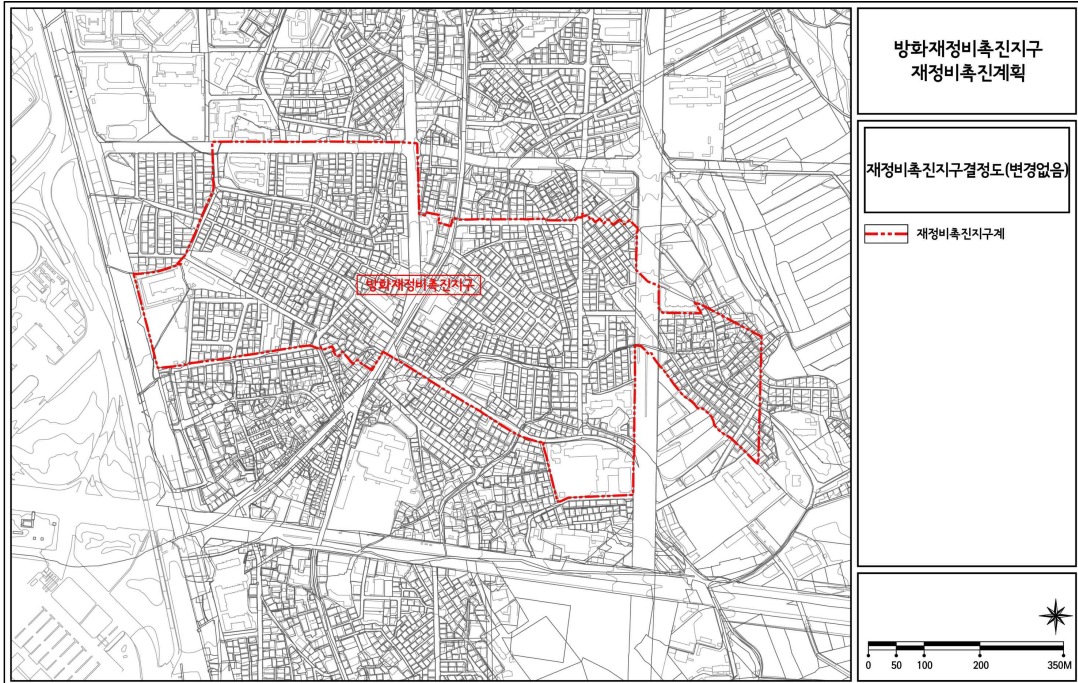
(9)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소형주택 공급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기정	3,625.00㎡	31	59.94	80.90	3,625.00㎡(계획) > 2,720.40㎡(기준)
		10	84.90	11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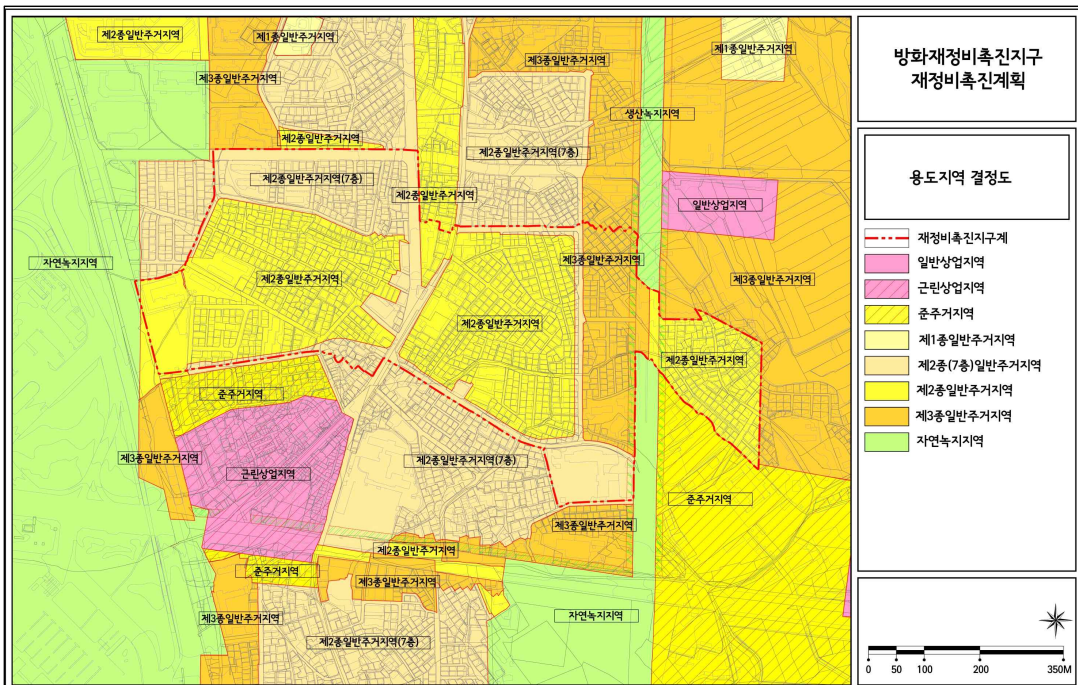
5. 기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22) 및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54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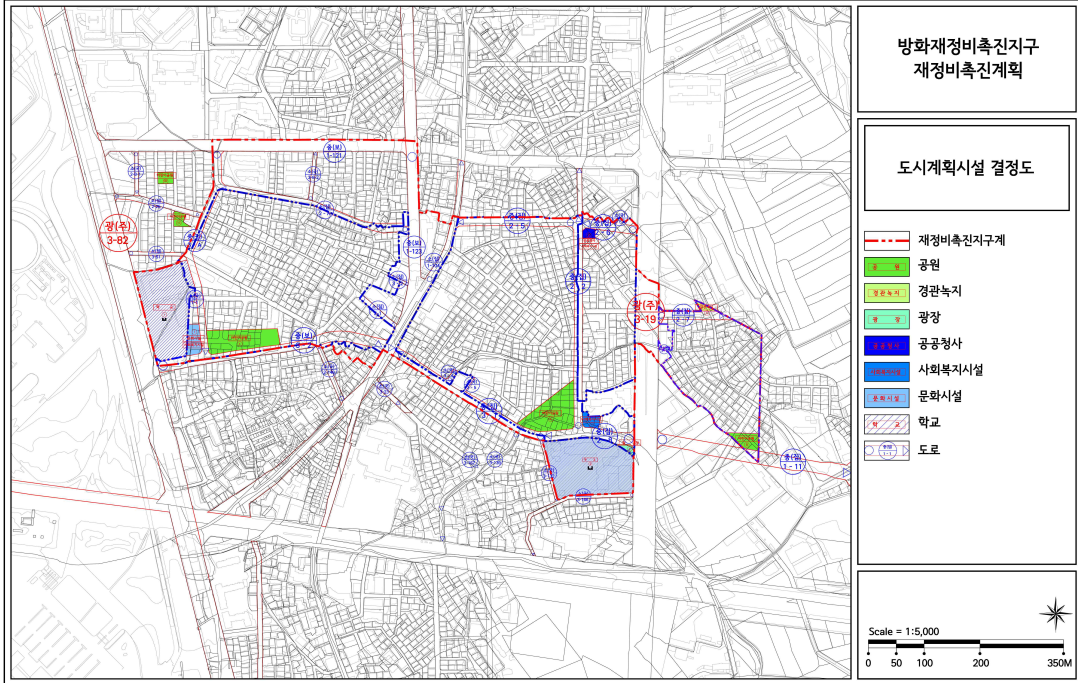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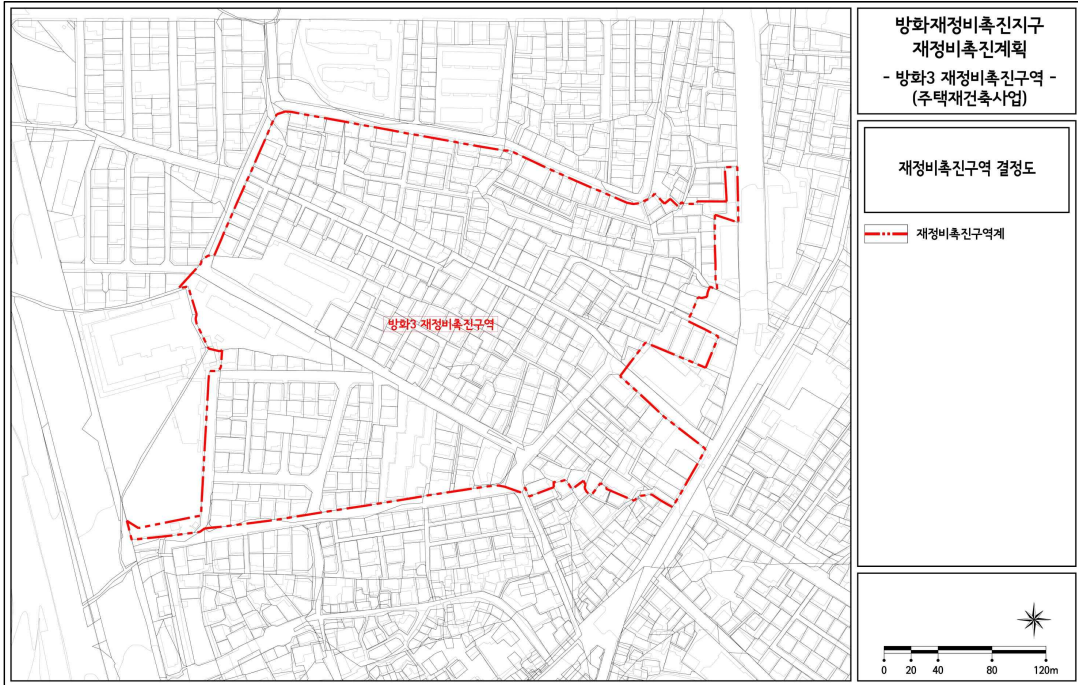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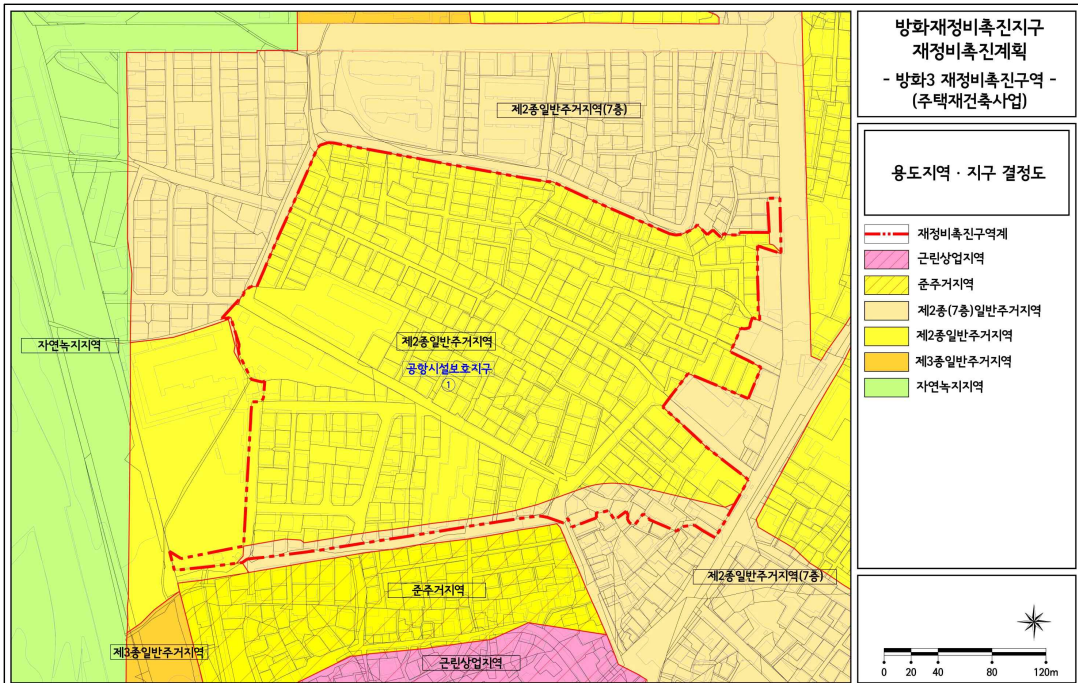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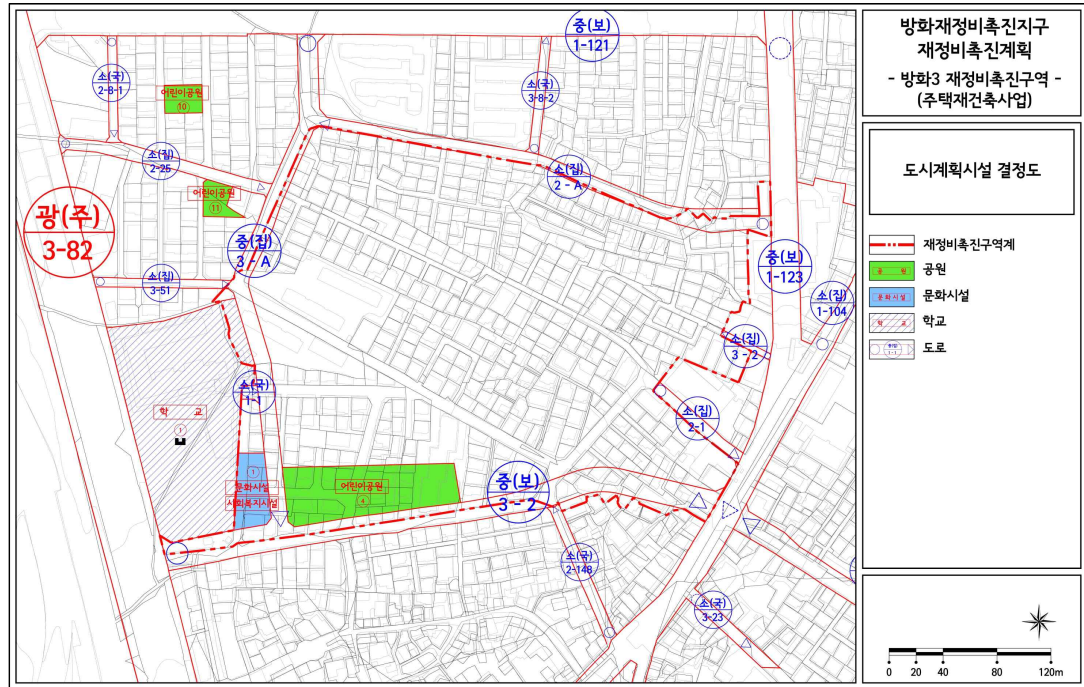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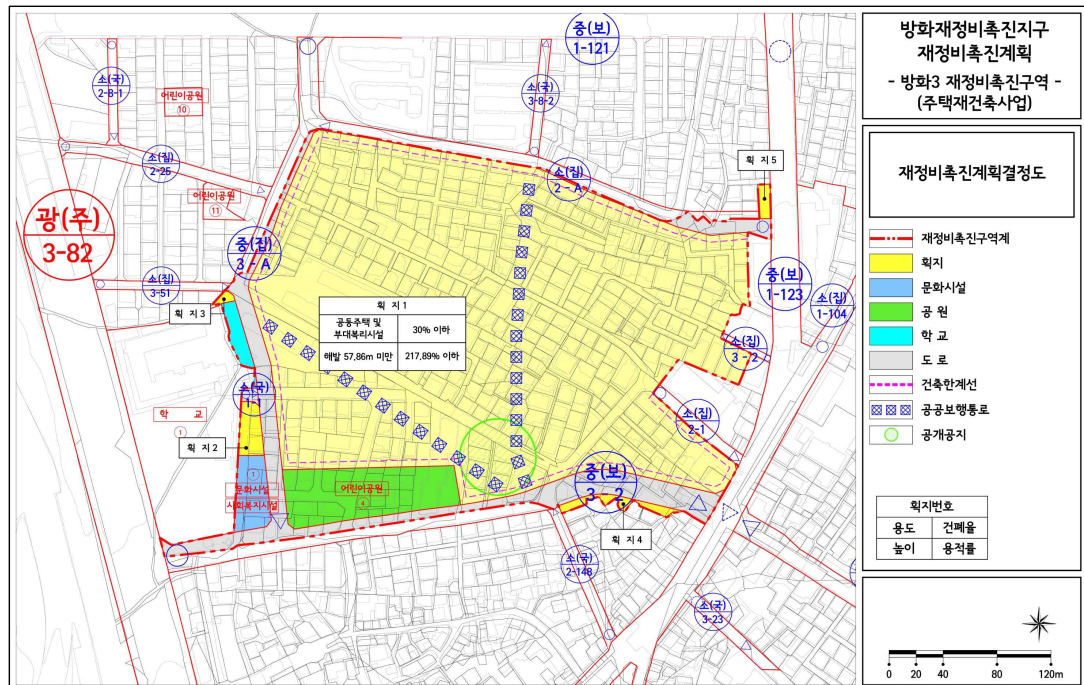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5호(2017.07.13)호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 2019-425호(2019.12.19.) 변경 지정 고시된 반포아파트지구(1주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2조제5항 따라 2023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2023. 12. 12.)를 거쳐 조건부 의결되었으므로 『건축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변경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지정 목적 (변경없음)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범 위	면 적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1-1일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168,472.6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면 적(㎡)	용 도	명 칭	대지면적(㎡)	최고층수	비고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정비구역	168,472.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C13	119,779.8	35층(110m) 이하 [한강연접 첫 주동 높이 10-15층(48m)이하] (필로티포함)	-
		근생, 업무, 판매	C18	7,370.4	5층 이하	-
		근생	C16	508.3	5층 이하	-
		근생	C17	545.4	5층 이하	-
		문화시설	C14	2,324.1	5층 이하	-
		공공청사	C15	1,211.3	5층 이하	-

※ 세대수, 면적, 용도 등 세부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례적용사항(변경없음)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신반포3차,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 단,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저층이 배치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형태구현 및 통경축 확보 가능 - 단지 내 주거성능 및 거주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고 주거성 능 기준을 만족하게 하며, 다양한 주동 및 휴먼스케일의 외부공간 계획 및 통경축 확보 가능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3차,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172호
(2023.12.07.)]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건 축 설 계	경쟁입찰 (2017년 5월 27일)
공 사 감 리	경쟁입찰 (주택법 제43조)
건 축 시 공	경쟁입찰 (2001년 5월 27일)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변경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 02-2133-7138),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02-2155-7305)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2021.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4호(2023.4.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948,390.3	증) 102.0	948,492.3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중로1-135호선 미조성 구간 사유지의 촉진지구 편입)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년도 : 2025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사람과 장소 중심의 매력적인 지형 순응형 주거지로 계획하여 사람 사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 남산, 한강 등 주변지역을 고려한 종합적 · 광역적 계획수립으로 효율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라.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8,390.3	증)102.0	948,492.3	100.0	-
주택 용지	소계	661,271.3	감)711.0	660,560.3	69.7	-
	주상복합	168,220.3	감)583.0	167,637.3	17.7	-
	공동주택	493,051.0	감)128.0	492,923.0	52.0	존치 아파트 포함
	공공주택					
기타	소계	27,860.6	-	27,860.6	2.9	-
	종교시설용지	10,631.1	-	10,631.1	1.1	-
	우체국	450.0	-	450.0	0.1	-
	근린생활용지	3,764.5	-	3,764.5	0.4	-
	기타용지	3,119.0	-	3,119.0	0.3	변전소 이전부지
	학교용지	9,896.0	-	9,896.0	1.0	존치4(보광초)
공공 용지	소계	259,258.4	증)813.0	260,071.4	27.4	-
	도로	125,476.3	증)813.0	126,289.3	13.3	-
	공원	48,154.2	-	48,154.2	5.1	-
	녹지	2,801.0	-	2,801.0	0.3	-
	공공청사	3,050.0	-	3,050.0	0.3	-
	사회복지시설	3,040.0	-	3,040.0	0.3	-
	교육시설	60,930.4	-	60,930.4	6.4	-
	공공문화시설	10,851.5	-	10,851.5	1.2	-
	체육시설	4,955.0	-	4,955.0	0.5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도로확폭 및 사유지 도로편입)

2)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 : 33,450인 / 12,944세대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775	증) 169	12,944	33,012	증) 438	33,450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2,075	증) 169	12,244	31,396	증) 438	31,834	-
	40㎡ 이하	984	감) 30	954	2,559	감) 79	2,480	-
	40㎡~60㎡	4,583	증) 177	4,760	11,916	증) 460	12,376	-
	60㎡~85㎡	3,940	감) 181	3,759	10,244	감) 471	9,773	-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85㎡ 초과	2,568	증) 203	2,771	6,677	증) 528	7,205	-
존치관리구역		700	-	700	1,616	-	1,616	기존세대 수용

※ 변경 인구수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6인을 적용함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및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	82,826.9	-	82,826.9	-
교육 시설	소 계	2	60,930.4	-	60,930.4	-
	초등학교	1	10,755.4	-	10,755.4	-
	중·고등학교	1	50,175.0	-	50,175.0	-
공공·체육 문화시설	소 계	10	21,896.5	-	21,896.5	-
	공공청사	5	7,951.6	-	7,951.6	-
	소방파출소	1	800.0	-	800.0	-
	사회복지시설	3	8,189.9	-	8,189.9	-
	체육시설	1	4,955.0	-	4,955.0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	50,955.2	-	50,955.2	-
공원 시설	소 계	11	48,154.2	-	48,154.2	-
	문화공원	3	17,364.9	-	17,364.9	-
	어린이공원	2	9,152.2	-	9,152.2	-
	소공원	6	21,637.1	-	21,637.1	-
녹지 시설	소 계	1	2,801.0	-	2,801.0	-
	연결녹지	1	2,801.0	-	2,801.0	-
	완충녹지	-	-	-	-	-
	경관녹지	-	-	-	-	-

5) 교통계획(변경)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경관계획(변경)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	촉진2	뉴타운	보광동	265	11.5	170%	-	60%	2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3	뉴타운	한남동	686	38.6	190%	-	60%	1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4	뉴타운	보광동	360	16.0	190%	-	60%	2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5	뉴타운	동빙고동	60	18.4	190%	-	60%	2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8,390.3	증)102.0	948,492.3	-	-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4개 구역)		844,839.1	증)102.0	844,941.1	-	-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14,580.6	-	114,580.6	재개발사업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6,395.5	-	386,395.5	재개발사업	-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0,156.0	증)102.0	160,258.0	재개발사업	-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3,707.0	-	183,707.0	재개발사업	-
존치관리 구역	소 계 (4개 구역)		103,551.2	-	103,551.2	-	-
	한남1 존치관리구역	보광동 151번지 일대	58,795.0	-	58,795.0	-	오산 중고등학교, 삼성리버빌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2 준치관리구역	한남동 807번지 일대	28,996.0	-	28,996.0	-	-
	한남3 준치관리구역	한남동 550번지 일대	2,961.0	-	2,961.0	-	-
	한남4 준치관리구역	이태원동 15-13번지 일대	12,799.2	-	12,799.2	-	보광 초등학교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중로1-135호선 미조성 구간 사유지의 촉진구역 편입)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156	증)102	160,258	100.0	-
주거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131,120	증)102	131,222	81.9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63	-	1,563	1.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9,557	-	129,557	80.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5	45	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57	57	0.1	-
	준주거지역		29,036	-	29,036	18.1	-

※ 변경사유 : 중로1-135호선 조성 구간 사유지의 촉진구역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단순 면적 증가

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10)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 고도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고도 지구	-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일대	28m이하	296 (296)	서고 제252호 (02.6.27)	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고도 지구	-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일대	23m이하	1,241 (1,241)	서고 제252호 (02.6.27)	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을 의미함

○ 경관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특화경관지구	역사문화	강변북로변	13,440	1,120	양측12	서고 제194호 (84.4.17.)	-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 역 명	주 된 용 도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최대 용적률 (%)	높이계획		비고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m)	
촉진 구역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70	202	202	-/14	45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32.5	232.5	-/22	73	-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26	226	-/23	73	기정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28	228	-/23	73	변경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22.3	222.3	-/23	73	-

※ 한남3,4구역 건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임(단, 구역전체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해발90m 이하 적용)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구 분	획 지 명	최 고 높 이	비 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3-7-2	73m	
	4-31-1	95m	기정
	-	-	변경
	4-31-1	73m	기정
	4-32-1	73m	기정

※ 변경사유 : 오기정정(서고제2023-49호(2023.2.16.))에 따라 4-31-1(95m)는 4-31-1(73m), 4-32-1(73m)로 기 변경된 사항)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변경)

구역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시설제공 면적(㎡) (건축물등) -②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①+②-③-④-⑤)	순부담 률 (%)	
			합계 -①	도로	공원 녹지	기타		계획 기반 시설내 -③	기존 기반 시설내 -④	유상 매입 시설 -⑤			
합계	기정	844,839.1	203,695.2	120,888.3	50,955.2	31,851.9	18,244.6	59,396.0	60,405.7	-	102,138.1	12.1	
	변경	844,941.1	204,508.2	121,701.3	50,955.2	31,851.9	18,244.6	59,396.0	60,405.7	-	102,951.1	12.2	
촉진구역	한남2 재정비 촉진구역		114,580.6	30,821.7	19,008.8	5,993.6	5,819.3	4,940.0	12,302.4	11,721.1	-	11,738.2	10.2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		386,395.5	92,576.5	51,849.3	27,263.6	13,463.6	5,512.0	21,945.2	25,576.3	-	50,567.0	13.1
	한남4 재정비 촉진 구역	기 정	160,156.0	43,168.0	28,950.0	8,128.0	6,090.0	3,796.0	17,426.6	10,718.0	-	18,819.4	11.8
		변 경	160,258.0	43,981.0	29,763.0	8,128.0	6,090.0	3,796.0	17,426.6	10,718.0	-	19,632.4	12.3
	한남5 재정비 촉진구역		183,707.0	37,129.0	21,080.2	9,570.0	6,479.0	3,996.6	7,721.8	12,390.3	-	21,013.5	11.4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순부담’ 면적 산정시 무상양여 대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계획기반시설 내, 기존기반시설내)는 기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만 해당됨(주거사업과-6457(2018.6.8.))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순부담면적 및 순부담률 변경(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부담주체별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비용분담				비고
		시	구	교육청	민간	
도로	기정	-	-	-	○	(소로3-8호선 및 소로3-9호선 현황도로 정비포함)
	변경	-	-	-	○	(소로3-8호선 및 소로3-9호선 현황도로 정비포함) (중로1-135호선 미조성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 포함)
주차장		-	-	-	○	(한남2·3·4촉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비 민간부담)
공원·녹지		-	-	-	○	-
공공공지		-	-	-	○	-
공공청사		-	-	-	○	(한남2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구 분	비용분담				비고
	시	구	교육청	민간	
					(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4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사회복지시설	-	-	-	○	(한남2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한남4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학교	-	-	-	○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체육시설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청소년수련시설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청소년 문화의집, 진로직업체험센터)
문화시설(도서관)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중로1-135호선 도로 정비 포함)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구역명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소계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50~60㎡	전용면적 60~85㎡	
합 계		12,075	10,251	1,824	709	785	300	30	기정
		12,244	10,396	1,848	709	809	300	30	변경
촉진구역	한남2재정비 촉진구역	1,537	1,299	238	104	134	-	-	-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5,816	4,940	876	356	356	164	-	-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2,167	1,841	326	117	148	51	10	기정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2,331	1,981	350	117	172	51	10	변경
	한남5재정비 촉진구역	2,555	2,171	384	132	147	85	20	기정
	한남5재정비 촉진구역	2,560	2,176	384	132	147	85	20	변경

※ 한남4,5재정비촉진구역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10.6)에 의거하여 기준용적률 20%상향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및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대상	비고
1단계	2009년	2021년	2024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2단계	2010년	2022년	2025년	한남2, 한남4,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촉진구역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다음단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시장이 권역별 주택수급 등을 판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7) 방재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360 일대	160,156	증) 102	160,258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중로1-135호선 미조정 구간 사유지의 촉진구역 편입)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156	증)102	160,258	100.00	-
획지	소 계	116,052	감)711	115,341	71.98	-
	주상복합	21,665	감)583	21,082	13.16	-
	공동주택	94,387	감)128	94,259	58.82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43,168	증)813	43,981	27.44	-
	도 로	28,950	증)813	29,763	18.57	-
	공 원	8,128	-	8,128	5.07	소공원,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A	2,040	-	2,040	1.27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B	1,000	-	1,000	0.63	키움센터
	공공청사A	1,200	-	1,200	0.75	서울장학재단 등
	공공청사B	1,400	-	1,400	0.87	주민센터
	공공청사C	450	-	450	0.28	파출소
기반 시설	소 계	450	-	450	0.28	-
	우체국	450	-	450	0.28	-
기타	소 계	486	-	486	0.30	-
	종교시설	486	-	486	0.30	보광사

※ 주차장은 사회복지시설A과 중복결정
※ 변경사유 : 도로확폭 및 사유지 도로편입(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A	15~30 (20)	보조 도로	1,204 (737)	보광동 129-1대 일대	이태원동 141-11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128호 (77.4.28.)	보광로
변경	중로	1	A	15~30 (20~23.25)	보조 도로	1,204 (737)	보광동 129-1대 일대	이태원동 141-11대 일대	일반 도로	-	총고제772호 (36.12.26.)	보광로
기정	중로	1	135	20~27	보조 도로	4,545	반포대교	응비교	일반도 로	-	건고제143호 (70.3.26)	
변경	중로	1	135	20~27 (23)	보조도 로	4,545 (334)	반포대교	응비교	일반도 로	-	건고제143호 (70.3.26)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410 (265)	동빙고동 4-3도 일대	보광동 216-3도 일대	일반 도로	-	건고제578호 (36.12.26.)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도로	500 (195)	한남동 543-8대 일대	보광동 80-2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590호 (78.11.8.)	-
기정	중로	3	20	15	집산 도로	50	동빙고동 1-2도 일대	보광동 387-5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2023-49호 (23.02.16)	-
기정	중로	2	A	15	집산 도로	290	보광동 231-23대 일대	동빙고동 1-3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2023-49호 (23.02.16)	-
변경	중로	2	A	15~21	집산 도로	290	보광동 231-23대 일대	동빙고동 1-3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2023-49호 (23.02.16)	-
기정	소로	2	A	10	집산 도로	270	보광동 151-3도 일대	보광동 216-99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2023-49호 (23.02.16)	-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을 의미함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중로1-135호선 편입도로 경계(도면) 오기정정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영주차장	보광동 215-2일대	2,040	-	2,040	서고제2023-49호 (2023.02.16)	사회복지시설A 증복결정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공원	소공원	보광동 393일대	6,565.0	-	6,565.0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기정	3	공원	어린이 공원	보광동 35-13일대	7,536.3 (1,563)	-	7,536.3 (1,563)	서고제2017-223호 (2017.06.29.)	-

※ () : 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공공청사	공공청사	보광동 243-5일대	1,200	-	1,200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기정	B	공공청사	주민센터	보광동 216-56일대	1,400	-	1,400	서고제2023-49호 (2023.02.16)	보광동 주민센터
기정	C	공공청사	파출소	보광동 216-12일대	450	-	450	서고제2023-49호 (2023.02.16)	파출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사회복지시설	보광동 215-2일대	2,040	-	2,040	서고제2023-49호 (2023.02.16)	주차장 증복결정
기정	B	사회복지시설	보광동 243-8일대	1,000	-	1,000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160,156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712	1	-	711	-	-
변경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160,258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712	1	-	711	-	-

※ 존치되는 건축물 1개동은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지역자산 보전계획에 따라 종교시설로 존치되는 보광사(무효요)를 의미함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중로1-135호선 미조성 구간 사유지의 촉진구역 편입)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 수	최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한남4 재정비 촉진구역	160,156	4-30	18,683	용산구 보광동 44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60이하	15층	48m
			4-31(1)	8,466	용산구 보광동 336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60이하	23층	73m
			4-31(2)	18,786	용산구 보광동 373-1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60이하	12층	39m
			4-32(1)	13,199	용산구 보광동 231-51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70이하	23층	73m
			4-32(2)	20,157	용산구 보광동 342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85이하	12층	39m
			4-33	20,950	용산구 보광동 417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70이하	7층	23m
			4-34	15,400	용산구 보광동 168-32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0이하	10층	33m
변경	한남4 재정비 촉진구역	160,258	4-30	18,593	용산구 보광동 44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67이하	15층	55m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 수	최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4-31(1)	8,201	용산구 보광동 336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48이하	23층	73m			
			4-31(2)	18,763	용산구 보광동 373-1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70이하	12층	46m			
			4-32(1)	12,881	용산구 보광동 231-51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45이하	23층	73m			
			4-32(2)	20,142	용산구 보광동 342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26이하	15층	55m			
			4-33	20,950	용산구 보광동 417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40이하	12층	46m			
			4-34	15,400	용산구 보광동 168-32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14이하	15층	5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167	증)164	2,331	1,841	증)140	1,981	326	증)24	350
			40㎡미만		249	감)31	218	132	감)31	101	117	-	117
			40~50㎡미만		297	증)47	344	149	증)23	172	148	증)24	172
			50~60㎡미만		353	증)89	442	302	증)89	391	51	-	51
			60~85㎡미만		651	감)25	626	641	감)25	616	10	-	10
			85㎡이상		617	증)84	701	617	증)84	701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설치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구역계 조정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재개발사업	2단계 (2010~2025년)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내수재해위험지구 EL(+18.5m 이상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건립위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기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2,192.2	23,000이상	326	350	-	15.0%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22,192.2	23,000이상	117	117	40㎡ 미만	5.0%

건립위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기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48	172	40㎡~50㎡ 미만	7.4%
			51	51	50㎡~60㎡ 미만	2.2%
			10	10	60㎡ 초과	0.4%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임대주택 확보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36	40 (43)	-	350 (308)	서빙고동 46-6도 일대	서빙고동 180-7도 일대	일반 도로	-	건고 제8호 (76.1.21)	녹사평 대로
기정	중로	1	135	20~27 (23)	보조 간선	4,545 (413)	반포대교	용비교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410 (145)	동빙고동 4-3도 일대	보광동 216-3도 일대	일반 도로	-	건고 제578호 (36.12.26)	장문로
기정	중로	2	11	15~18	집산 도로	558 (558)	주성동 51-5도 일대	동빙고동 28-2도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2	15~18	집산 도로	370 (370)	동빙고동 44-10도 일대	동빙고동 165-3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중로	2	12	15~18	집산 도로	370 (370)	동빙고동 165-3도 일대	동빙고동 44-10도 일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3	15	집산 도로	139 (139)	동빙고동 203-1대 일대	서빙고동 79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 ()는 한남5구역 내 연장을 의미함

※ 변경사유 : 중로 1-135호선 도면 표기 및 중로 2-12호선 기종점에 대한 오기 정정

■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공원	문화 공원	동빙고동 42-17일대	7,187	-	7,187	서고 제2021-696호 (2021.12.16)	-
기정	5	공원	소공원	서빙고동 134일대	2,383	-	2,383	서고 제2021-696호 (2021.12.16)	-

■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공공청사	주민센터	변경	동빙고동 180일대	1,524	-	1,524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⑤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변경	주성동 43-8일대	800	-	800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 체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체육시설	동빙고동 249-1일대	4,955	-	4,955	서고 제2021-696호 (2021.12.16)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도서관) 중복결정

■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진로직업체험센터	동빙고동 249-1일대	4,955	-	4,955	서고 제2021-696호 (2021.12.16)	체육시설, 문화시설(도서관) 중복결정

■ 문화시설(공공도서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동빙고동 249-1일대	4,955	-	4,955	서고 제2021-696호 (2021.12.16)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중복결정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최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 층수			
기정	한남5 재정비 촉진 구역	183,707	5-36	36,481	용산구 동빙고동 28-12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5이하	-	7	25m		
			5-37	24,206	용산구 동빙고동 225-1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0이하	-	15	50m		
			5-39	16,126	용산구 주성동 34-7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80이하	-	10	35m		
			5-41	41,810	용산구 동빙고동 73번지일대	공동주택	50이하	230이하	-	12	41m		
			5-42	22,563	용산구 서빙고동 122-8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5이하	-	23	73m		
변경	한남5 재정비 촉진 구역	183,707	5-36	36,481	용산구 동빙고동 28-12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90이하	-	12	41m		
			5-37	24,206	용산구 동빙고동 225-1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5이하	-	15	50m		
			5-39	16,126	용산구 주성동 34-7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10	35m		
			5-41	41,810	용산구 동빙고동 73번지일대	공동주택	50이하	215이하	-	12	41m		
			5-42	22,563	용산구 서빙고동 122-8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5이하	-	23	73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555	증)5	2,560	2,171	증)5	2,176	384	-	384
			40㎡미만		264	증)1	265	132	증)1	133	132	-	132
			40~50㎡미만		294	증)1	295	147	증)1	148	147	-	147
			50~60㎡미만		431	증)40	471	346	증)40	386	85	-	85
			60~85㎡미만		816	감)156	660	796	감)156	640	20	-	20
			85㎡이상		750	증)119	869	750	증)119	869	-	-	-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 층수	최고 높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								

- ※ 1.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공공시설 설치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구역계 조정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3. 구역 전체의 건축물 높이는 해발 90m이하 적용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에 명시

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360 일대	160,156	증)102	160,258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중로1-135호선 미조정 구간 사유지의 촉진구역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156	증)102	160,258	100.0	-
주거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131,120	증)102	131,222	81.9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63	-	1,563	1.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9,557	-	129,557	80.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5	45	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57	57	0.1	-
	준주거지역		29,036	-	29,036	18.1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보광동 70-4,8,27,36, 35-38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5	-	중로1-135호선 조성 구간 사유지의 축진구역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단순 면적 증가
보광동 37-1, 38-1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57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A	15~30 (20)	보조 도로	1,204 (737)	보광동 129-1대 일대	이태원동 141-11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128호 (77.4.28.)	보광로
변경	중로	1	A	15~30 (20-23.25)	보조 도로	1,204 (737)	보광동 129-1대 일대	이태원동 141-11대 일대	일반 도로	-	총고제772호 (36.12.26.)	보광로
기정	중로	1	135	20~27	보조 도로	4,545	반포대교	응비교	일반 도로	-	건고제143호 (70.3.26)	-
변경	중로	1	135	20~27 (23)	보조 도로	4,545 (334)	반포대교	응비교	일반 도로	-	건고제143호 (70.3.26)	-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410 (265)	동빙고동 4-3도 일대	보광동 216-3도 일대	일반 도로	-	건고제578호 (36.12.26.)	-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도로	500 (195)	한남동 543-8대 일대	보광동 80-2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590호 (78.11.8.)	-
기정	중로	3	20	15	집산 도로	50	동빙고동 1-2도 일대	보광동 387-5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2023-49호 (23.02.16)	-
기정	중로	2	A	15	집산 도로	290	보광동 231-23대 일대	동빙고동 1-3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2023-49호 (23.02.16)	-
변경	중로	2	A	15-21	집산 도로	290	보광동 231-23대 일대	동빙고동 1-3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2023-49호 (23.02.16)	-
기정	소로	2	A	10	집산 도로	270	보광동 151-3도 일대	보광동 216-99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2023-49호 (23.02.16)	-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을 의미함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A	중로 1-A	•폭원변경 - 20m → 20~23.25m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 버스베이 3개소 설치(B=3.0m) - 좌회전,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위해 도로확폭 (B=20m→ 20.25m)
중로 1-135	중로 1-135	•편입도로 경계 오기정정	•편입도로 조서 추가(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도로경계(도면) 오기정정
중로 2-A	중로 2-A	•폭원변경 - 15m → 15~21m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 교차로 양측 우회전차로 설치를 위해 도로확폭 (B=15m → 15~21m)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획지	4-30	18,683	감) 90	18,593	-
변경	획지	4-31(1)	8,466	감) 265	8,201	-
변경	획지	4-31(2)	18,786	감) 23	18,763	-
변경	획지	4-32(1)	13,199	감) 318	12,881	-
변경	획지	4-32(2)	20,157	감) 15	20,142	-
기정	획지	4-33	20,950	-	20,950	-
기정	획지	4-34	15,400	-	15,400	-

(나) 건축물 용도·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190% 이하	-	226%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210.54%
	변경	190% 이하	-	228%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226.98%

■ 높이 계획(변경)

구분	높이기준		비고
	기정	변경	
4-30	최고 15층 이하 / 최고 48m	최고 15층 이하 / 최고 55m	-
4-31(1)	최고 23층 이하 / 최고 73m		-
4-31(2)	최고 12층 이하 / 최고 39m	최고 12층 이하 / 최고 46m	-
4-32(1)	최고 23층 이하 / 최고 73m		-
4-32(2)	최고 12층 이하 / 최고 39m	최고 15층 이하 / 최고 55m	-
4-33	최고 7층 이하 / 최고 23m	최고 12층 이하 / 최고 46m	-
4-34	최고 10층 이하 / 최고 33m	최고 15층 이하 / 최고 55m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및 위치		비고
건축선	생활중심 가로변	- 보행공간, 휴식공간 조성 - 건축한계선 : 1~3m ※ 연도형상가 앞의 시설물계획은 가능한 배제	생활중심 가로변	-
		지구통경축 기준에 따른 건축선 지정 - 건축한계선 : 3m - 벽면한계선 : 5m(11층 이상)	보광로	기정
		지구통경축 기준에 따른 건축선 지정 - 건축한계선(일반건축물) : 3m - 건축한계선(공동주택) : 저층 부대복리시설 3m - 벽면한계선(공동주택) : 주거동 5m - 벽면한계선(15층 이상 건축물) : 6m(11층 이상)	보광로	변경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190% 이하	-	222.3%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222.30%
	변경	190% 이하	-	222.3%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221.95%

■ 높이 계획(변경)

구분	높이기준		비고
	기정	변경	
5-36	최고 7층 이하 / 최고 25M	최고 12층 이하 / 최고 41M	-
5-37	최고 15층 이하 / 최고 50M		-
5-39	최고 10층 이하 / 최고 39M		-
5-41	최고 12층 이하 / 최고 41M		-
5-42	최고 23층 이하 / 최고 73M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1) 한남4촉진구역 : '23년 제12차('23.12.21.)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1	○ 4-34블록의 높이계획 변경에 따라 확보되는 오픈스페이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4-30블록 및 4-34블록의 주동 형태(탐상형)와 통경축은 금회 상정된 건축 계획을 유지하시기 바람(권장)	○ 4-30블록 및 4-34블록의 주동 형태(탐상형)와 통경축은 금회 상정안으로 유지하겠음.	반영
2	○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여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 · 4-30블록은 건축물 배치 조정을 통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 동선을 조정하여 보행 동선 낭비를 최소화	○ 향후 건축심의 시 4-30블록에 대한 통경축 확보, 공공보행통로 동선 조정 등을 검토토록 하겠음. - 공공보행통로 동선을 조정하여 보행 동선을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통경축(4m) 확보 검토.	반영

2) 한남5축진구역 : '23년 제11차('23.12.0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1	○세대수가 증가하는 블록은 교통량을 재분석하여 적정 차로 수 확보 검토	○5-36BL 세대수는 기정 737세대에서 770세대로 33세대 증가하였고, 5-37BL 세대수는 기정 508세대에서 534세대로 26세대 증가하였음. 발생교통량(2034년)(17:00~18:00)은 F교차로 기준 기정 137에서 142로 5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수준은 A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의 왕복 3차로를 유지하였음. 추후 교통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2	○보행 약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과 단지 내 레벨 차이를 최소화한 계획을 수립할 것	○보행 약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과 단지 내 레벨 차이를 최소화하여 계획 보완함. ●41BL 단지내 공원 진입부레벨(+32.0)계획으로 단차최소화(※보행약자고려하여 승강기 등을 반영) ●문화공원 주변도로 레벨(+30.0, +38.0)에서 공원으로 보행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부 단차를 최소화	반영
3	○공공보행통로는 추후 공공보행(통로)에 제한이 없는 방안(지역권 설정 등)을 마련할 것	○공공보행통로는 추후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인가 시 지역권 설정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4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여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변은 화단, 상가 등으로 계획하여 단지 용벽의 설치 최소화를 통해 위압적이지 않는 건축계획 수립 ●건축물 배치 조정 등을 통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는 통경축 확보 ●5-36BL은 일부 주동 변경(탑상형) 통해 충분한 인동 간격과 단지 내부 시야감 확보	○다음 사항들을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하여 제시하겠음. ●도로변 단차(36BL)구간은 부대복리 및 화단 조성 등을 통하여 위압적이지 않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일부 주동(103동)을 크기 축소 및 위치 이동(약3m)하여 통경축시야가 개선되도록 조정하겠음. ●5-36BL은 일부 주동(113동) 사이즈 조정 및 분리(6호 조합) 등을 통하여 인동간격과단지 내부시야감을 개선하겠음.	추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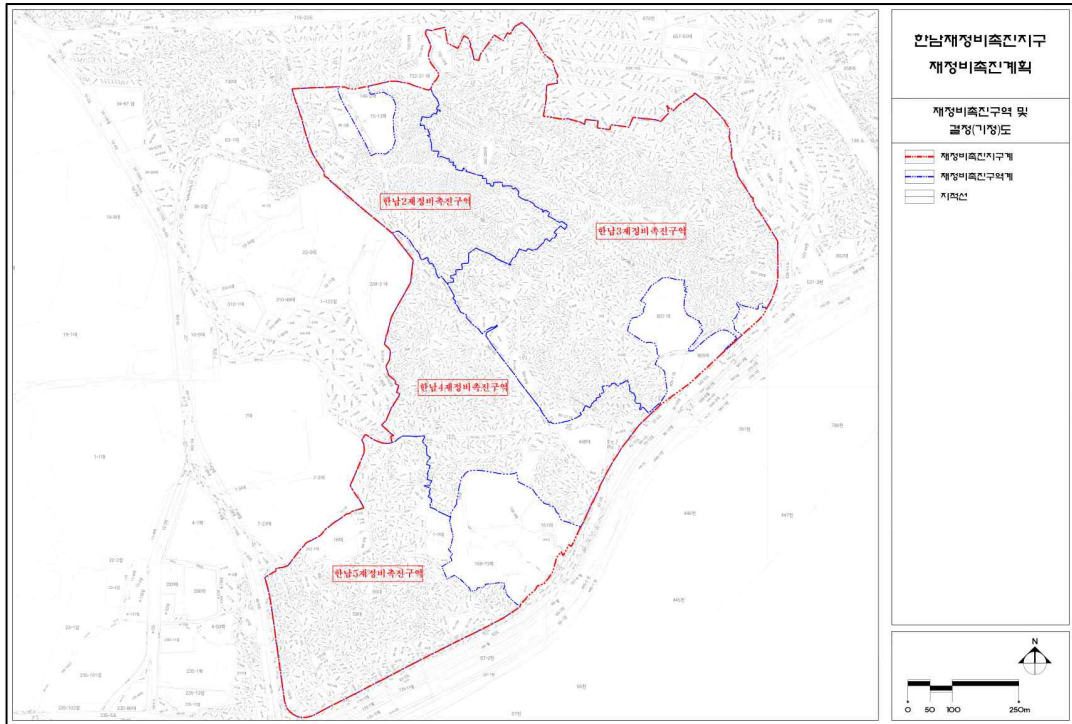
아.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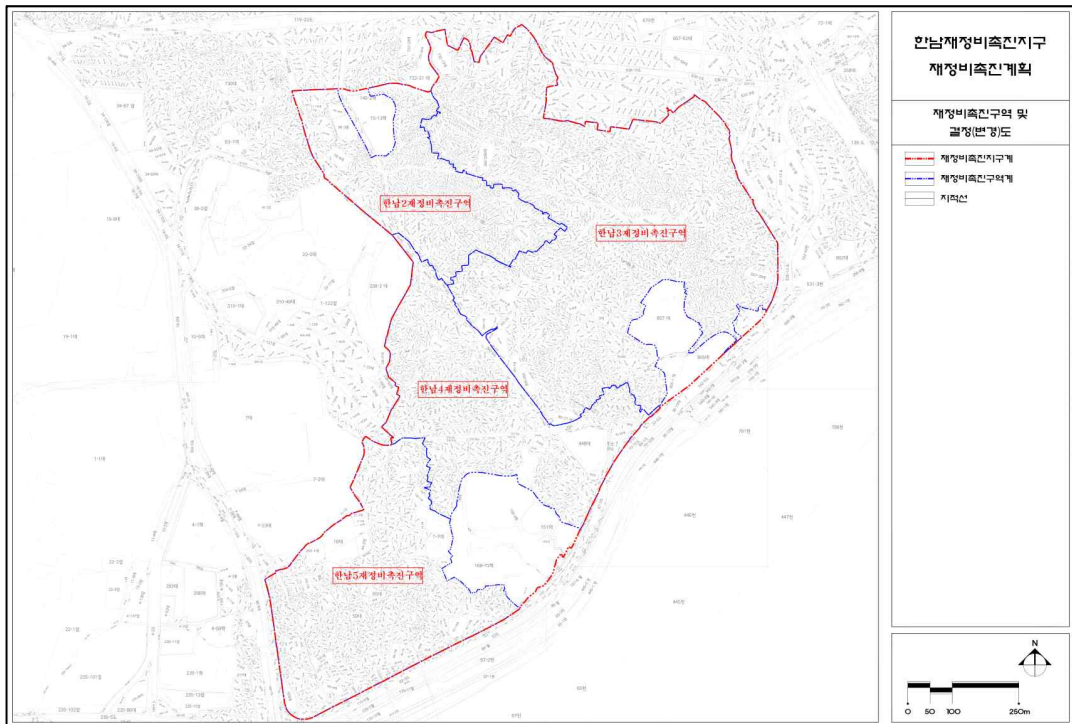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8) 및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02)2199-74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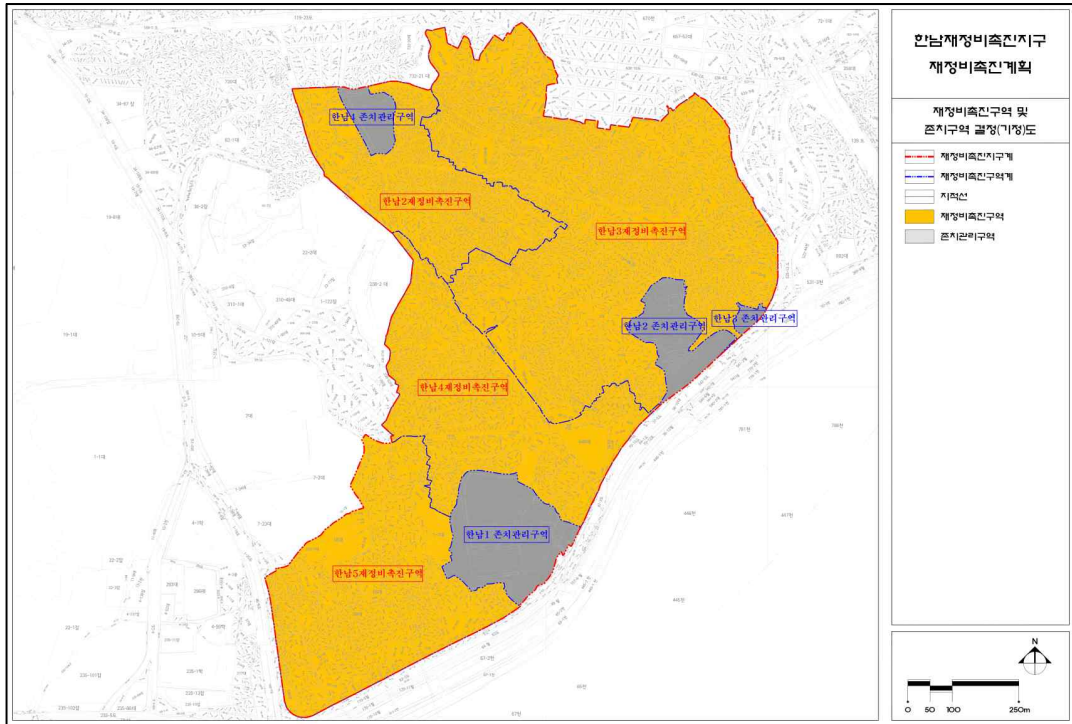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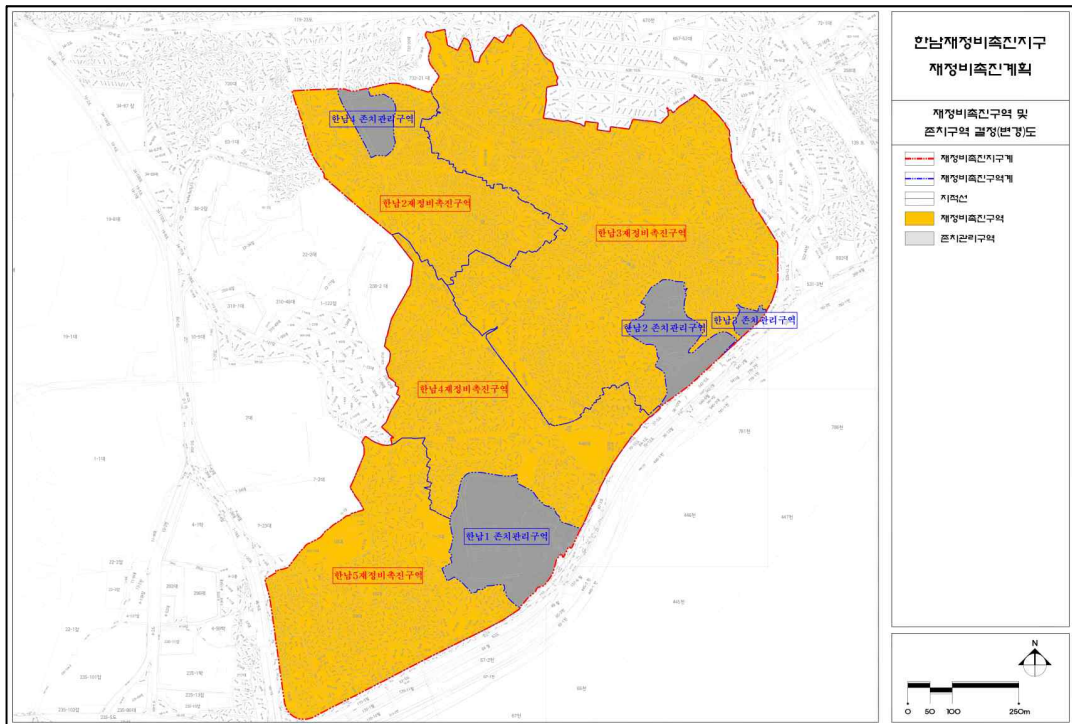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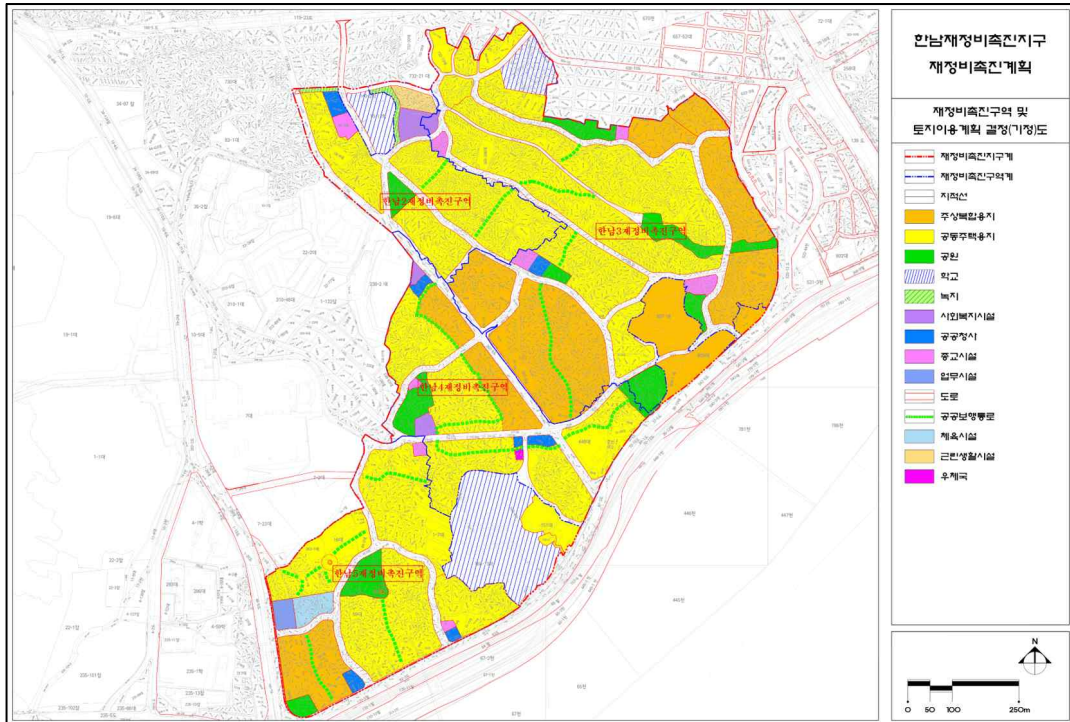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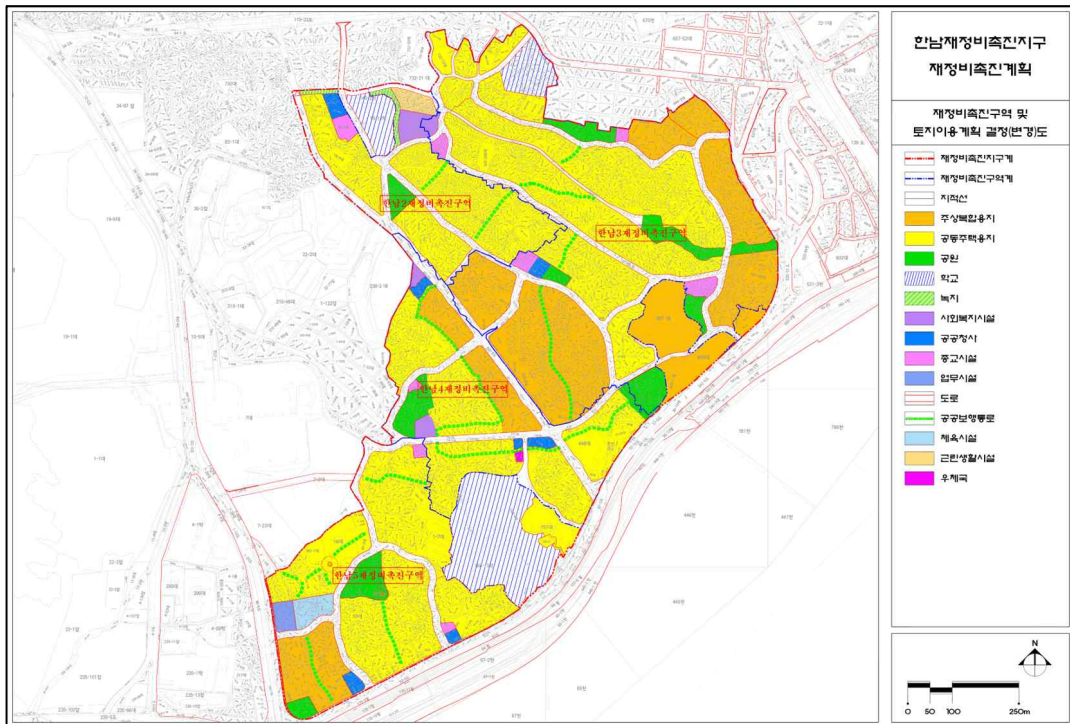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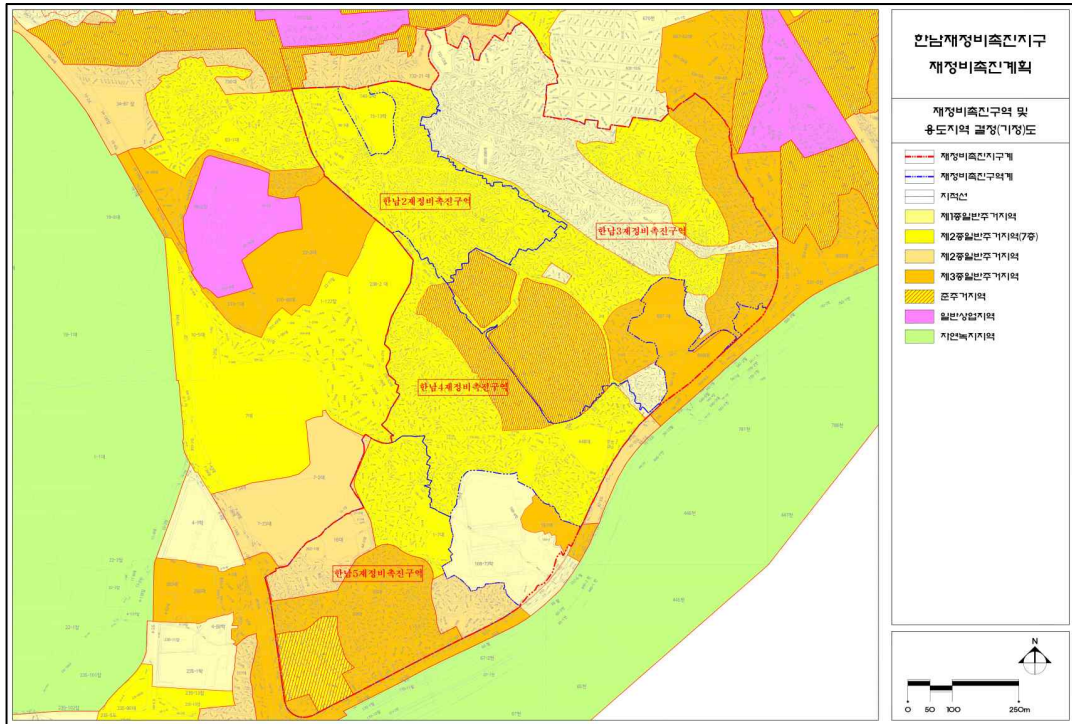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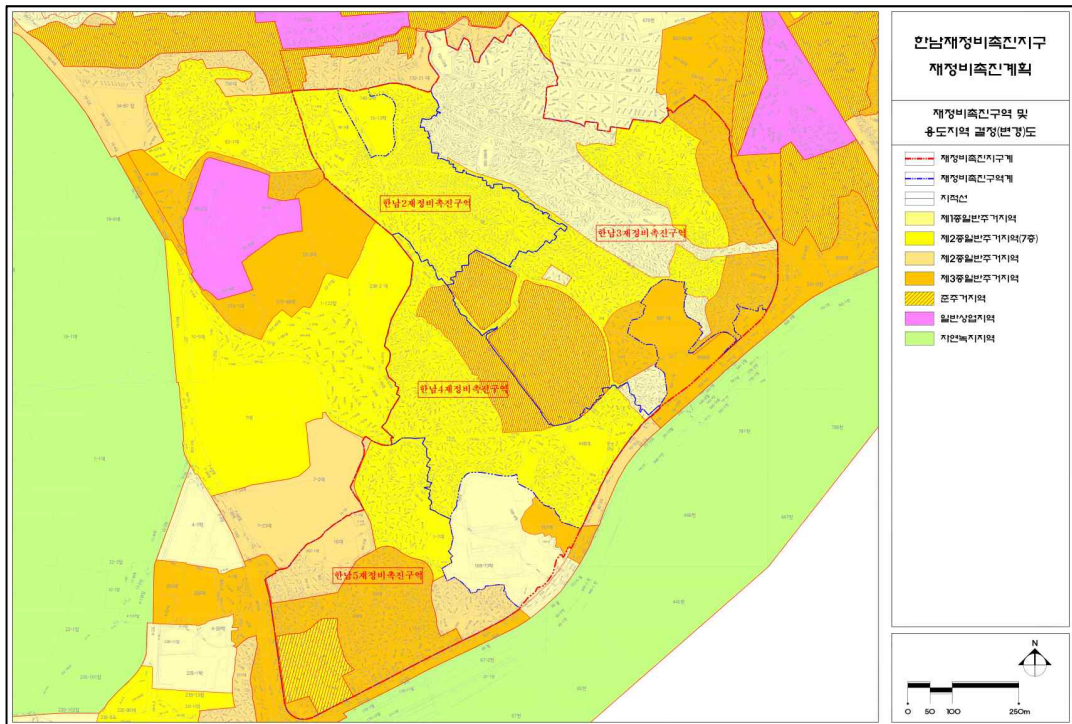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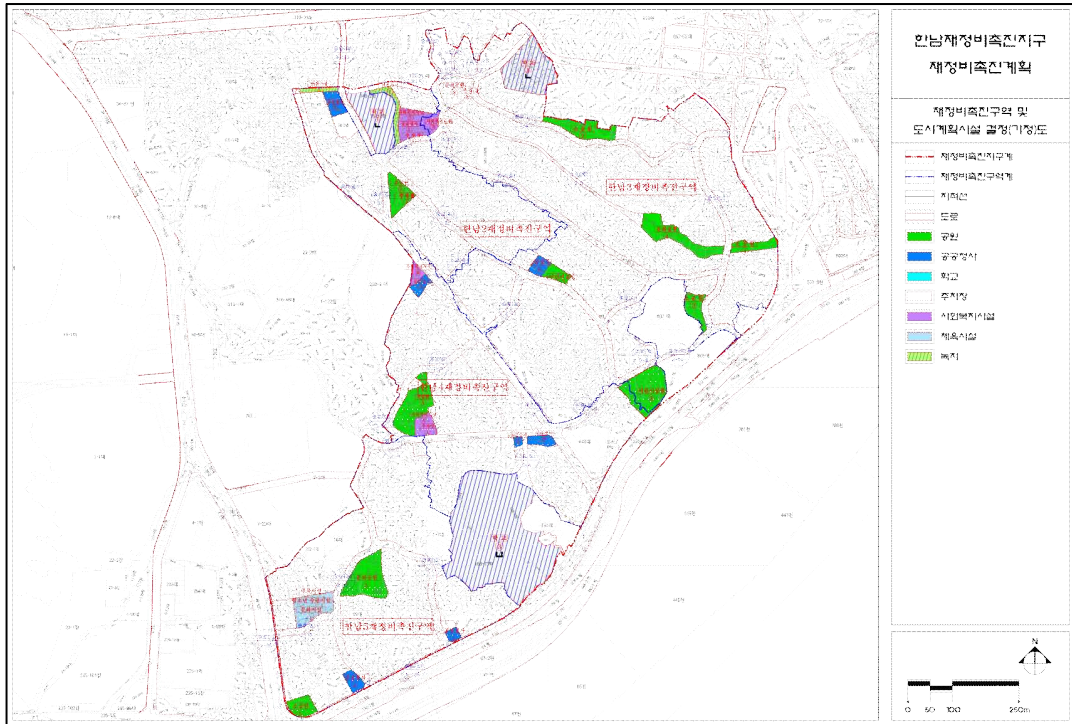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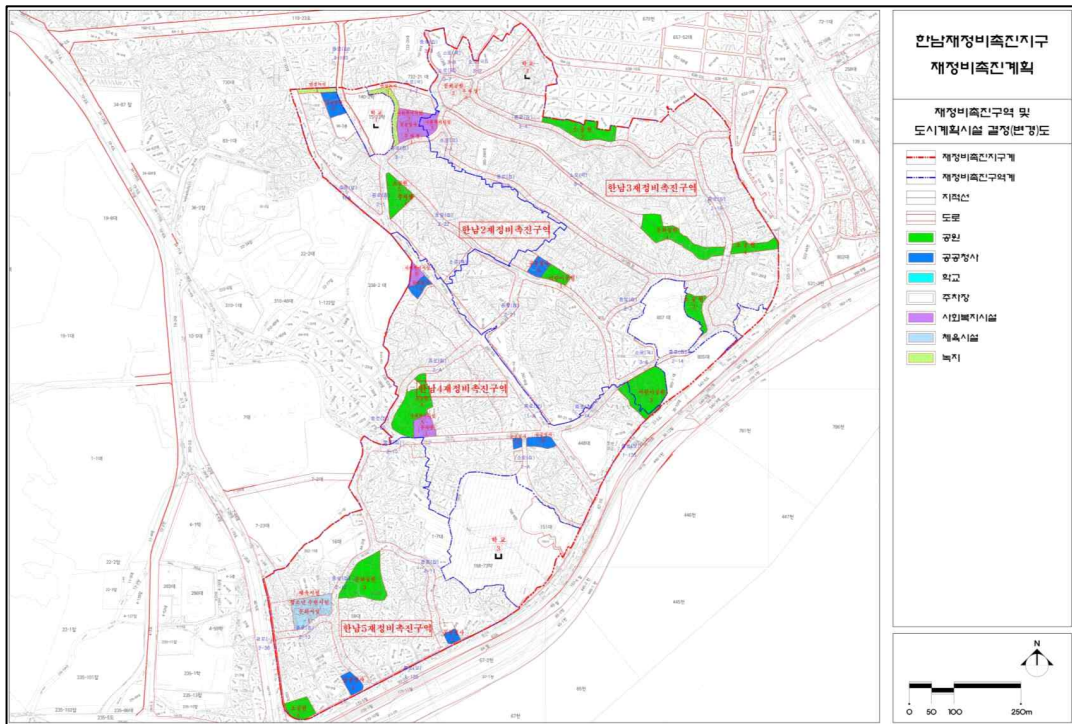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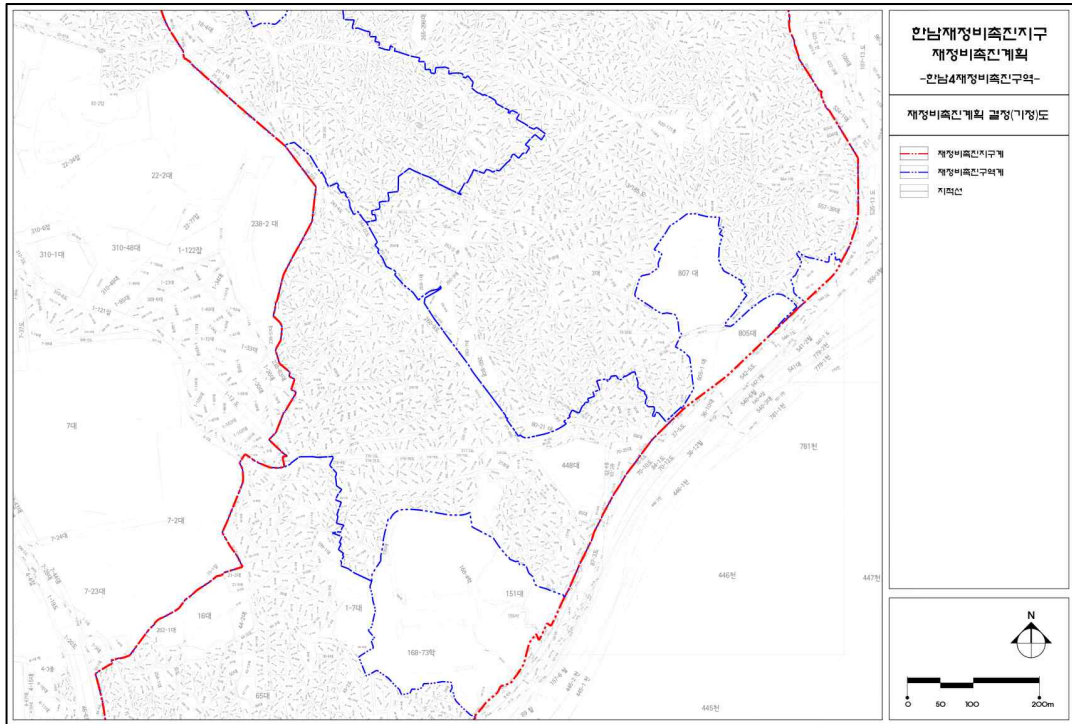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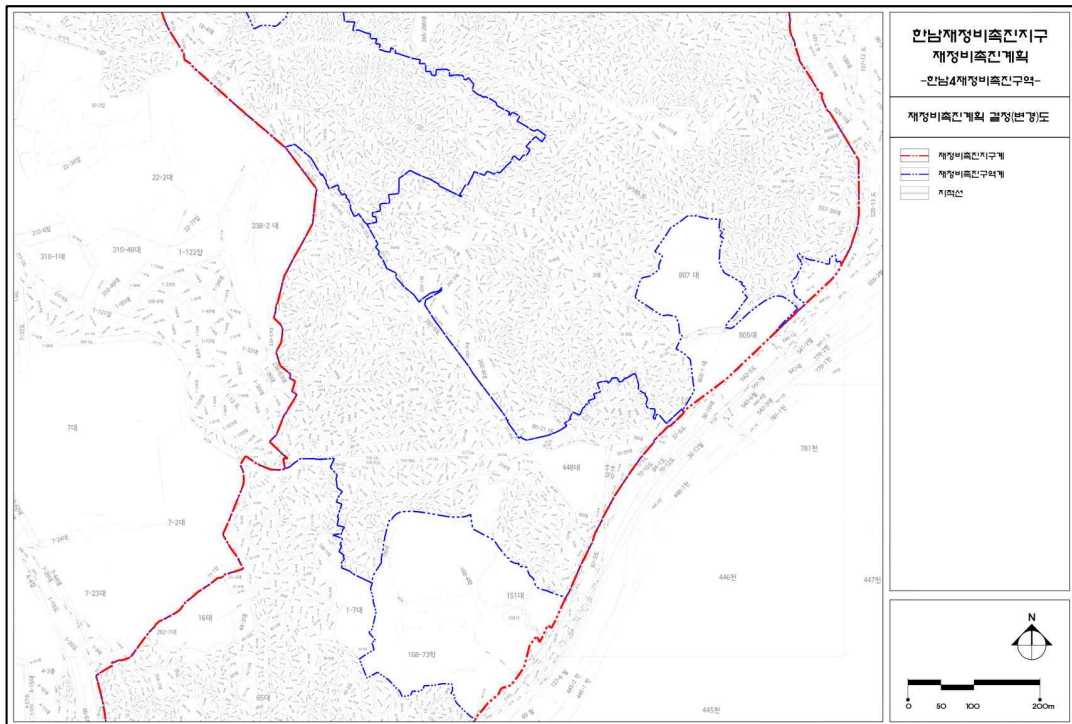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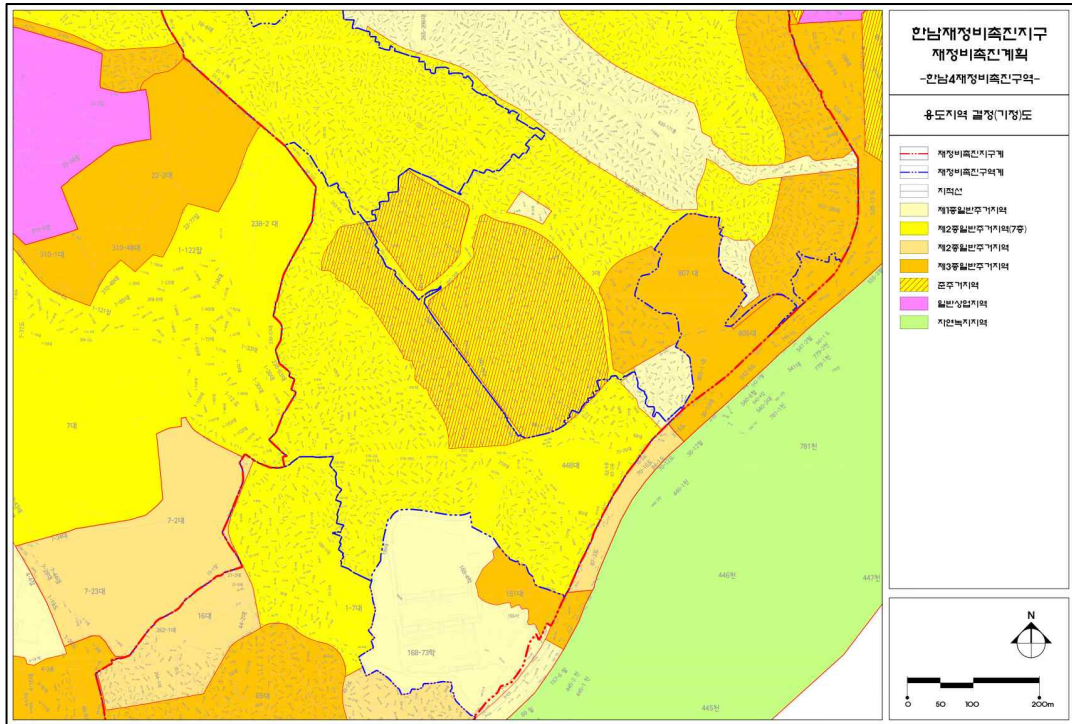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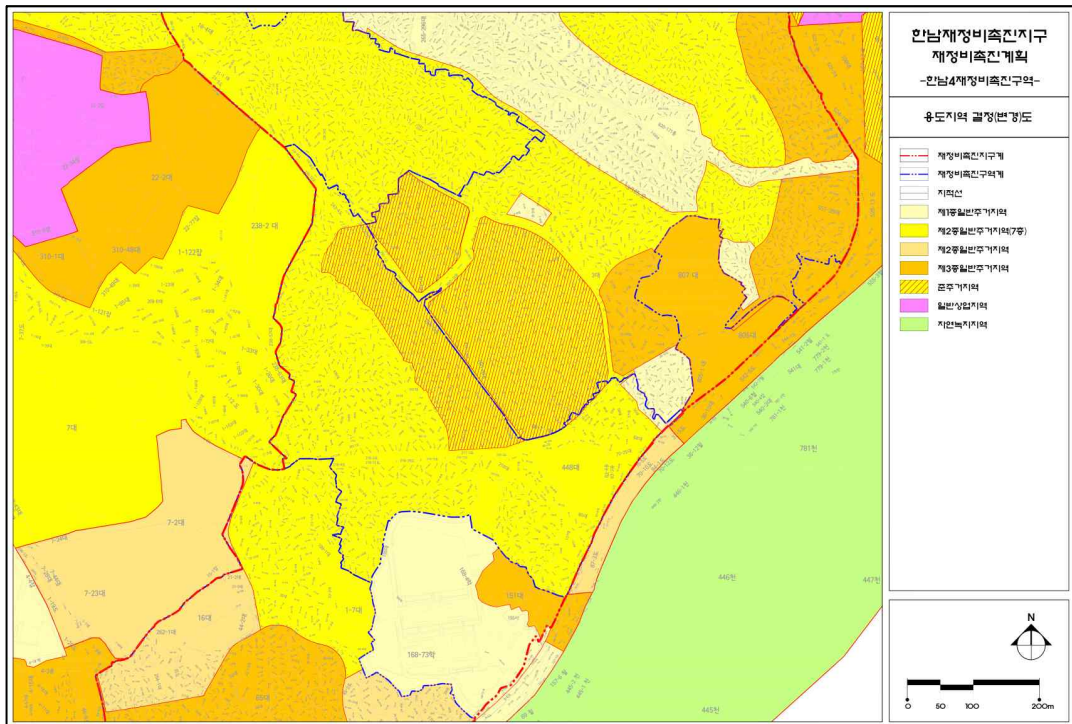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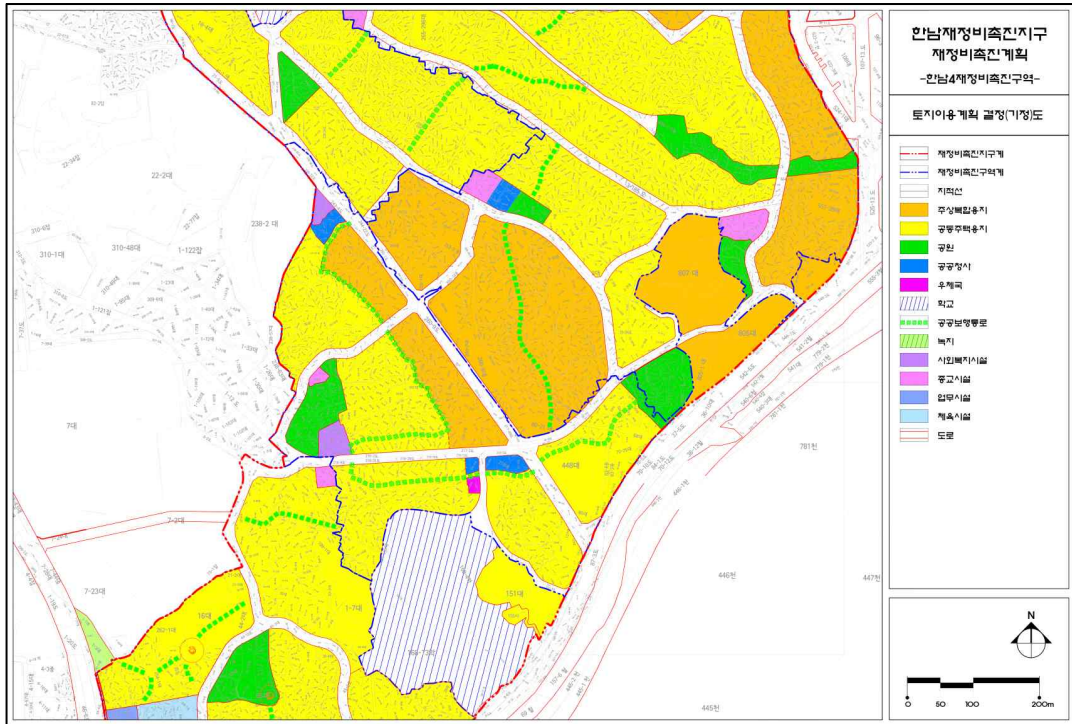
[한남4구역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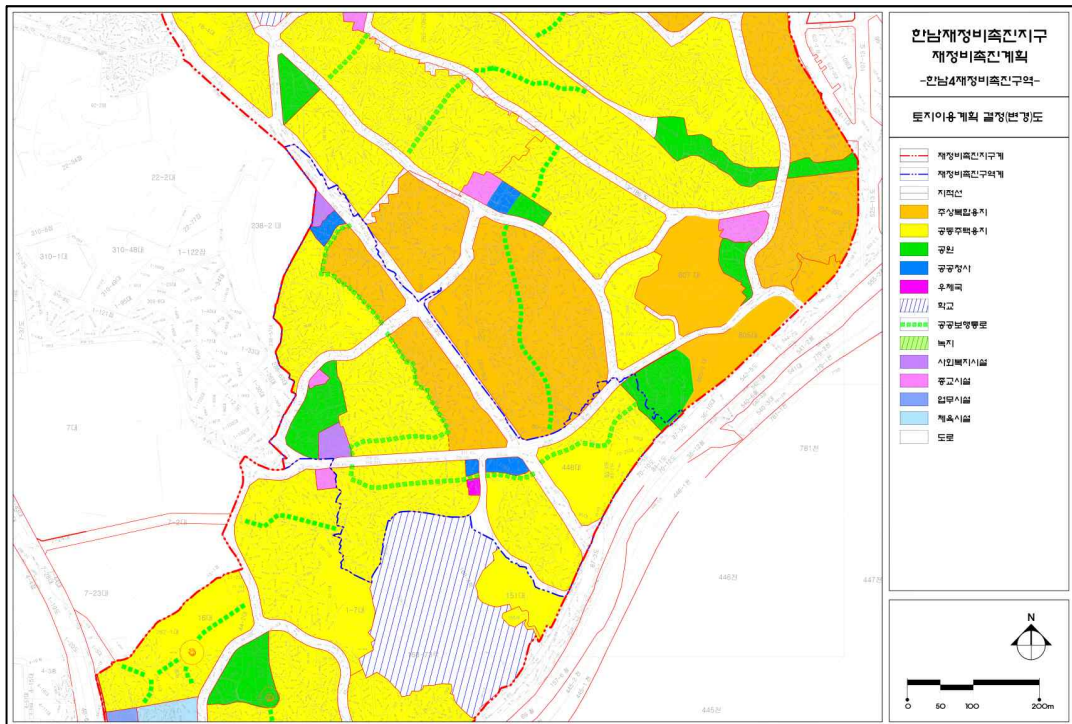
[한남4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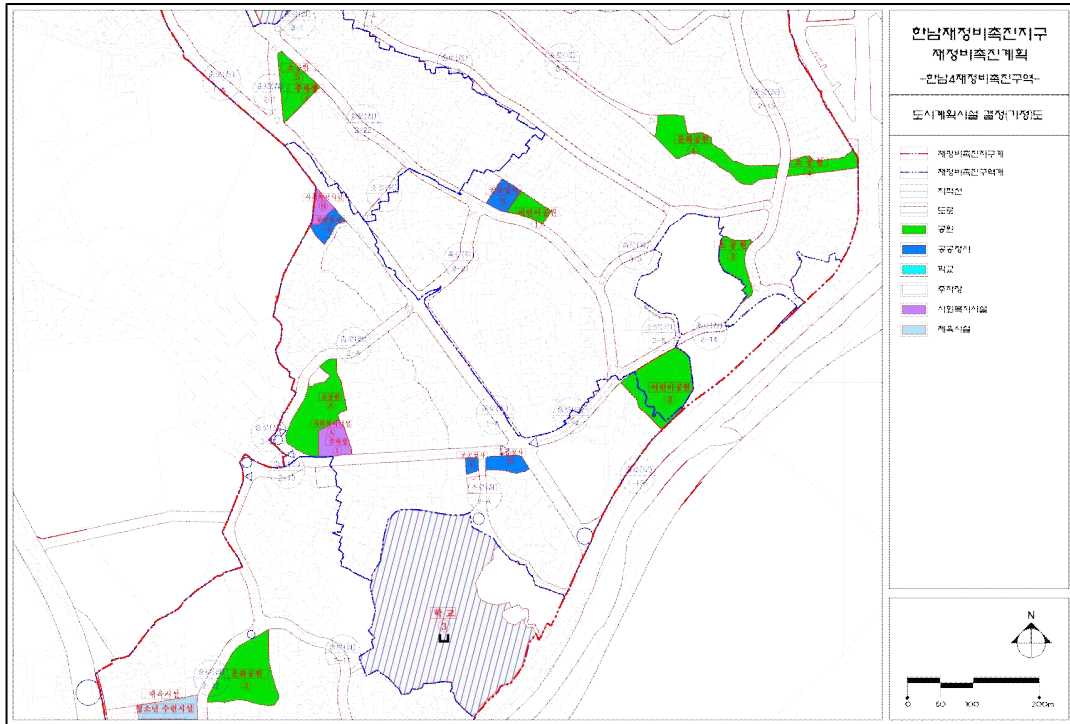
[한남4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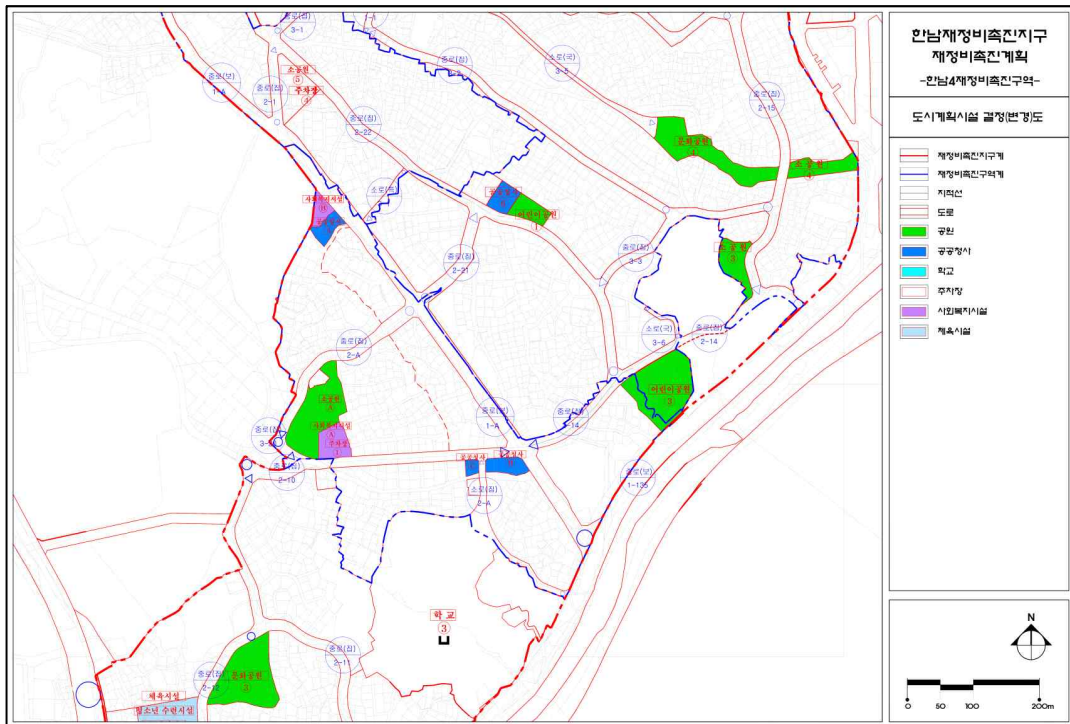
[한남4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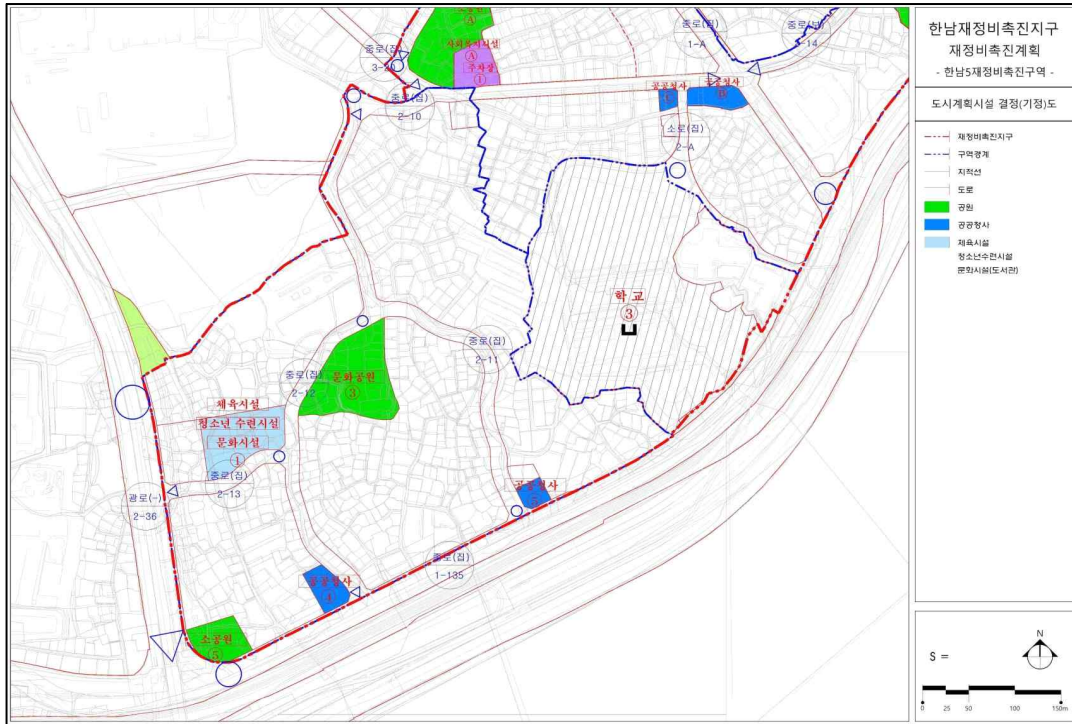
[한남4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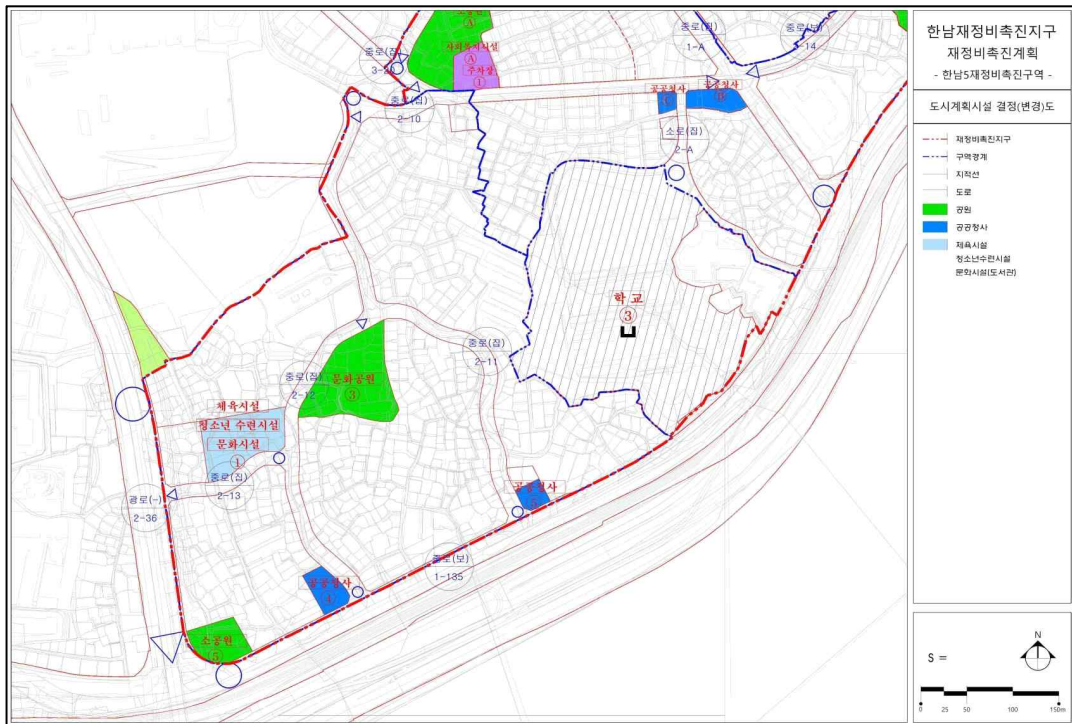
[한남4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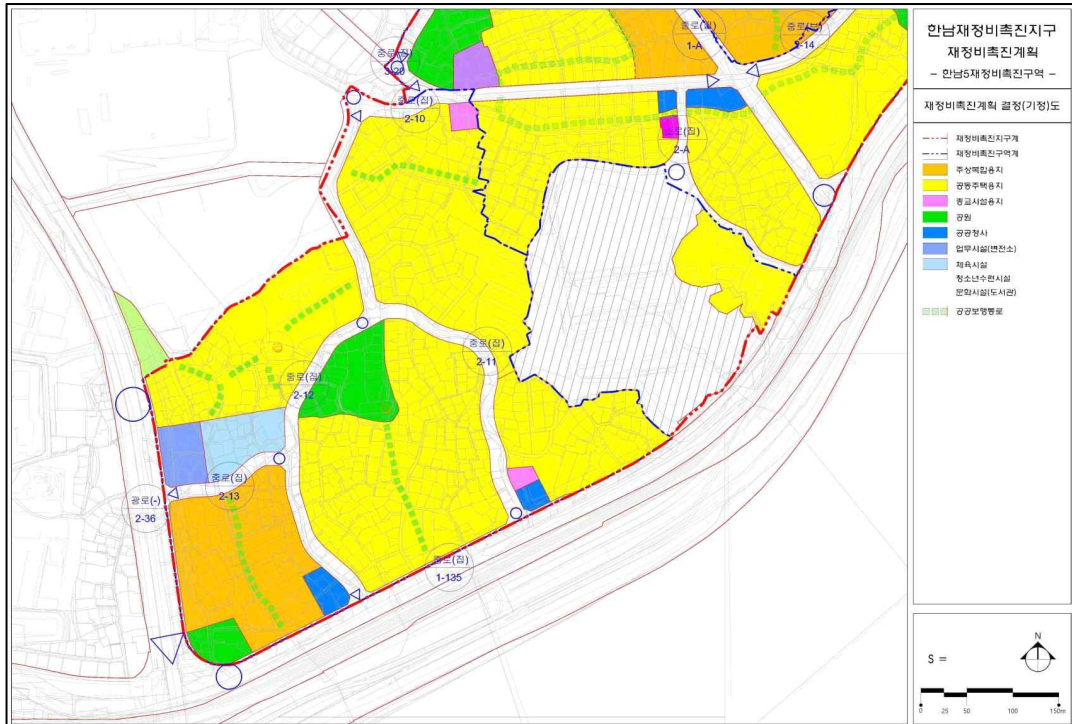
[한남5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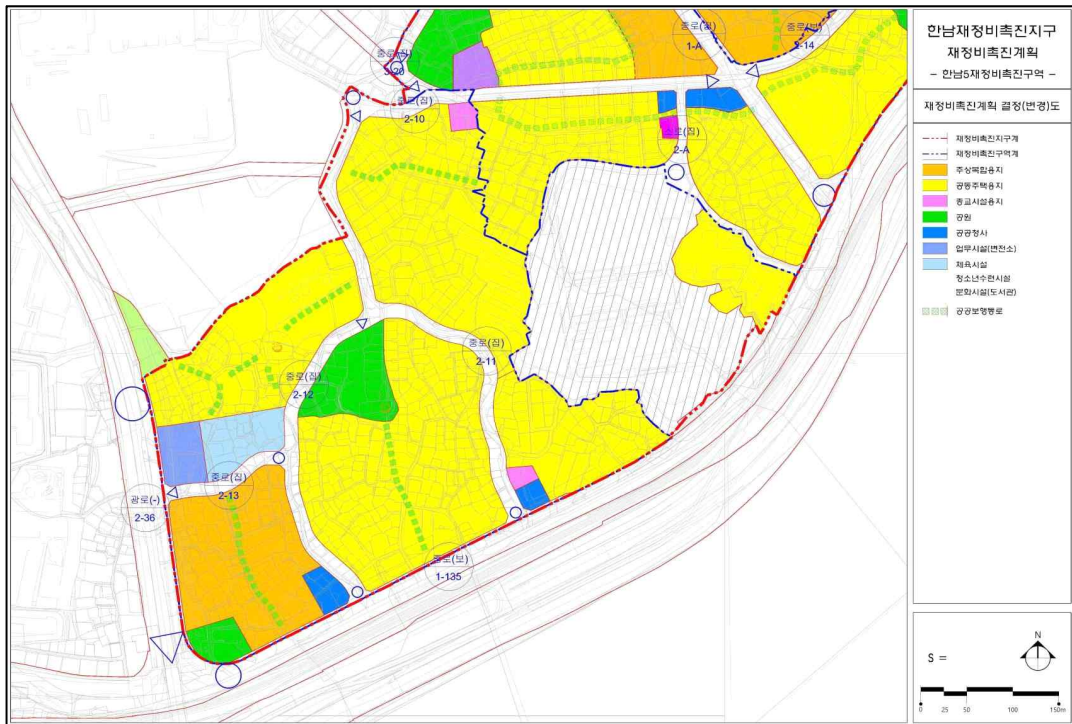
[한남5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8호
건축허가등 제한(연장) 지형도면 정정 고시

「건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4호('24.1.12.)호 및 제2024-49호('24.1.19.)호에 따라 건축허가등 제한(연장)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해, 일부 정정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1. 건축허가 등 제한(정정)

가. 정정 사유 : ' 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 이후 재개발 미추진

나. 정정 사항 : 제한기간 정정

(기존) 연장 2024.1.26.~2025.1.25. ⇒ (정정) 연장취소 2022.1.26. ~ 2024.1.25.

※ 2024.1.26. 이후 건축허가등 제한이 만료됨

라. 정정 대상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선정여부
1	강동구	상일동 300번지 일원	상일동 300번지 일원	96,049	미선정

2. 지형도면 생략 :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22.1.26.)]참고

－ 고시문 위치 : 서울시보(<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4호(2017.1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2018.6.7.)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6호(2019.3.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5호(2019.6.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1호(2019.7.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0호(2020.5.1.)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9호(2020.10.15.)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0호(2021.3.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4호(2021.10.1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6호(2022.2.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79호(2022.12.8.)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세운6-3-4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1호(2023.10.26.)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1,3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40호(2023.12.7.)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요(변경없음)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9,356.4	-	439,356.4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56,362.1	감) 653.2	155,708.9	35.4	
	공공청사	7,600.0	-	7,600.0	1.7	중구청 존치
	학교시설	13,055.1	-	13,055.1	3.0	덕수중학교 존치
	하 천	8,423.4	-	8,423.4	1.9	청계천
	공 원	10,115.2	-	10,115.2	2.3	
	녹 지	4,143.9	감) 314.2	3,829.7	0.8	6-4-22,23구역 내 경관녹지 폐지 등
	주 차 장	1,198.7	-	1,198.7	0.3	
	공공공지	1,168.3	-	1,168.3	0.3	
	공공용지	667.4	-	667.4	0.2	
	도 로	109,990.1	감) 339.0	109,651.1	24.9	소로1-1 연장축소 등
택지 (획지)	소 계	282,994.3	증) 653.2	283,647.5	64.6	
	복합개발용지	256,290.8	증) 653.2	256,944.0	58.5	6-4-22, 6-4-23 구역 통합
	남산자이(주거복합)	5,216.5	-	5,216.5	1.2	존 치
	국도호텔(상업·숙박)	1,620.5	-	1,620.5	0.4	
	중앙대코플라자	1,060.6	-	1,060.6	0.2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명보아트홀	1,256.5	-	1,256.5	0.3	
	매일경제신문	1,778.4	-	1,778.4	0.4	
	세운상가군	15,771.0	-	15,771.0	3.6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운상가군은 세운가동상가 ~ 진양상가에 이르는 일련의 상가를 의미함

②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금회 변경사항은 ②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6-4-22, 23구역) 정비계획 변경 참조

④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⑤ 교통계획(변경없음)

⑥ 경관계획(변경없음)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변경없음)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기 정		변 경		사업의 종류	비고
구역명	면 적(㎡)	구역명	면 적(㎡)		
6-4-14	1,284.6	6-4-14	1,468.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면부
6-4-20	1,727.5	6-4-20	1,460.0		이면부
6-4-22	3,239.4	6-4-22, 23	5,724.2		간선부 (구역통합 및 구역계 조정)
6-4-23	2,495.2				

※ 상기 내용은 6-4-14, 20, 22, 23구역에 한함

※ 상기 구역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역통합 및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인접구역의 경계 조정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 이		비 고
			기 준	허 용	상 한		기 준	최 고	
기정	세운6-4-1,4,5,18,22,23구역	간선부	600% 이하	7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변경	세운6-4-1,4,5,18구역 세운6-4-22,23구역	간선부	600% 이하	8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50%이하	90m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통합 구역

※ 금회 변경 구역 외 계재생략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구역명		시행 면적 (㎡)	구역 면적 (㎡)	현 황		계 획		부담률		부담률 보정	조정 후 부담률		비고
				대지 (㎡)	공공용지 (㎡)	대지 (㎡)	공공용지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6-4 구역 (기정)	6-4-22	3,239.4	3,239.4	2,596.1	643.3	2,578.2	661.2	17.9	0.69	-	17.9	0.69	-
	6-4-23	2,495.2	2,495.2	1,820.0	675.2	1,818.3	676.9	1.7	0.09	-	1.7	0.09	
6-4 구역 (변경)	6-4-22,23	6,427.8	5,724.2	4,619.2	1,105.0	4,619.2	1,105.0	-	-	703.6	703.6	13.22	-

※ 기반시설부담률은 기존 공공용지 무상양여를 전제로 하되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가면적은 상가군 매입을 토지로 환산한 면적임

⑪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변경없음)

⑫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⑬ 촉진구역별 사업계획(변경)

- 금회 변경사항은 ②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6-4-22, 23구역) 정비계획 변경 참조

⑭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⑮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금회 변경사항은 ②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6-4-22, 23구역) 정비계획 변경 참조

②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 6-4-22,23구역) 정비계획 변경

1. 정비구역(변경)

가. 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세운 6-4-22구역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원	3,239.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세운 6-4-23구역	중구 충무로4가 90-1번지 일원	2,495.2		
변경	세운 6-4-22,23구역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원	5,724.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통합 및 구역계 조정

■ 변경사유

- 고밀·복합개발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적정규모 단위로 구역통합 및 정비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6-4-22, 23구역)				5,734.6	감) 10.4	5,724.2	100.0	간선부
계 획 기 반 시 설	소 계	6-4-22, 23구역	-	증) 1,105.0	1,105.0	19.3	구역통합	
		6-4-22구역	661.2	감) 661.2	-	-		
		6-4-23구역	676.9	감) 676.9	-	-		
	도 로	6-4-22, 23구역	-	증) 1,105.0	1,105.0	19.3	구역통합	
		6-4-22구역	276.4	감) 276.4	-	-		
		6-4-23구역	676.9	감) 676.9	-	-		
	녹 지	6-4-22, 23구역	-	-	-	-	구역통합	
		6-4-22구역	384.8	감) 384.8	-	-	경관녹지 폐지	
		6-4-23구역	-	-	-	-		
택 지 (획 지)	획 지	6-4-22, 23구역	-	증) 4,619.2	4,619.2	80.7	구역통합	
		6-4-22구역	2,578.2	감) 2,578.2	-	-		
		6-4-23구역	1,818.3	감) 1,818.3	-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24.2	-	5,724.2	100.0	-
일반상업지역	5,724.2	-	5,724.2	100.0	-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방화지구	서울역앞~광희동간	55,464 (1,117.7)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퇴계로

※ ()는 구역 내 면적임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①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5 (83)	총무로4가 66-3	총무로4가 99-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50 (56)	총무로4가 66-3	총무로4가 38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54	총무로4가 86-3	총무로4가 47-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변경	소로	1	E	10	국지 도로	54	총무로4가 86-3	총무로4가 47-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 금회 결정(변경)조서 외 게재 생략

※ ()는 촉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

■ 변경사유

- 소로 1-1 : 도심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중로 2-127호선 폐지 예상 및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도로연장 변경
- 소로 1-E : 6-4구역 내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②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⑦	녹지	경관 녹지	총무로4가 112-1	371.0	감) 371.0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 변경사유

- － 기반시설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경관녹지 폐지(개방형 녹지 대체 조성)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6-4-22 구역	3,239.4	대 지	2,578.2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원	17	-	-	17	-	-
	6-4-23 구역	2,495.2	대 지	1,818.3	중구 충무로4가 90-1번지 일원	11	-	-	11	-	-
변경	6-4- 22, 23 구역	5,724.2	대 지	4,619.2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원	28	-	-	28	-	구역 통합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6-4- 22 구역	3,239.4	대지	2,578.2	중구 충무로4가 108-21 일원	공동주택, 업무,판매, 문화집회 등	60%이하 (저층부 80%이하)	- 기준 : 600%이하 - 허용 : 700%이하 - 상한 :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간선부 : 70m (기반시설 제공 완화)	
	6-4- 23 구역	2,495.2	대지	1,818.3	중구 충무로4가 90-1 일원	공동주택, 업무,판매, 문화집회 등	60%이하 (저층부 80%이하)	- 기준 : 600%이하 - 허용 : 700%이하 - 상한 :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간선부 : 70m (기반시설 제공 완화)	
변경	6-4- 22, 23 구역	5,724.2	대지	4,619.2	중구 충무로4가 108-21 일원	업무	50%이하	1,164.27%이하	167m 이하	

심의완화 사항

• 용적률 : ① + ② + ③ = 1,164.27%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0.0% 적용

인센티브 항목	요건	완화량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의무)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 초과설치시	100.0%
구역통합을 통한 공동개발	구역통합 등에 따른 공동개발시	50.0%
지구통합관리운영(의무)	촉진계획 고시 전, 지구통합관리·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완료시	20.0%
공익시설(최상층 개방)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로비) 조성시	18.22%
친환경 (친환경자동차 충전기 초과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 의무사항 1/2이상 초과시	20.0%
합계	-	200.0% 적용 (208.22%)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364.27% 적용

구분	산정 내용
① 건축물 (상가매입) 제공	• 허용용적률 × 1.2 × 가중치 × α 건축물 = 800% × 1.2 × 1 × 0.1523 = 146.22% ※ α 건축물=건축물 토지환산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03.6㎡ / 4,619.2㎡ = 0.1523
② 공개공지 초과조성	•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 대지면적) = 800% × {(1,720.98㎡ - 461.92㎡) / 4,619.2㎡} = 800% × (1,259.06㎡ / 4,619.2㎡) = 218.05% ※ 공개공지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0% = 4,619.2㎡ × 10% = 461.92㎡ ※ 공개공지 계획면적 : 1,720.98㎡ (37.25%)
합계	• 146.22% + 218.05% = 364.27%

심의완화 사항		높이 : 167m 이하 적용		
		구 분	산정 내용	
		기준높이	90m	
		개방형녹지 확보에 따른 높이완화	$\{ \text{적정건폐율 } 50\% \times (\text{기준높이} + 20\text{m}) \} / (80\% - \text{개방형녹지율\%})$ $= \{ 50\% \times (90\text{m} + 20\text{m}) \} / (80\% - 44.47\%)$ $= 154.79\text{m}$ ※ 개방형녹지 = 2,054.03㎡ ※ 개방형녹지율 = 개방형녹지(2,054.03㎡) / 대지면적(4,619.2㎡) = 44.47% ※ 필로티 공개공지 면적 제외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text{기준높이} \times [\{ \text{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times (1/2) \} / \text{대지면적}]$ $= 90\text{m} \times [\{ 1,259.06\text{㎡} \times (1/2) \} / 4,619.2\text{㎡}]$ $= 12.26\text{m}$ ※ 공개공지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0% $= 4,619.2\text{㎡} \times 10\% = 461.92\text{㎡}$ ※ 공개공지 초과면적 : 1,720.98㎡ - 461.92㎡ = 1,259.06㎡	
		합 계	154.79m + 12.26m = 167.05m (167m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퇴계로변	10m 내부도로변
		기 정	3m	1m
		변 경	5m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 진양상가변 및 퇴계로변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건축물 사이의 그린테라스는 대지 내 조경으로 포함하여 관리		
	개방형 녹지	- 개방형녹지 비율 : 44.47%(2,054.03㎡) (의무비율 30% 이상) - 적용 위치 : 대상지 서측, 북측, 동측 ※ 개방형녹지는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녹지의 형상 조정 가능

① 상가군 확보에 관한 계획

- 상가군은 중장기적으로 확보 후 단계적 녹지축으로 조성한다.
-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하여 상가군 매입 부담물에 상응하는 상가군을 매입하여 준공전 까지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하도록 한다.

계획기준	- 상가군 매입 : 순부담률 13.22%(환산부지면적 : 703.6㎡) - 매입 상가군은 녹지공간 조성 전까지 활용을 위해 공공임대상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제공
산출근거	- 매입비용 : 약 171.5억원 - 환산부지면적 × 부지가액¹⁾ = 703.6㎡ × 24,375,168원/㎡ = 17,150,368,204원

※ 1) 부지가액(6-4-22, 23구역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 2배, 2023)은 추후 감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①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개발현황 및 장래개발방향 등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유도 - 주변 환경을 고려, 차폐감 및 위압감이 완화될 수 있는 건축물 형태 유도	
환경보전	- 공사시 방진망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 정화장치 마련 - 공사폐자재 분리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재난방지	-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②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자연 생태 환경	1.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생태면적률 20%	○	• 비오톱유형 : 상가 및 업무지 비오톱 • 기능적 비오톱 확보 • 생태면적률 20%이상 확보	• 용도지역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조정계획에 반영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자연생태적 가치성은 없으나 조정 계획으로 개선 됨 • 지리적으로 거시적 녹지축의 징검 다리 역할 도 모	• 조류 및 곤충의 식이식물을 도입 토크 조정계획 수립	
생활 환경	토지 환경	3. 토지이용	중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 용도지역의 변경 없음 • 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 업무시설 확충을 위한 밀도있는 토지이용계획 실 현
	미관 환경	4. 물순환 (수리수문)	토사유출 최소화	○	• 구역내 발달된 수계 없음	• 향후 계획된 개발계획에 생태 면적을 증대할 수 있는 조정계획 마련
	대기 환경	5. 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 입지조건 공기순환 양호	• 녹지공간, 공개공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 확보
		6. 대기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 미세먼지를 제외한 전 항목이 환경기준을 만족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먼지저감 대책 실행 • 운영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 비 도입, 녹지조성 (정화수종 선택)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생활환경	기타	7.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 건설 및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분 별해체 노력 • 운영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제고
		8. 에너지	에너지 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도시가스 활용, 기존 신재생에너지 시설 없음 • 에너지 절감방안 필요	• 친환경건축자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 료사용
		9.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소음 및 진동발생 (60미터 이내 영향권)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10.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최대 확보	○	• 청계천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휴식·여가공간 확 보	• 자연·인공지반 녹지 확보, 가로변 보행공간 녹 지 조성
		11.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사업구역 주변에 층고 낮은 건축물이 존재, 상호 간섭함 • 본 계획건축물로 인한 일조침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12.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 수립	○	• 대중교통 이용 접근 용이	• 공개공지, 건축물 전면과 연계하여 일체화된 보 행자 공간 계획
		13. 경관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	• 본 계획에 따른 경관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 단됨	• 주변 건축물과 유사한 규모의 건축계획 수립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시행 방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주체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 예정시기	촉진계획(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자.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비 고
사업시행인가 ~이주/철거단계	- 기존 공가(밀집)지역 차단펜스 선 설치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실사용 대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기반시설조성 용지와 구분하여, 사업시행 단계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 가로등 및 CCTV설치 및 관리 - 기존 골목길 등 주민 동선을 따라 가로등 및 CCTV설치(24시간 모니터링) - 야간 외부동선을 차단하여 안전관리 - 사업구역 내 비상벨 설치(인근 파출소, 현장사무실 연계) - 조기 관리사무실 개설 - 이주지원 및 철거 안전관리구역 등 선발주를 통해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상주경비 및 야간 방범활동 통합관리(필요시 범죄 예방 전문용역업체 별도 선정) - 공가집중 관리 - 기존 공가 지역에 펜스설치 및 즉각 철고공사 이행 - 공가현황도 작성 관리, 현장 안전관리인을 통한 주야 순찰 실시(순찰일지 작성)	
철거/착공 및 이후 단계	- 공사장 가림벽(펜스) 설치 -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가설펜스를 설치하여 외부동선 유입 차단, 원칙적 범죄예방 - 가로등 및 CCTV설치 및 관리 - 기존 골목길 등 주민 동선을 따라 가로등 및 CCTV설치(24시간 모니터링) - 당 사업지 내는 상업지역으로, 야간 외부동선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 현장 상주관리자 배치 - 방화 및 기타 안전관련 조치 방안 - 현장 사무소를 통한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관리 진행(지역소방서와 비상연락망 구축, 협조)	

차.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29.03% → (5,800억 - 4,000억) / 1,395억 X 100% = 129.03% - 총 수입 추정 : 5,800억 - 총 지출 추정 : 4,000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395억
추정 분담금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 분양가액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설계 확정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중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구 분		비 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 정	세운6-4-22구역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원	3,239.4	2,578.2	661.2	
	세운6-4-23구역	중구 충무로4가 90-1번지 일원	2,495.2	1,818.3	676.9	
변 경	세운6-4-22,23구역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원	5,724.2	4,619.2	1,105.0	구역통합 및 구역계 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①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24.2	-	5,724.2	100.0	-
일반상업지역	5,724.2	-	5,724.2	100.0	-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방화지구	서울역앞~광희동간	55,464 (1,117.7)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퇴계로

※ ()는 구역 내 면적임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5 (83)	충무로4가 66-3	충무로4가 99-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50 (56)	충무로4가 66-3	충무로4가 38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54	총무로4가 86-3	총무로4가 47-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변경	소로	1	E	10	국지 도로	54	총무로4가 86-3	총무로4가 47-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 금회 결정(변경)조서 외 게재 생략

※ ()는 추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

■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1	소로 1-1	• 도로의 연장 변경 • 연장 195m → 150m	• 도심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중로 2-127호선 폐지 예상 및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도로 연장 변경
소로 2-14	소로 1-E	• 도로의 폭원 변경 • 폭원 8m → 10m	• 6-4구역 내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②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⑦	녹지	경관 녹지	총무로4가 112-1	371.0	감) 371.0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⑦	경관녹지	• 시설 폐지 • 면적 : 감) 371.0㎡	• 기반시설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경관녹지 폐지 (개방형 녹지 대체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획 지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운 6-4-22, 23구역	획지1	4,396.5	증) 222.7	4,619.2	사업대지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용 도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1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따른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② 건폐율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1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③ 용적률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획지1	600% 이하	800% 이하	1,164.27% 이하	일반상업지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시 [600% X (668.27㎡ / 4,619.2㎡) X 2.0]	정률 (2.0)	100.0%

구 분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공동개발		구역 통합 등에 따른 공동개발시	정량 (50%)	50.0%
지구통합 관리운영		촉진계획 고시 전, 지구통합관리·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완료시	정량 (20%)	20.0%
공익 시설	특정층(최상층)개방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간 조성 시 [600% X (701.37㎡ / 4,619.2㎡) X 0.2]	정률 (0.2)	18.22%
친환경 (친환경자동차 충전기 초과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 의무사항 1/2이상 초과시	정량 (20%)	20.0%
합 계				200% 적용 (208.22%)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개공지 초과조성	
획지1	146.22%	218.05%	총 364.27%

④ 높이 계획

구 분	높 이 기 준	비 고
획지1	167m 이하	일반상업지역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퇴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건축가능범위	도면참조	• 개방형녹지 확보를 위한 대지경계선 내 건축가능범위 별도 지정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진양상가변 및 퇴계로변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전면공지	퇴계로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건축물 사이의 그린테라스는 대지 내 조경으로 포함하여 관리

②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 용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개방형 녹지	대상지 서측, 북측, 동측	2,054.03	- 개방형녹지 - 조성계획 : 대상지 서측, 북측, 동측 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의 형상은 조정가능

4] 2023년 제8차('23.09.19.)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급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 반영(검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반영 여부 논의 후 계획 결정 〉

- 구역 인접 창경궁로1길 도로의 변경(축소)에 따라 차량 오진입시 회차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장·단기 교통처리계획 검토
- 그린테라스 등 조경구간 관리방안 필요
- 추가 제안된 개방형녹지가 세운지구 녹지 마스터플랜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 계획 검토
- 인센티브와 관련된 조경면적은 명확하게 제시할 것
- 개방형녹지와 구역 외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연결 부분 처리 방안 마련
- 지하층의 관리사무실과 근로자 휴게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건축계획 마련
- 세운상가 매입 불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최상층 개방 내용을 포함한 지구통합관리 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전까지 수립한 계획을 제출하고 미포함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개방형녹지, 공개공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계획 설계 후 건축심의에서 논의 후 결정
- 친환경 개발, 지구통합관리계획, 최상층 개방 등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개방형녹지 등에 따라 로비 면적이 협소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막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피난시물레이션을 건축심의 전까지 제출

⑤ 기타 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개방형녹지 유지관리방안 수립 후 지구통합관리·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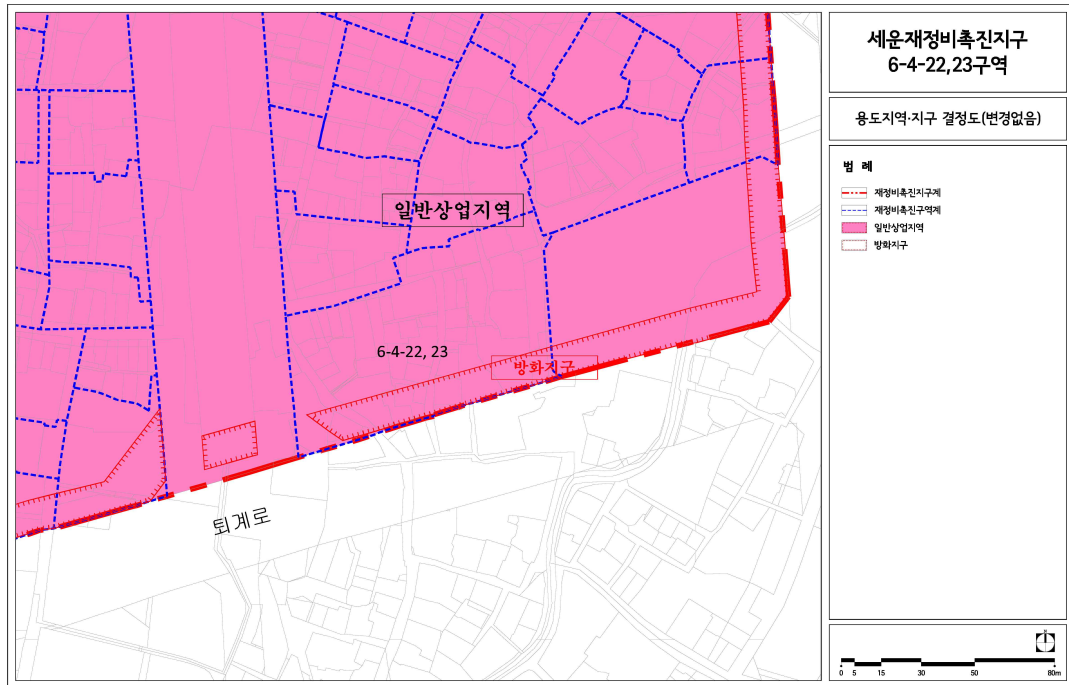
⑥ 관계도면 : 불임참조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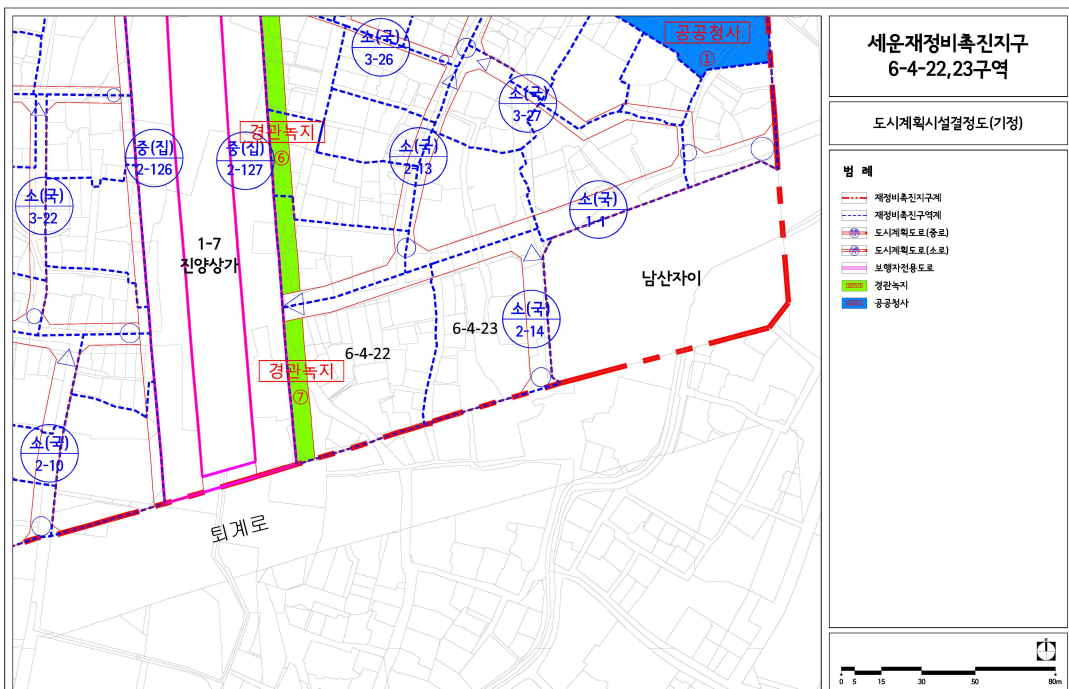
⑦ 열람장소

-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646) 및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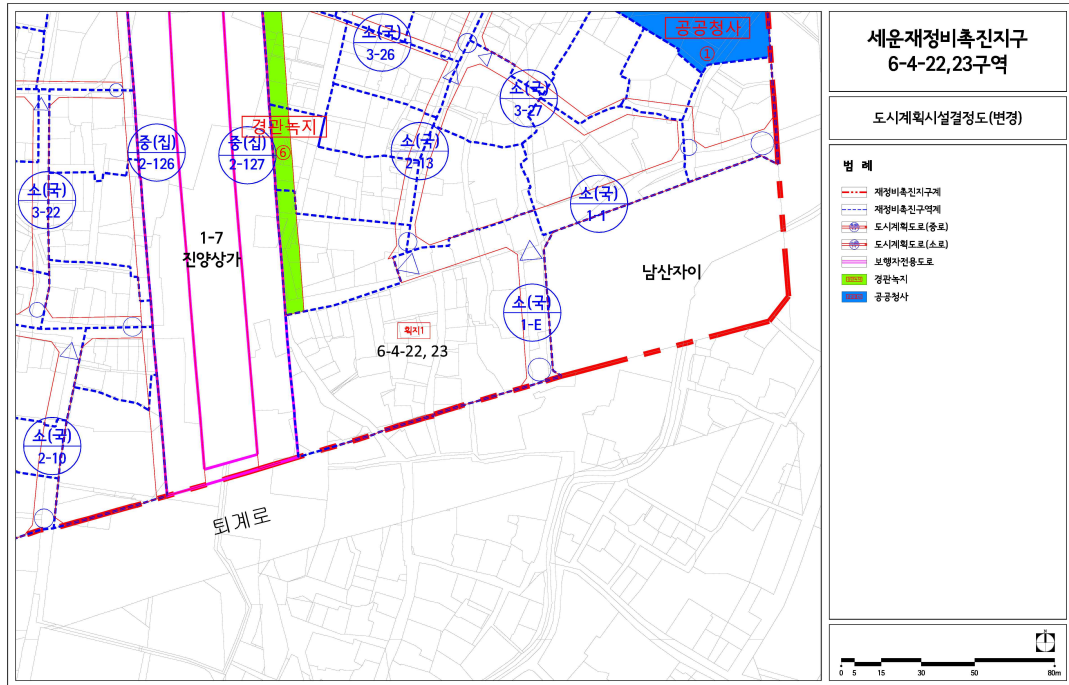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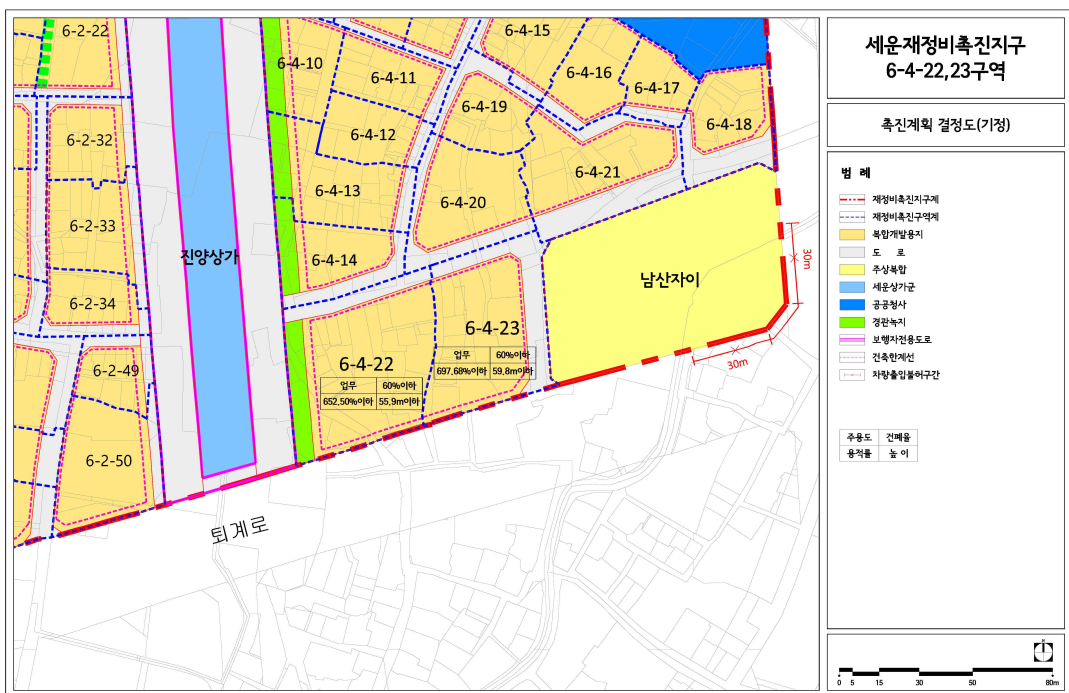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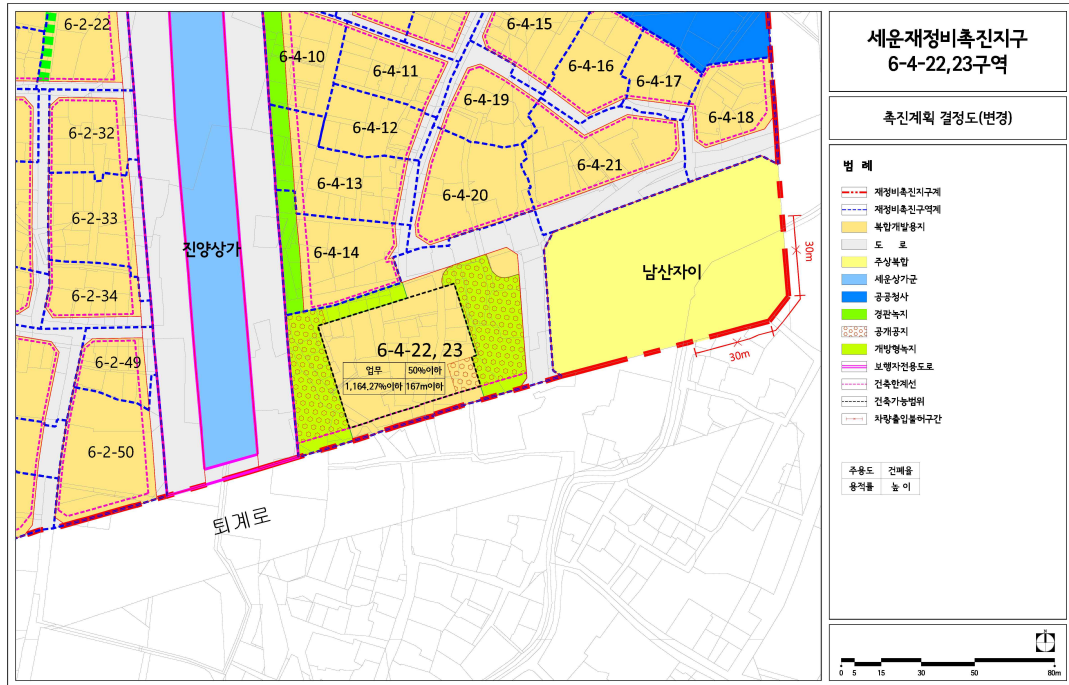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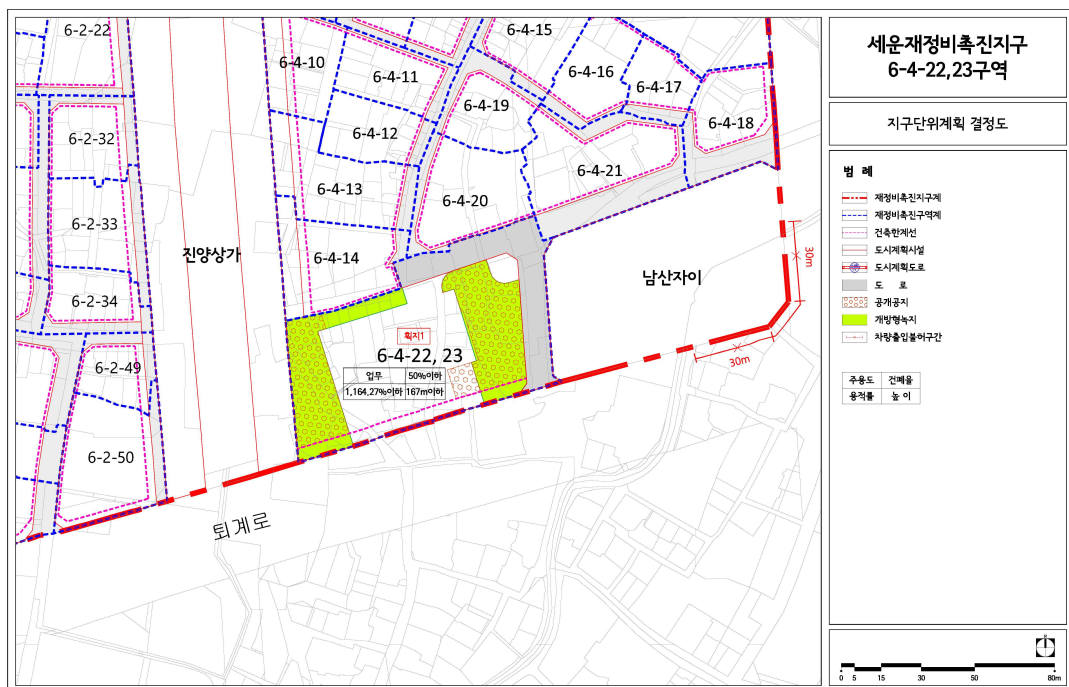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기정 >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변경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8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직인(등록사유 : 2024.1.1.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 체 및 규 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4.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4.1.	

2. 폐기직인(폐기사유 : 2024.1.1.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 체 및 규 격	인 영	폐기일자	비 고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 분석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4.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 분석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4.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김병래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1 (상동)	일시 : 2023-08-15 15:15 장소 : 서울시 잠실동 올림픽대로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1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전인찬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2길 *0, **3호(화곡동)	일시 : 2023-08-23 04:15 장소 : 서울시 삼성동 영동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벽체 건설	인천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 **5호(도화동)	일시 : 2023-11-07 15:20 장소 : 서울시 삼성동 봉은사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6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한기범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4가길 *4-*, **1호(상도동)	일시 : 2023-11:15 13:20 장소 : 서울시 삼성동 봉은사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4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이성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길 *8-*(신동)	일시 : 2023-11:20 20:15 장소 : 서울시 고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한광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길 *-*, **2호(고잔동)	일시 : 2023-11:23 15:00 장소 : 서울시 장지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박종두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7, **4동 **5호(여양동)	일시 : 2023-11:29 00:27 장소 : 서울시 장지동 송파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4.2.29.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913	24. 1. 16.	엔에스원소프트 주식회사 서원복 110111-695574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7, 4층(논현동, 더퍼스트빌딩)
2	203914	24. 1. 16.	주식회사 에스아이시스템즈 문태성 110111-273554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에이-1310
3	203915	24. 1. 16.	주식회사 지성씨엠 (JISUNG CM Co., Ltd) 고훈성 110111-56999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6길 25, 4층(도곡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이하 “서고시”) 제2018-127호(2018.4.26.)로 실시계획인가, 서고시 제2018-376호(2018.11.22.), 서고시 제2021-215호(2021.05.06.), 서고시 제2021-690호(2021.12.16.), 서고시 제2022-323호(2022.07.28.), 서고시 제2022-516호(2022.12.29)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수색로(대로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고시(최초)	사업기간
수색로(대로1-4호선) 확·포장공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01-19-275-1주변	도로확장 연장 0.6km, 폭 40.5~47.0m(6~8차로→10차로 확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7호 (2018.4.26.)	2018.04.26. ~ 2024.08.31.

라. 준공 관련도서 : 게재 생략

마.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133-808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단
지사업 2부(☎ 031-901-453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및 등록 말소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

대상 기간: 2023.10.1.~2023.12.31.

대상 단체: 14개 단체

등록 번호	신규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607	2023-12-22	한민족평화통 일전국연합회 서울지부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6 (당산동6가)	- 남북 경제·문화 분야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 - 남북 인적·물적 왕래 사업 - 한반도 국토 사랑과 환경보존 사업, 북한이탈 - 주민 정착 지원 사업 -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장사덕
2606	2023-12-20	한국사회발전 연구원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43길 7 (자양동)	○출산장려 입법청원 운동 ○무료결혼식추진 ○친정부모결연사업 ○결혼및출산의중요성홍보	김요셉
2605	2023-12-20	국제평화문화 예술단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42 (능동)	1. 일반인, 청소년, 학생, 다문화, 소외계층 대상 으로 문화예술 보급 2. 국악및음악창작성공연의정기공연및행사개최 3. 그밖의본회 목적달성에필요한문화예술관련사업	노미숙
2604	2023-12-15	청년자립지원 센터 T.O.F 성모형제의집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 (상계동, 토마토파크)	보육원 보호종료 퇴소자 및 복지사각지대 청년자 립지원 ○주거비지원 ○대학및학원학비지원 ○진로상담및결혼상담지원 ○가족상담,수지에너지그램,MBTI심리프로그램지 원	김필화

등록 번호	신규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원사업	대표자
2603	2023-12-08	북한감금피해 자가학회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38 (공릉동)	- 북한 감금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 -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단체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사업 등	최민경
2602	2023-11-27	한국산업보안 한림원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서초동)	○국가보안경쟁력 증진 및 국가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교류 및 협력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의우수사례외지식및경험의공유확산 ○학술연구및저술발간 ○국내및국제정보안전문가및단체의 교류협력 ○산업보안발전을위한정보보안전문가발굴및육성 등	김동호
2601	2023-11-23	서울강서양천 여성의전화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59 (화곡동)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추방사업 및 상담소 운영 ○여성의정치,경제세력화사업 ○여성복지증진을위한사업 ○어린이,노인,청소년을위한사회복지증진사업 ○여성상담원교육및사회교육사업 ○여성인권증진을위한사업 ○지역사회발전을위한사업 ○올바른여성문화창조를위한문화사업 ○국내외관련단체와의교육및연대활동 ○여성차별을근절하기위한제반사업 ○기타본회의목적달성을위한부대사업	한정희
2600	2023-11-22	인권교육센터 들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선로51길 7-13 (신길동)	○인권교육 이론 및 교재 개발 ○인권교육가역량강화교육 ○어린이청소년인권옹호활동	문해진
2599	2023-11-20	이편한동행사 회적협동조합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22 (상계동)	○독거노인 암환자 돌봄 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사업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가사서비스사업 ○평생교육법제2조에따른평생교육원사업 ○중장년고독사예방교육사업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원사업	한영조

등록 번호	신규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원사업	대표자
2598	2023-11-16	사단법인 케이아트뱅크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낙원동, 종로오피스텔)	1. 예술문화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2. 예술문화관련 교육(전문인력양성포함)및연구,출 판, 전시, 재능나눔관련사업 3. 유관기관및단체와네트워킹구축을통한연대(교 류,협력등)사업 4. 그밖의본회목적달성에필요한문화예술관련사업	전우천
2597	2023-11-13	살기좋은중랑 만들기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53 (신내동)	1. 공공서비스에 관한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2. 공공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및만족도조사 3. 공공서비스개선에관한주민공청회개최및정책제 언 4. 기타본단체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김태수
2596	2023-11-13	여자들의성장 과연결을위한 네트워킹플랫 폼-줌마네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01길 20 (성산동)	1. 여성의 사회, 문화, 경제, 정서적 자립과 성장 을 위한 교육 사업 2. 여성들간의연대와 '서로돌봄' 을위한네트워킹 시스템구축사업 3. 성평등문화기반조성을위한콘텐츠 제작및홍보, 연대사업 4. 위의1~3항을지속하기위한유무형의공유플랫폼 운영사업 5. 기타 '줌마네' 의목적에부응하는사업	이숙경
2595	2023-10-23	사단법인박악 희서울지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수송동)	1. 매월 1회 2주차 목요일 인성교육(행복아카데미 를 통한 인성교육과 실천 유학 운동) 개최 및 참가 2. 선현의유적지답성및유한계승사업 3. 본부및각지회유교문화관련사업참여 4. 심포지엄,세미나등을통한학술행사개최및참여 5. 기타문화활동연구와본회발전을위한사업	유상번
2594	2023-10-18	중랑생활스포 츠협의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99 (신내동)	○ 회원의 스포츠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교 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지역주민의활기찬여가생활을위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의건강한육성을위한스포츠프로그램을지 원하는사업 ○ 스포츠클럽개설운영및대회개최· 참가사업 ○ 스포츠프로그램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 기타본단체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홍명의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

대상 기간: 2023.10.1.~2023.12.31.

대상 단체: 20개 단체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885	법조공익 모임 나우	2023-12-27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 315 호(서초동, 정곡빌딩서관)	-공익 인권영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 지원 -사회적약자의인권보장을위한상담, 자문, 공익소송등법 률지원 -공익적법률영역확장을위한정책지원	홍기태
894	사단법인 공감센터	2023-12-2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길 38 (신당동)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설립 및 운영 -청소년을선도하고봉사체협의창구인 인터넷방송국의 설립 및 운영 -지역청소년을위한문화예술, 교육시설지도 -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체의 계도및개선유도 -청소년문화화거리및문화마을만들기운동전개등	장학일
1808	한국고양 이보호협 회	2023-12-14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26 (답십리동)	길고양이 구조 길고양이치료지원 길고양이TNR사업참여및홍보	박선미
1001	은행나무 어린이도 서관	2023-12-1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5가길 8 (시흥동)	-어린이 도서관 사업 -어린이문화사업 -어린이 · 청소년교육사업 -도서관지킴이교육사업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양정아
1718	동화콘텐 츠문화원	2023-12-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중곡동)	-동화를 활용한 문화 사업 -동화를활용한교육사업 -동화의저변확대를위한연구, 평가, 교류사업 -기타위각호에부대되는사업일체	우희정
2518	서리풀서 초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2023-12-08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 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길 51 (방배동, 보람빌)	1.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보급 2.장애인의복지증진 3.장애인의권익옹호	선승연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009	영등포구 녹색자전 거 봉사단	2023-11-17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77길 1 (대림동)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한강생태환경모니터링및환경보존활동 -시민자전거교육,홍보및환경캠페인	전근식
1471	미술등록 협회	2023-11-14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대왕빌딩)	-미술저작 보호 및 소유권 등록과 미술품 담보 약정등 기, 미술경매연구, 미술품 감정연구, 국제물납과 권원 보험, 권원분석 연구와 교육 및 관계자 인적교류, 학 술활동 회원상부상조 기관지발간 -미술품관련 자격제도 운영 의료활동후원및장학사업과 국제학교건립지원과사회공헌사업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및미술관련법에관한사항 -협회목적에부합하는수익사업 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김현동/김 도영
765	사단법인 더불어사 는사회	2023-11-14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오류동)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상담 및 자문 -사회복지에관한연구및조사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및불우장애인후원사업 -지하철노약자자리찾아주기운동 -건강장수지킴이보내기운동 -재가노인복지사업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설치 -그밖에이단체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김종래
630	창의이미 지언어연 구소	2023-11-0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소공동)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증진 및 상담사업 등	장용석
2028	통일인성 교육원	2023-11-07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 (재동)	-통일인성회복 운동 전개 -평화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교재개발및보급 -평화통일을위한통일인성캠프운영등에대한상담및지도 활동 -통일교육및정책에대한학술활동과전문잡지발간 -국학중심의평화통일방안연구및남북한교류협력사업추 진등	김선희
2082	은평구 사회적경 제협의회	2023-10-31	노동공정상생정 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대조동)	o사회적기업 복합매장인 36.6 위탁운영 o사회적기업장터운영 o회원시간역량강화워크숍개최	김흥철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046	모듬살이 연대	2023-10-30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28길 20 (낙원동)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한 소외계층 결연사업 -이웃을돕는단체의지원 -이웃을돕는단체와의연대협력사업등	유영훈
1497	흥사단교 육운동본 부	2023-10-26	평생교육국교육 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2(동송동)	* 바른교육과정소녀육성을위한사회적공토의진작과여론 의형성 * 올바른교육개혁을위한정책개발및연구 * 보완적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과도산학교설립을위 한준비 * 청소년활동의활성화를위한연구및실천 * 기타목적수행에필요한사업	박혜원
1248	이사랑나 눔도서관	2023-10-24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40 (방이동)	1.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좋은 책을 제공한다. 2.부모가자녀들에게좋은책을권해줄수있도록도와준다. 3.책을매개로같은지역의아이들과그부모들이서로작은공 동체를이루게한다. 4.아이들이걸어다닐만큼의거리에서좋은어린이도서관이있 는마을만들기에힘쓴다. 5.건강한어린이문화를고민하고실현한다. 6.그밖의우리도서관목적에맞는사업을한다.	장재완
1178	사랑나눔 의사회	2023-10-2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21 (휘경동)	-의료소외계층에 무료진료 -청소년유해약물퇴치사업 -보건 교육사업및전문가양성사업등	정재일
1470	국군포로 가족회	2023-10-20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8 (영등포동6가)	-귀환·미귀환 국군포로와 그 유족의 생사여부 조사 등 -귀환국군 포로및가족의복리후생,치유시설운영사업 -평화통일준비를위한문화예술및복지사업 -다양한언론매체를 통한북한바로알기홍보사업등	손명화
1984	롤링주빌 리	2023-10-13	노동공정상생정 책관공정경제담 당관	서울특별시성동구천 호대로426 (용답동)	○대부업체등으로부터부실채권의매입및무상양수 ○확보된채권의채무탕감, 채무조정 ○채무자구제사업의캠페인, 새출발을위한교육및상담	설은주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419	사단법인 은평상상	2023-10-10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3-6 (녹번동)	○공익활동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공익활동단체와공익활동가지원을위한기금마련과지원사업 ○시민사회및마을활성화정책수립등의연구사업 ○마을공동체형성을위한민간네트워크사업 ○시민사회와마을공동체를중심으로하는문화사업 ○지속가능한지역사회인적기반조성을위한아동·청소년 등의교육및지원사업 ○시민사회와마을공동체기반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 ○지역사회연대와협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 ○위사업수행을위한정부, 지자체위탁사 ○기타법인의목적에부합되는사업및기금, 후원금, 출자금 유치사업	최승국
1084	투명사회 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2023-10-05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서교동)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캠페인 -국민의알권리실현과사회의투명성확보를위한법제도개선 -정보공개제도활용한언론사의답사보도지원 -공개정보활성화를위한교육및출판	김유승/권 해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 -

대상 기간: 2023.10.1.~2023.12.31.

대상 단체: 15개 단체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127	2023-10-27	용산사람들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51 (원효로1가, 용산파크뷰)	○ 마을공동체 관련 법령, 정책 등에 관한 사업 ○ 주민과활동가들을위한다양한교육사업 ○ 마을주민들이일상적으로소통하고교류할수있는생 활문화사업 ○ 마을공동체관련홍보사업 ○ 그외용산사람들의목적과원칙에부합하고필요하다 고인정되는기타수익사업	안혜정
1257	2023-10-23	너눔·봉사 28년6개월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길 22 (역촌동)	-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등 지원사업(장 애인,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에게 일상생활 지원관련 의료지원 사업등) - 장애인, 저소득노인, 새터민등소외지역주민들에대 한자원봉사활동 - 기타이단체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김봉식
438	2023-10-18	해병청롱봉 사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8길 19, 1층 3호 (중화동)	월남전 참전고엽제 피해자 장례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김세민
2578	2023-10-13	사단법인 위드뱅크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구의동, 테크노-마트21)	○ 취약계층 자립회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나눔 사 업 ○ 취약계층생계안정을위한정보제공및맞춤형취업나 눔지원사업 ○ 자원봉사나눔활성화를위한조사,연구및홍보사업 ○ 자원봉사자자질향상연수회개최및유관단체와의협 업 ○ 그밖의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현민
1761	2023-10-13	교통장애인 송파지구 봉사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29 (마천동)	1.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교육, 계몽, 결연사업 2. 교통문화함양과교통안전생활화추진사업 3. 교통사고장애인발생원인분석및예방홍보사업 4. 교통사고줄이기시민운동전개사업 5. 교통사고유가족지원사업 6. 사회의식개선과활동을위한간행물발행사업 7. 각종피해구제상당및장애인재활사업등	윤용덕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56	2023-10-13	(사)한교통장 애인연합회 중앙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9다길 5-3 (신대방동,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내)	교통사고 장애인 자립사업 장애인부부무료함동결혼식사업 사랑나눔장학사업	송병현
1325	2023-10-13	(사)한국자 전거미캐닉 협회 서울본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선유로258	-자전거기술교육 서비스 -대민봉사활동 -소비자보호활동	이상훈
228	2023-10-13	영등포모범 운전자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당산동4가375-2	주차교차로 교통정리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최용식
1149	2023-10-10	산소마을	여성가족정책 실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54, 송림빌딩 3층 (대림동)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 설치 운영 노인종합사회복지관및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및사회문화사업지원	박채영
449	2023-10-10	서울지역공 부방연합회	여성가족정책 실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32-8, 한국빈민운동회관 (이화동)	빈곤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활동 및 연구와 공부방 교사 교육활동 및 연구	변은희
407	2023-10-10	한국아동청 소년권리 안전협회	여성가족정책 실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54, 은진빌딩 3층 (사당동)	아동복지사업(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청소년 안전 보호사업 등)	이재연
280	2023-10-10	한국아동안 전관리교육 협회	여성가족정책 실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2, 2동 1104호(도화동, 고려아카데미텔)	유아, 아동 안전관리분야 연구개발보급 세미나학술교 류등	김일영
204	2023-10-10	인터케어	여성가족정책 실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3층 진료실 (창신동, 종로구종합사회복지 관)	아동구호, 아동지원, 봉사활동지원 등	백종만
135	2023-10-10	한백아카데 미	여성가족정책 실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07 (대조동)	노인정방문, 소년, 소녀가장돕기, 무의탁노인방문	박숙자
1377	2023-10-06	에너지전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산로5길 27 (중산동)	에너지전환 홍보와 교육	강윤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1. 25.~2024. 2. 7.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23444336	영등포구 대림로43길 5 지층(대림동)	상하수도요금	20.10~23.10	19	45,29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3길 5 지층호	박희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3길 5 지층호	45,290	'23.12.1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전지호(☎02-3146-4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권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부.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3-07-03 07:52:15	266고7958	10,300	최*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20길
2	남산3호터널	2023-07-03 08:03:44	151주1132	10,300	하*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	남산1호터널	2023-07-03 08:38:58	141버6933	10,300	이*빈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4	남산1호터널	2023-07-03 08:40:23	56려4356	10,300	(주)레*****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5	남산1호터널	2023-07-03 09:27:07	365도5524	10,300	박*중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7번길
6	남산3호터널	2023-07-03 10:01:42	69로8128	10,300	박*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길
7	남산3호터널	2023-07-03 10:10:24	69주7796	10,300	B**O Z**O P****A T*****A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길
8	남산3호터널	2023-07-03 11:11:19	207누1917	10,300	주식회사 더***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9	남산1호터널	2023-07-03 12:36:58	183조7774	10,300	양*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1번길
10	남산3호터널	2023-07-03 12:39:26	132마2619	10,300	(주)화***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응지로
11	남산3호터널	2023-07-03 12:54:53	54수2492	10,300	한*희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로
12	남산3호터널	2023-07-03 12:58:03	171머7354	10,300	주식회사 카*****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	남산1호터널	2023-07-03 13:34:12	41누5389	10,300	성**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4	남산1호터널	2023-07-03 13:43:52	20다7988	10,300	임*희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36번길
15	남산1호터널	2023-07-03 14:30:22	184거9842	10,300	박*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16	남산1호터널	2023-07-03 15:05:32	28저4246	5,150	황*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52번길
17	남산1호터널	2023-07-03 15:33:18	249부3439	10,300	원*정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8	남산3호터널	2023-07-03 15:39:56	235오2936	10,300	J*N Z*****O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6가길
19	남산1호터널	2023-07-03 16:45:47	133서6034	10,300	박*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6번길
20	남산3호터널	2023-07-03 16:47:16	41누5389	10,300	성**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	남산3호터널	2023-07-03 16:52:34	13주3421	5,150	신*화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2	남산3호터널	2023-07-03 17:01:34	52마0577	10,300	K**N A*****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23	남산1호터널	2023-07-03 17:12:03	57거5445	10,300	전*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4	남산3호터널	2023-07-03 17:22:37	02노4721	10,300	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47길
25	남산1호터널	2023-07-03 17:29:18	222너3511	10,300	주식회사 제****디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로5번길
26	남산3호터널	2023-07-03 17:44:28	181오7221	10,300	이*욱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7	남산3호터널	2023-07-03 18:41:43	173구2299	10,300	박*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09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8	남산1호터널	2023-07-04 08:21:27	53라5821	10,300	신*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29	남산1호터널	2023-07-04 08:39:30	56러4356	10,300	(주)레*****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0	남산1호터널	2023-07-04 11:20:26	179두5528	10,300	김*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31	남산3호터널	2023-07-04 12:08:16	43너9057	10,300	유*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3번길
32	남산3호터널	2023-07-04 13:25:16	66조3598	10,300	박*훈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33	남산1호터널	2023-07-04 13:38:11	58가6710	10,300	김*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96번길
34	남산3호터널	2023-07-04 13:55:07	22조9916	10,300	김*현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5	남산3호터널	2023-07-04 14:11:29	66조3598	10,300	박*훈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36	남산1호터널	2023-07-04 14:37:16	54나7735	5,150	주식회사 삼***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7	남산1호터널	2023-07-04 14:44:24	34오2861	10,300	주식회사 그**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156번길
38	남산1호터널	2023-07-04 15:23:32	24서6590	10,300	(주)메****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20번길
39	남산1호터널	2023-07-04 15:35:45	22무6036	10,300	주식회사 빅***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99번길
40	남산3호터널	2023-07-04 15:49:10	165허9802	10,300	롯데(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41	남산1호터널	2023-07-04 15:58:34	352주2579	10,300	이*석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42	남산3호터널	2023-07-04 16:18:54	46조9633	10,300	김*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02번길
43	남산1호터널	2023-07-04 17:10:23	08주7861	10,300	김*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4	남산1호터널	2023-07-04 17:27:29	26너2039	10,300	(주)천*운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동함평산단길
45	남산3호터널	2023-07-04 18:45:01	49루6213	10,300	김*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22가길
46	남산1호터널	2023-07-04 18:49:44	63무0251	10,300	주식회사 포*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47	남산3호터널	2023-07-04 19:17:42	06고7819	10,300	E*****A H*****N M*****D H*****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4길
48	남산3호터널	2023-07-04 19:22:25	06조2672	10,300	주식회사 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9	남산3호터널	2023-07-05 08:44:12	143너6264	10,300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6길
50	남산1호터널	2023-07-05 08:57:19	37고7680	10,300	윤*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51	남산1호터널	2023-07-05 09:00:19	240버6127	10,300	정*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52	남산1호터널	2023-07-05 09:10:39	329조7590	10,300	임*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53	남산1호터널	2023-07-05 09:57:00	174라7983	10,300	(주)태***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4	남산1호터널	2023-07-05 10:26:41	38고8350	10,300	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55	남산1호터널	2023-07-05 11:25:43	66노4861	10,300	유*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길
56	남산1호터널	2023-07-05 11:35:43	41너7147	5,150	윤*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22번길
57	남산1호터널	2023-07-05 11:35:51	66노4861	10,300	유*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길
58	남산1호터널	2023-07-05 11:37:08	20나5074	5,150	이*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59	남산1호터널	2023-07-05 11:50:36	316노9135	10,300	정*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60	남산3호터널	2023-07-05 12:33:36	169호4637	10,300	(주)농****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61	남산1호터널	2023-07-05 12:35:37	35마6720	10,300	서*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2	남산1호터널	2023-07-05 12:56:27	177여8960	10,300	조*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63	남산3호터널	2023-07-05 13:53:16	139너4504	10,300	박*숙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64	남산1호터널	2023-07-05 14:11:49	56고8253	10,300	송*혁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65	남산1호터널	2023-07-05 14:49:34	63로0820	10,300	하*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66	남산1호터널	2023-07-05 15:01:20	177보9432	10,300	주식회사 예****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7	남산1호터널	2023-07-05 15:59:51	30주8527	10,300	홍*****인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내항길
68	남산3호터널	2023-07-05 16:03:05	66소9746	10,300	주식회사 헤***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길
69	남산1호터널	2023-07-05 16:04:12	05더8281	10,300	지*훈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0	남산3호터널	2023-07-05 16:05:50	63로0820	10,300	하*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리움)
71	남산3호터널	2023-07-05 16:07:13	40고9386	10,300	김*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72	남산1호터널	2023-07-05 16:22:38	177보9432	10,300	주식회사 예****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73	남산1호터널	2023-07-05 16:43:11	329조7590	10,300	임*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74	남산1호터널	2023-07-05 16:49:21	52누7132	10,300	김*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75	남산1호터널	2023-07-05 16:56:13	139버7887	10,300	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0길
76	남산1호터널	2023-07-05 17:17:56	39거9707	10,300	안*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
77	남산1호터널	2023-07-05 18:00:52	166마3446	10,300	정*정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78	남산1호터널	2023-07-05 18:59:21	52노1332	10,300	S*****N M*****D A***D M*****D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79	남산3호터널	2023-07-05 19:03:24	162고1509	10,300	박*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80	남산3호터널	2023-07-05 19:54:35	66도8452	10,300	N****N N**C K***H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81	남산1호터널	2023-07-05 20:52:01	207누1917	10,300	주식회사 더***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82	남산1호터널	2023-07-06 07:16:54	329조7590	10,300	임*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83	남산1호터널	2023-07-06 07:20:57	60주1462	10,300	이*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84	남산1호터널	2023-07-06 07:35:40	194호7861	10,300	주식회사 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85	남산3호터널	2023-07-06 08:02:34	175나7853	10,300	정*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86	남산1호터널	2023-07-06 08:58:07	05구5793	10,300	배*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87	남산3호터널	2023-07-06 09:20:52	52라5602	10,300	(주)보***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88	남산1호터널	2023-07-06 10:12:48	329조7590	10,300	임*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89	남산3호터널	2023-07-06 10:47:25	207누1917	10,300	주식회사 더***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90	남산3호터널	2023-07-06 11:10:51	21가0202	10,300	박*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91	남산1호터널	2023-07-06 11:44:29	56서0533	10,300	이*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92	남산1호터널	2023-07-06 12:43:01	164나6983	10,300	K*M E****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23번길
93	남산1호터널	2023-07-06 12:43:08	62서4084	5,150	윤*미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94	남산3호터널	2023-07-06 12:58:36	45소7286	10,300	정*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20번길
95	남산1호터널	2023-07-06 13:06:04	51소8979	10,300	한*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96	남산1호터널	2023-07-06 14:35:32	45마8313	5,150	N****N T* N*M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2번길
97	남산1호터널	2023-07-06 14:40:12	161하8517	10,300	(주)씨*****카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7길
98	남산1호터널	2023-07-06 15:00:45	27나6729	10,300	N****N V*N T*E	경기도 안성시 개내교3길
99	남산3호터널	2023-07-06 15:43:03	37모3343	10,300	(주)가**셀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남산1호터널	2023-07-06 15:48:50	51소8979	10,300	한*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01	남산1호터널	2023-07-06 15:56:31	66호0117	10,300	(주)농****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2	남산3호터널	2023-07-06 16:49:40	16두9401	10,300	김*숙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56번길
103	남산1호터널	2023-07-06 16:51:40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04	남산1호터널	2023-07-06 16:57:56	56루0276	10,300	배*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05	남산3호터널	2023-07-06 17:01:58	50노5489	10,300	안*구, 김*순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98번길
106	남산3호터널	2023-07-06 18:12:37	128누2632	10,300	김*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7길
107	남산3호터널	2023-07-06 18:37:46	67루1723	5,150	주식회사 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도공원2로
108	남산3호터널	2023-07-06 19:28:18	66도4273	10,300	김*호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09	남산1호터널	2023-07-06 19:46:00	57로4305	10,300	우*협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5길
110	남산1호터널	2023-07-06 20:30:12	69조8904	10,300	정*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111	남산3호터널	2023-07-07 09:06:39	43소4929	10,300	(주)아****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12	남산1호터널	2023-07-07 09:30:19	151여6400	10,300	장*연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25번길
113	남산3호터널	2023-07-07 09:32:33	36너7320	10,300	이*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14	남산3호터널	2023-07-07 10:01:14	66거1162	10,300	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1가길
115	남산1호터널	2023-07-07 10:01:21	51고5584	10,300	안*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16	남산3호터널	2023-07-07 10:09:00	147누5115	10,300	주식회사 신***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17	남산1호터널	2023-07-07 10:33:15	25루2404	10,300	이*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26번길
118	남산3호터널	2023-07-07 11:59:42	20마8813	10,300	Y****E M****H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65번길
119	남산1호터널	2023-07-07 13:11:08	100가2436	10,300	위*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20	남산1호터널	2023-07-07 13:27:07	07저7004	10,300	문*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5다길
121	남산1호터널	2023-07-07 14:46:50	134거8190	10,300	현***디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22	남산3호터널	2023-07-07 14:52:24	61너6196	10,300	미*트 몽**안 에***즈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3	남산1호터널	2023-07-07 15:08:00	27소1678	5,150	주식회사 까*멘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53길
124	남산3호터널	2023-07-07 15:56:24	03나0788	5,150	이*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125	남산3호터널	2023-07-07 16:10:12	52노5160	5,150	주식회사 벼***씨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204번길
126	남산1호터널	2023-07-07 17:10:23	51저6198	10,300	이*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별만장길
127	남산1호터널	2023-07-07 18:05:31	50더7117	10,300	(주)코*****리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128	남산1호터널	2023-07-07 18:36:47	11루2529	10,300	이*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39길
129	남산1호터널	2023-07-07 18:53:27	24버4485	10,300	이*숙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360번길
130	남산1호터널	2023-07-07 18:56:51	272주8277	10,300	에*****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남산3호터널	2023-07-07 19:19:43	319부1028	10,300	갈*진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
132	남산3호터널	2023-07-07 19:34:06	150나1464	10,300	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5길
133	남산1호터널	2023-07-07 19:34:32	19버5900	10,300	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나길
134	남산1호터널	2023-07-07 19:49:06	36다4006	10,300	주식회사 엠*****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5	남산1호터널	2023-07-07 19:53:19	36다4006	10,300	주식회사 엠*****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36	남산1호터널	2023-07-07 20:19:50	36더6619	10,300	주식회사 대***블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37	남산1호터널	2023-07-07 20:46:13	168조6085	10,300	원***별(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138	남산1호터널	2023-07-10 07:12:29	60주1462	10,300	이*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39	남산1호터널	2023-07-10 09:03:08	364무3708	10,300	주식회사 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2번길
140	남산1호터널	2023-07-10 09:33:03	04두8711	10,300	우*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41	남산3호터널	2023-07-10 09:45:46	207누1917	10,300	주식회사 더***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42	남산3호터널	2023-07-10 10:16:32	39저4743	10,300	S*****A A***N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143	남산3호터널	2023-07-10 10:44:29	25소3366	10,300	이*규	경상북도 문경시 돈달로
144	남산1호터널	2023-07-10 10:57:29	228루1739	10,300	김*미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
145	남산3호터널	2023-07-10 11:11:11	28소6583	5,150	박*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폴8길
146	남산1호터널	2023-07-10 11:17:46	223모8796	10,300	김*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47	남산1호터널	2023-07-10 11:22:36	26라0474	10,300	김*순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동영길
148	남산1호터널	2023-07-10 11:28:01	176보4544	10,300	김*****대(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길
149	남산1호터널	2023-07-10 11:39:06	126보6161	10,300	유*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학교길
150	남산1호터널	2023-07-10 11:44:15	249러6008	10,300	허*****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51	남산3호터널	2023-07-10 11:45:45	210너3792	10,300	주식회사 예***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52	남산3호터널	2023-07-10 12:09:16	46너9304	10,300	김*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53	남산3호터널	2023-07-10 12:45:07	143무7298	10,300	L * Y*****I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교로264번길
154	남산1호터널	2023-07-10 12:51:40	101하8079	10,300	원***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55	남산3호터널	2023-07-10 12:56:25	269마4905	10,300	Q**N M****E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70번길
156	남산3호터널	2023-07-10 13:05:07	329조7590	10,300	임*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57	남산1호터널	2023-07-10 13:58:43	48모9855	10,300	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58	남산3호터널	2023-07-10 14:03:08	322조6727	10,300	배*운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59	남산3호터널	2023-07-10 14:35:24	63로9396	5,150	L*U Z*****G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
160	남산3호터널	2023-07-10 14:36:01	101하8079	10,300	원***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1	남산3호터널	2023-07-10 14:44:24	247가8151	10,300	최*숨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62	남산3호터널	2023-07-10 15:16:33	61두8116	5,150	박*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63	남산1호터널	2023-07-10 16:23:12	191모3145	10,300	(주)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164	남산3호터널	2023-07-10 16:34:48	247가8151	10,300	최*숨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65	남산1호터널	2023-07-10 16:48:07	58누6050	10,300	문*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166	남산3호터널	2023-07-10 18:35:19	60오4717	10,300	(재)국****회(일*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3가길
167	남산1호터널	2023-07-10 18:55:30	66로9076	10,300	김*우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교278번길
168	남산1호터널	2023-07-10 19:25:40	165하4646	5,150	(주) 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169	남산1호터널	2023-07-10 20:46:59	186구8041	10,300	임*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춘양로
170	남산1호터널	2023-07-11 07:02:30	66나3586	10,300	김*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7길
171	남산1호터널	2023-07-11 08:39:07	315수4818	5,150	이*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72	남산1호터널	2023-07-11 09:08:25	329조7590	10,300	임*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3	남산3호터널	2023-07-11 09:34:33	207누1917	10,300	주식회사 더***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4	남산1호터널	2023-07-11 09:52:37	08노2808	10,300	박*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하늘소로
175	남산3호터널	2023-07-11 11:18:44	367라6114	10,300	김*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상두원길
176	남산1호터널	2023-07-11 11:46:56	23더0651	10,300	이*희	경기도 파주시 인능안길
177	남산1호터널	2023-07-11 11:47:26	58로8419	10,300	임*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8길
178	남산1호터널	2023-07-11 12:39:56	163부5148	10,300	문*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380번길
179	남산1호터널	2023-07-11 12:58:53	28버2862	10,300	A***R, G*****O J***E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180	남산1호터널	2023-07-11 13:41:18	329조7590	10,300	임*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81	남산1호터널	2023-07-11 13:41:59	55보0595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4길
182	남산3호터널	2023-07-11 13:44:44	343노1832	10,300	김*근	경기도 하남시 윗배알미길
183	남산3호터널	2023-07-11 15:35:34	01조3128	10,300	박*영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2로
184	남산1호터널	2023-07-11 16:25:35	15거5000	10,300	박*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185	남산1호터널	2023-07-11 17:35:00	51도3800	10,300	최*진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86	남산1호터널	2023-07-11 18:36:56	175더8282	10,300	성*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187	남산3호터널	2023-07-11 19:31:48	43저7441	10,300	권*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188	남산1호터널	2023-07-11 20:38:39	167서5288	10,300	전*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1가길
189	남산1호터널	2023-07-12 07:32:19	05너4150	10,300	박*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1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90	남산1호터널	2023-07-12 08:06:32	16도4500	10,300	안*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8길
191	남산1호터널	2023-07-12 08:13:21	51도3800	10,300	최*진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92	남산3호터널	2023-07-12 08:42:32	350부4284	10,300	정*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193	남산3호터널	2023-07-12 08:43:30	111가5836	10,300	정*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4	남산1호터널	2023-07-12 08:56:48	48누8407	5,150	M****Y, S**H M*****L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95	남산1호터널	2023-07-12 10:56:35	48누8407	5,150	M****Y, S**H M*****S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96	남산1호터널	2023-07-12 11:07:25	43모1479	10,300	이*우	대구광역시 남구 효서길
197	남산3호터널	2023-07-12 13:38:03	04더9656	10,300	최*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79번길
198	남산3호터널	2023-07-12 13:40:12	22도5105	5,150	최*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문로45라길
199	남산1호터널	2023-07-12 14:05:40	391마8906	10,300	김*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200	남산3호터널	2023-07-12 14:16:44	153다2635	10,300	김*덕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201	남산1호터널	2023-07-12 14:50:15	256수9664	10,300	한*호	경상남도 거제시 진목1길
202	남산3호터널	2023-07-12 15:06:42	62우2362	10,300	손*천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296번길
203	남산3호터널	2023-07-12 16:06:43	42마1659	5,150	사단법인 생****회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로
204	남산1호터널	2023-07-12 17:23:49	01라5873	10,300	J*N S*****N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205	남산1호터널	2023-07-12 18:25:05	23조0383	10,300	이*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6	남산3호터널	2023-07-12 19:15:50	217로3616	10,300	(주)유*****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07	남산3호터널	2023-07-12 19:37:58	17호2222	10,300	에***카(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촌길
208	남산1호터널	2023-07-12 20:04:39	225저6068	10,300	K**N A*****R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209	남산1호터널	2023-07-13 07:18:11	60주1462	10,300	이*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210	남산1호터널	2023-07-13 08:55:59	314우6140	10,300	조****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원로
211	남산1호터널	2023-07-13 09:07:28	61부1383	10,300	오*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4길
212	남산3호터널	2023-07-13 09:26:05	183무7154	10,300	인*****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3길
213	남산3호터널	2023-07-13 09:31:42	47로4507	10,300	세무법인 와*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4	남산3호터널	2023-07-13 10:06:09	133하6065	10,300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5	남산3호터널	2023-07-13 10:14:58	50루3400	5,150	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길
216	남산3호터널	2023-07-13 11:11:21	27로2105	10,300	이*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07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17	남산1호터널	2023-07-13 11:59:16	303머8089	10,300	배*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주락길
218	남산1호터널	2023-07-13 12:31:28	232소6799	10,300	페*****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19	남산1호터널	2023-07-13 12:32:17	29더9475	10,300	장*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6길
220	남산1호터널	2023-07-13 12:38:54	274마8124	10,300	이*길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21	남산1호터널	2023-07-13 13:02:24	212도2416	10,300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222	남산1호터널	2023-07-13 13:37:09	61저0941	10,300	(주)돌*숲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3	남산3호터널	2023-07-13 14:31:17	303머8089	10,300	배*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주락길
224	남산3호터널	2023-07-13 15:04:38	40구1381	10,300	조*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25	남산1호터널	2023-07-13 15:14:00	65주9852	10,300	F*****A Q*****S, L**S A*****O	경상북도 칠곡군 예관읍 석전로
226	남산3호터널	2023-07-13 15:46:34	133하6065	10,300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7	남산1호터널	2023-07-13 16:35:33	64무0873	10,300	함*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801번길
228	남산3호터널	2023-07-13 16:35:34	38머1256	10,300	김*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8길
229	남산1호터널	2023-07-13 16:51:34	15누2806	10,300	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30	남산3호터널	2023-07-13 17:15:16	22머0842	10,300	주식회사 세**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31	남산1호터널	2023-07-13 17:27:22	58조3388	10,300	(주)플***타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1길
232	남산3호터널	2023-07-13 17:46:05	12다4869	10,300	양*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33	남산1호터널	2023-07-13 17:51:49	125가1042	10,300	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7길
234	남산3호터널	2023-07-13 18:07:11	30버4605	5,150	윤*영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50번길
235	남산3호터널	2023-07-13 18:25:28	31머6335	10,300	박*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48번길
236	남산1호터널	2023-07-13 20:18:36	28조6030	10,300	이*화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37	남산3호터널	2023-07-13 20:22:54	381누9806	10,300	K*****V M*****L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왕수물길
238	남산1호터널	2023-07-13 20:36:18	133가8201	10,300	정*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39	남산1호터널	2023-07-14 07:21:00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240	남산1호터널	2023-07-14 08:04:42	51도3800	10,300	최*진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241	남산1호터널	2023-07-14 08:50:10	59조2604	10,300	임*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42	남산1호터널	2023-07-14 10:10:45	170다8355	10,300	용*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43	남산3호터널	2023-07-14 10:39:00	45수9230	10,300	원*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44	남산3호터널	2023-07-14 10:51:04	101하1261	10,300	(주)건***카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245	남산3호터널	2023-07-14 10:58:10	282노9195	10,300	주식회사 남****미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246	남산3호터널	2023-07-14 11:17:58	03우1286	10,300	김*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47	남산1호터널	2023-07-14 12:00:59	64거8808	10,300	신*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248	남산1호터널	2023-07-14 12:58:19	63여9299	10,300	홍*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351번길
249	남산1호터널	2023-07-14 12:58:25	28조6030	10,300	이*화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50	남산1호터널	2023-07-14 13:58:11	310나6949	10,300	주식회사 알***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1	남산1호터널	2023-07-14 14:27:52	34도5620	10,300	이*순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252	남산1호터널	2023-07-14 14:37:48	41호1579	10,300	(주)에****카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253	남산1호터널	2023-07-14 14:58:10	65머8604	10,300	홍*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54	남산1호터널	2023-07-14 15:00:54	310나6949	10,300	주식회사 알***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5	남산1호터널	2023-07-14 15:14:19	20오7155	10,300	U**Y A***O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0길
256	남산1호터널	2023-07-14 15:29:42	15누2806	10,300	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57	남산3호터널	2023-07-14 15:35:50	207누1917	10,300	주식회사 더***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258	남산1호터널	2023-07-14 15:40:06	345부4224	10,300	이*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259	남산1호터널	2023-07-14 15:53:30	331구2115	10,300	박*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4길
260	남산1호터널	2023-07-14 16:16:31	125가1042	10,300	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7길
261	남산1호터널	2023-07-14 16:41:44	67더5724	10,300	(주)대**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62	남산3호터널	2023-07-14 16:46:17	65머8604	10,300	홍*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63	남산1호터널	2023-07-14 16:59:56	63여9299	10,300	홍*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351번길
264	남산1호터널	2023-07-14 17:01:26	120수5766	10,300	P**O Y*****G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6나길
265	남산3호터널	2023-07-14 17:04:55	42거8556	10,300	정*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10번길
266	남산3호터널	2023-07-14 18:40:01	19거3428	10,300	반*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165번길
267	남산1호터널	2023-07-14 19:04:26	23라8759	10,300	안*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68	남산3호터널	2023-07-14 19:14:15	179머3333	10,300	(주)웨*****스	대구광역시 서구 외룡로
269	남산1호터널	2023-07-14 19:26:30	53보0164	10,300	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270	남산1호터널	2023-07-14 19:39:37	58나6222	10,300	김*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71	남산3호터널	2023-07-14 19:52:04	294머9647	10,300	윤*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72	남산1호터널	2023-07-14 20:03:54	67너9600	10,300	최*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45번길
273	남산1호터널	2023-07-14 20:28:44	66소1309	10,300	(주)협**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3로
274	남산1호터널	2023-07-14 20:28:47	278보4356	10,300	주식회사 예*****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1길
275	남산1호터널	2023-07-14 20:31:51	16두9008	10,300	주식회사 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276	남산1호터널	2023-07-14 20:45:07	128더1692	10,300	김*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량로
277	남산3호터널	2023-07-14 20:57:07	66버8163	10,300	양*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8	남산1호터널	2023-07-14 20:58:03	351두3731	10,300	양*순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3-03-17 16:28:51	128호7881	10,300	이*배	경남 김해시 계동로 76-56 605동 1102호
2	남산1호터널	2023-04-05 09:37:22	145허7372	10,300	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정자동)
3	남산1호터널	2023-04-07 19:54:01	157허1007	10,300	백*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1번지 안산고잔 9차 푸르지오 901동 503호
4	남산1호터널	2023-04-11 09:38:50	157호9923	10,300	주*****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79번지 세왕빌딩 1동 402호
5	남산1호터널	2023-04-12 15:02:53	157호2240	10,300	정*연	서울 중구 신당동 217-91번지 나동 16호
6	남산1호터널	2023-04-14 08:35:37	157호5908	10,300	㈜**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3번지 6층
7	남산1호터널	2023-05-17 13:22:52	172허3298	10,300	퓨**티(강*욱)	서울 강남구 논현로 115길 45 503호
8	남산1호터널	2023-05-17 14:29:51	149호5943	10,300	강*수	서울 구로구 부일로 15가길 18-28 지층 101
9	남산1호터널	2023-05-17 19:10:05	169허6112	10,300	심*진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77-4, 201호
10	남산3호터널	2023-05-17 20:57:43	269부7527	10,300	김*웅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 3로 34 219동 404호
11	남산1호터널	2023-05-18 08:43:17	152허1879	10,300	알*****트(권*수의 1명)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길 62
12	남산1호터널	2023-05-18 14:23:02	156허5476	10,300	㈜*****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중앙로 83 (비아동)
13	남산1호터널	2023-05-18 14:29:38	169허5444	10,300	주*****색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 2층 남산동
14	남산1호터널	2023-05-19 07:51:32	140호2469	10,300	주*****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740 5층 503호
15	남산1호터널	2023-05-19 15:01:47	145호5400	10,300	C*****N	인천 중구 큰우물로 20번길 13-11 201호
16	남산1호터널	2023-05-23 15:31:56	145허6417	10,300	변*태	경기 안양시 동안구 128, 1층 LG유플러스(호계동, 신평빌딩)
17	남산3호터널	2023-05-23 20:15:44	149허5044	10,300	권*자	서울 노원구 노원로 564 1016동 301호
18	남산1호터널	2023-05-24 10:12:43	195호3164	10,300	㈜****별	경기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65-10 (주) 이규글로벌
19	남산1호터널	2023-05-24 14:18:04	161허8744	10,300	조*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도 51번길 20 402호 (영운동, 은성아파트)
20	남산1호터널	2023-05-24 15:32:46	156허7577	10,300	김*균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47길24, 105동 1805호 (구로동,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21	남산3호터널	2023-05-25 09:33:24	195호2929	10,300	송*영	경기 군포시 당산로 111, 202호(금정동, 루이캐슬)
22	남산3호터널	2023-05-30 09:35:23	384루9080	10,300	박*민	서울 성북구 송인로 50 115동 1702호
23	남산1호터널	2023-05-31 11:46:38	157허3766	10,300	박*영	서울 마포구 회우정로 3길 7-10, 402호 (합정동)
24	남산3호터널	2023-05-31 18:19:58	283누8247	10,300	주*****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 41호
25	남산1호터널	2023-05-31 18:30:44	283누8247	10,300	주*****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 41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6	남산3호터널	2023-06-13 16:31:10	68호0139	10,300	박*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15층 1504호
27	남산1호터널	2023-06-14 09:59:33	101하6595	10,300	이*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3884번길 22-45, 101-402
28	남산1호터널	2023-06-14 10:29:37	109하7147	10,300	정*준	경기도 파주시 해일로 11, 1106동 1702호
29	남산3호터널	2023-06-14 14:43:28	68호0139	10,300	박*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15층 1504호
30	남산1호터널	2023-06-15 12:50:25	59하8249	10,300	주*조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항로 532-1 (신인동)
31	남산1호터널	2023-06-15 16:03:29	59하8249	10,300	주*조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항로 532-1 (신인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7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을 미달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1.25. ~ 2024.2.8.

2. 처분대상 및 내용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04-1-0257	(유)삼웅수산 (오*순)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3개월 무실적 (2023년 5~6월, 11월)	중도매업 허가취소

3. 처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4. 이의제기 안내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담당관 ☎02)2133-446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1. 25.~2024. 2. 7.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6720959	동작구 신대방14길 24, 204호(신대방동)	상하수도요금	20.10~23.10	19	51,65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동작구 신대방14길 24, 204호(신대방동)	전춘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34길 3, 403호	51,650	'23.12.1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전지호(☎02-3146-4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3호

<백동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 및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백동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개요

종목 명칭	분야	지정 범주	전수 형태
백동장	기능	전통기술	개인

2. 예고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백동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으로 지정하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함

- 백동장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인 백동을 소재로 비녀, 촛대, 화로, 담뱃대 등 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임. 고종과 순종 대에 백동으로 주조된 백동전이 통용되었고, 현재에도 100원과 500원 동전 주조에 백동이 사용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구리에 니켈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백동 합금 기술의 사용은 1백년 이상되었음.
- 백동은 강도가 높고 산화되는 속도가 더디며 광택을 잘 유지하는 장점 때문에 장신구나 생활용품의 소재로 인기가 높아 한때 한국 금속공예문화의 전통을 이루는 중요한 공예품의 재료였음.
- 그러나 백동은 다른 구리 합금과 비교하여 연성이 다소 떨어지고 단단하여 다루기가 힘들어서 백동으로 전통 공예를 제작하는 작업이 많지 않은 상황임. 이에 앞으로의 기술 전수와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서 백동장 종목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 ① 전화 : (02)2133-2616 ② 팩스 : (02)768-8873
-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4층 문화재정책과(045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4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한*규 포함 2명
- 서류의 송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1길 16, ***호(상도동, 청구빌라) 외
-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서류의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한 납부최고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2, 347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4년 1월 4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2월 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 공시충돌[2024년 1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 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충돌사유	공시충돌일자	세액(원)	담당자
1	620-101501-202210-2-605-000004	취득세 부동산	한*규	2024.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길 16, ***호 (상동, 정구빌라)	폐문부제 등	2024.1.25.	144,236,140	임지현
2	740-140003-202211-2-640-500002	법인지방소득세	유*를	2024.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1길 12, ****호 (성내동, 하나플러스)	폐문부제 등	2024.1.25.	44,697,450	임지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1.25. ~ 2024.2.8.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소노이앤씨 종합건설 (대표 오주현)	건축공사업 01-38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12, 402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명: 오봉초 외 1교(당현초)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하도급사: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하도급증: 2023F 0132 -하도급액: 44,528,000원 -공사ID: 1760264	법 제34조 제2항	과징금 20,000,000원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9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517)	쥬제덕종합엔지니어링 (113-81-38043)	김재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2, 3층(성산동)	2024. 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3호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라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마감일(2024. 2. 15.)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지원대상 사업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

3.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동행특별시	복지·건강	·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탈북자 등 사회적 복지 증진 ·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노년학습자 학습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
	사회통합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시민의식 함양,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계층간 갈등해소 등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매력특별시	민생경제	· 청년취업·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 ·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문화관광·체육	· 남산, 청계천, 한강 등 서울 관광 명소 알리기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 활동
안전특별시	교통·안전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안전 불감증 해소, 생명존중 확산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환경보전 · 자원절약	· 강·하천 살리기,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 쓰레기 줄이기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등

4. 사업신청 및 지원규모

- 사업신청 : 1개 단체당 1개 사업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별 3,000만원 이하(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규모 결정)
 - 자부담은 보조금의 7% 이상 의무 편성(10% 이상 5점 가점 부여)

심사배제 대상(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요건(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사무실 설치·운영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단체의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서울특별시의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 지방보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연속으로 서울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자부담 의무화)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7% 미만 부담단체가 신청한 사업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 ※ 2023년까지는 심사점수가 70점 미만 단체 미선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유사·중복사업 지원 배제
 -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시·도, 다른 부서, 자치구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5.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4. 1. 25.(목) 14:00
- 방 법 :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 게시
 -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 행정 - 기획행정 - 시민협력 - 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
 - 유튜브 :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검색
-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2. 1.(목) ~ 2024. 2. 1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인터넷 접수 (링크클릭 시 이동)
 - ①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회원가입
 - ② [사업신청]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 보조사업 예치유형 : 비예치형, 선택사유 : 서울특별시 공고 사항
- ※ (참고자료) ① 보탬e 교육 교재, ② 보탬e 유튜브 영상교육 (링크클릭 시 이동)
-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660-1390 (평일 09:00 ~ 18:00)
-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15.)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 신청 권장

7.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2월
- 제출서류
 - 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② 단체소개서 1부
 - ③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등은 대상 아님)

8. 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방법 : 최근 5년간 지원 여부에 따라 기존, 신규 단체로 구분 선정(비율은 위원회에서 정함)
- 선정기준 : 단체 역량, 사업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분 야	심사항목	100	심사내용
단체역량	전문성·책임성	15	전담인력 확보 및 단체실적과 신청사업의 유사성 등
	공익활동 실적	5	최근 3년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사업내용	공익 적합성 등	20	단체 설립목적 및 공익성 적합 여부, 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
	사업의 독창성	20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등

분 야	심사항목	100	심사내용
	사업문제 해결	15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추진방법 및 외부자원 연계성 등
	파급효과	15	수혜범위 적절성, 주민욕구 반영 여부, 서울시 전역 파급 가능성 등
예 산	예산 타당성	10	지원요구액 적절성, 인건비와 사업비 적절성 및 건전성 등
가점 사항		전년도 사업 탁월 단체 가점(5점), 의무적 자부담 비율 10% 이상 가점(5점)	

선정심사 고려사항

- 다양한 단체와 사업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정치적 활동, 영리 활동, 종교활동이 목적이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는 사업 선정 제외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장학금, 시상금 등),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선정 제외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 2023년까지는 심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단체 미선정
- 가감점 사항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탁월 단체는 5점 범위 가점 부여(미흡 단체는 지원 제외)
 -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10% 이상 5점 가점 부여
(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 전전년도 평가결과를 비영리민간단체 누리집,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공개 시 0점, 미공개 시 2점 감점, 전전년도 공익사업을 미수행 단체는 0점 처리
(※ 단, 전전년도 평가결과와 미공개에 대한 감점은 2025년부터 적용)
- 결과발표 : 2024. 3. 21.(목) 예정 (※ 발표 일자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누리집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 ※ 사업선정 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 신청자격 상실, 보조금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 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신규 개설
- 보조금은 사업기간 동안 두 차례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에 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 중간평가(서면 · 현장조사) 결과 미흡 단체는 2차 교부를 중단하고 미흡사항 보완 후 교부
-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가능
- 부정수급 행위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과금 징수, 벌칙(징역, 벌금) 부과 등의 조치 가능
-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는 미지원(사업비만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행사 개최 시 서울시 후원을 표시할 경우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절차」 준수(서울시 사전 검토·승인 후 사용)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로 문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5호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미술작품 공모 심의결과 공고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하여 ‘2024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심의안건: 시흥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미술작품 공모

2. 심의결과: 당선작 1작품

접수번호	심의결과	작품명	작품 이미지	작가명
2023-7	당선작	스페이스 배리어이션 (space variation)		손종철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02-2133-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1.29.(월)까지
- 제출자격: 미술작품 응모작가 및 유사작품 원작자
- 제출대상: 작품표절 등 허위사실, 불공정행위 등
 - ※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bmkim24@seoul.go.kr, 주무관 김보민)
-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 방법을 미준수한 자료는 검토 불가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6호

2024년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1. 심의일시: 2024. 1. 18.(목), 14:30
2. 심의장소: HJBC 세미나룸 A
3. 심의대상: 일반안전 10건(13작품)
4. 심의결과: 승인 6작품, 부결 7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02-2133-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1	성동구 성수동2가 279번지	조각	안시리움 (Anthurium)		○	
2	성북구 안암동 132-17 일대	조각	Origami_Deer	○		
3-1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조각	New bodies, 새 신체들	○		
3-2		조각	자발적 획		○	
3-3		조각	대칭행렬		○	
3-4		조각	42개의 조용한 증식		○	

2024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4	노원구 월계동 410-3	조각	Moon-Forest	○		
5	중구 을지로5가 99번지 외 7필지	조각	가족 나들이		○	
6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대	조각	Light Flow	○		
7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조각	별 하나 우주 하나		○	
8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조각	Cactus	○		

2024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9	서초구 반포동 12 외 1필지	조각	LOVE		○	
10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외 필지	조각	JOYFUL / ARTFUL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2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340호(2023.8.10.)로 공람 공고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고, 주민에게 재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 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재)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4. 1. 25. ~ 2024. 2. 8.(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주거정비정책팀)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유태운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ytyhjh99@seoul.go.kr
 - ※ 이메일 제출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발송 후 유선(☎2133-7204, 7206, 7207, 7194)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 변경사유 : 사회적·정책적 여건변화 및 제도변화 등에 따라 낙후된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동의 요건(변경) 및 반대동의 요건(신설)을 일부 개선·변경하고자 함
6. 공람방법 : 서울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서울시)에 게재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7.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및 -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 제3절 정비사업의 운영	•(주민동의율) 사업 초기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은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며, <u>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u>은 유지한다.	•(주민동의율) ----- -----, 주민의견에 따라 신속히 사업 추진방향 결정등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u>1/2 이상</u>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변경한다.
	•(신설)	•(입안 재검토, 취소)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다음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할 수 있다. -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시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현 행	변 경
		(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반대 시 -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시 -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시 * (조합 방식)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수 3/4 및 면적 1/2 이상) 고려, 실제 사업추진이 불가한 반대 동의요건 ** (공공재개발_단독) 구역지정 이후 직권해제 요건 고려 (추진위 구성 전 반대 30% 이상 시 직권해제 가능) - 입안 재검토의 경우 자치구청장은 다 음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재개발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야 한다. 【 입안 재검토 결정시 자치구 역할 】 (1단계 시행 후 필요시 2단계 즉시 시행) (1단계)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 계획 및 구청장 의견 제출 (→ 시 사업부서) (2단계) 주민 의견조사 실시하여 입안 취소 요건 등 확인 후 추진방향 결정 -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 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구 분	현 행	변 경																																																																																																		
본보고서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186쪽)	표 5-15. 대상지 선정기준 등 <table> <tr> <th data-bbox="385 317 554 372">구분</th><th data-bbox="554 317 726 372">정비구역 지정기준</th><th data-bbox="726 317 788 372">지정요건</th></tr> <tr> <td data-bbox="385 372 436 493" rowspan="3">대상지 선정기준</td><td data-bbox="436 372 554 415">주민동의</td><td data-bbox="554 372 726 415">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td></tr> <tr> <td data-bbox="436 415 554 458">구역면적</td><td data-bbox="554 415 726 458">면적 10,000㎡ 이상</td></tr> <tr> <td data-bbox="436 458 554 493">노후도</td><td data-bbox="554 458 726 493">동수의 2/3이상</td></tr> <tr> <td data-bbox="385 493 436 701" rowspan="5">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td><td data-bbox="436 493 554 548" rowspan="2">주민동의</td><td data-bbox="554 493 726 523">토지등소유자의 2/3~4/5</td></tr> <tr> <td data-bbox="554 523 726 548">토지면적의 1/2~4/5</td></tr> <tr> <td data-bbox="436 548 554 591" rowspan="2">노후도</td><td data-bbox="554 548 726 578">동수 2/3~4/5</td></tr> <tr> <td data-bbox="554 578 726 607">연면적 2/3~4/5</td></tr> <tr> <td data-bbox="436 591 554 635">도로연장률</td><td data-bbox="554 591 726 635">6m이상 도로연장률 25%~75%</td></tr> <tr> <td data-bbox="385 635 436 701" rowspan="2">세대밀도</td><td colspan="2" data-bbox="436 635 554 701">세대밀도 150~250</td></tr> <tr> <td colspan="2" data-bbox="436 701 554 731"></td></tr> <tr> <td data-bbox="385 731 436 1132" rowspan="11">참고자료</td><td data-bbox="436 731 481 929" rowspan="5">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td><td data-bbox="481 731 554 774">거주자 분포</td><td data-bbox="554 731 726 774">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td></tr> <tr> <td data-bbox="481 774 554 817">거주형태</td><td data-bbox="554 774 726 817">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td></tr> <tr> <td data-bbox="481 817 554 929">주민 생활수준</td><td data-bbox="554 817 726 929">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td></tr> <tr> <td data-bbox="481 929 554 1046" rowspan="2">거주자의향 조사 기준</td><td data-bbox="554 929 726 97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td></tr> <tr> <td data-bbox="554 972 726 1046">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td></tr> <tr> <td data-bbox="436 1046 481 1132" rowspan="4">지역특성</td><td data-bbox="481 1046 554 1089">장소적 특성</td><td data-bbox="554 1046 726 1089">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td></tr> <tr> <td data-bbox="481 1089 554 1207">주변입지 특성</td><td data-bbox="554 1089 726 1207">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td></tr> <tr> <td data-bbox="481 1207 554 1250" rowspan="4">일반특성</td><td data-bbox="554 1207 726 1250">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td></tr> <tr> <td data-bbox="554 1250 726 1293"></td></tr> <tr> <td colspan="2" data-bbox="436 1293 481 1336">신축건물비율</td><td data-bbox="554 1293 726 1336">10년 이하 건축물</td></tr> <tr> <td colspan="2" data-bbox="436 1336 481 1399">자가평가자료</td><td data-bbox="554 1336 726 1399">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td></tr> </table>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 선정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토지면적의 1/2~4/5	노후도	동수 2/3~4/5	연면적 2/3~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참고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표 5-15. 대상지 선정기준 등 <table> <tr> <th data-bbox="822 317 989 372">구분</th><th data-bbox="989 317 1162 372">정비구역 지정기준</th><th data-bbox="1162 317 1223 372">지정요건</th></tr> <tr> <td data-bbox="822 372 872 493" rowspan="3">대상지 선정기준</td><td data-bbox="872 372 989 415">주민동의</td><td data-bbox="989 372 1162 415">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td></tr> <tr> <td data-bbox="872 415 989 458">구역면적</td><td data-bbox="989 415 1162 458">면적 10,000㎡ 이상</td></tr> <tr> <td data-bbox="872 458 989 493">노후도</td><td data-bbox="989 458 1162 493">동수의 2/3이상</td></tr> <tr> <td data-bbox="822 493 872 701" rowspan="5">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td><td data-bbox="872 493 989 548" rowspan="2">주민동의</td><td data-bbox="989 493 1162 523">토지등소유자의 2/3~4/5</td></tr> <tr> <td data-bbox="989 523 1162 548">토지면적의 1/2~4/5</td></tr> <tr> <td data-bbox="872 548 989 591" rowspan="2">노후도</td><td data-bbox="989 548 1162 578">동수 2/3~4/5</td></tr> <tr> <td data-bbox="989 578 1162 607">연면적 2/3~4/5</td></tr> <tr> <td data-bbox="872 591 989 635">도로연장률</td><td data-bbox="989 591 1162 635">6m이상 도로연장률 25%~75%</td></tr> <tr> <td data-bbox="822 635 872 701" rowspan="2">세대밀도</td><td colspan="2" data-bbox="872 635 989 701">세대밀도 150~250</td></tr> <tr> <td colspan="2" data-bbox="872 701 989 731"></td></tr> <tr> <td data-bbox="822 731 872 1132" rowspan="11">참고자료</td><td data-bbox="872 731 918 929" rowspan="5">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td><td data-bbox="918 731 989 774">거주자 분포</td><td data-bbox="989 731 1162 774">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td></tr> <tr> <td data-bbox="918 774 989 817">거주형태</td><td data-bbox="989 774 1162 817">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td></tr> <tr> <td data-bbox="918 817 989 929">주민 생활수준</td><td data-bbox="989 817 1162 929">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td></tr> <tr> <td data-bbox="918 929 989 1046" rowspan="2">거주자의향 조사 기준</td><td data-bbox="989 929 1162 97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td></tr> <tr> <td data-bbox="989 972 1162 1046">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td></tr> <tr> <td data-bbox="872 1046 918 1132" rowspan="4">지역특성</td><td data-bbox="918 1046 989 1089">장소적 특성</td><td data-bbox="989 1046 1162 1089">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td></tr> <tr> <td data-bbox="918 1089 989 1207">주변입지 특성</td><td data-bbox="989 1089 1162 1207">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td></tr> <tr> <td data-bbox="918 1207 989 1250" rowspan="4">일반특성</td><td data-bbox="989 1207 1162 1250">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td></tr> <tr> <td data-bbox="989 1250 1162 1293"></td></tr> <tr> <td colspan="2" data-bbox="872 1293 918 1336">신축건물비율</td><td data-bbox="989 1293 1162 1336">10년 이하 건축물</td></tr> <tr> <td colspan="2" data-bbox="872 1336 918 1399">자가평가자료</td><td data-bbox="989 1336 1162 1399">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td></tr> </table>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 선정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토지면적의 1/2~4/5	노후도	동수 2/3~4/5	연면적 2/3~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참고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 선정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토지면적의 1/2~4/5																																																																																																		
	노후도	동수 2/3~4/5																																																																																																		
		연면적 2/3~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참고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 선정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토지면적의 1/2~4/5																																																																																																		
	노후도	동수 2/3~4/5																																																																																																		
		연면적 2/3~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참고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8.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시행

9. 경과조치

- 입안 동의율은 시행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시행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공람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에서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시행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입안 제안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붙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재)공람에 따른 의견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핸드폰)	
거주지 주소			
의견			
제출일	2024년 월 일		

구 고 시

◆ 서대문구고시 제2024-9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최초)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114호(2023.9.14.)로 결정되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3-1396호(2023.11.2.)로 열람공고 된 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최초)인가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 02-3140-8020, 도기환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교통시설(도로)
- 사업명칭 :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다. 사업규모

구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폭원(m)					
소로	2	9	국지도로	88	봉원동 45-1	신촌동 1-37	일반도로
소로	3	6	국지도로	164	신촌동 1-52	봉원동 41-6	일반도로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위치도 및 현황

○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봉원동 45-1 ~ 신촌동 1-37 구간)



위치도 및 현황

○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신촌동 1-52 ~ 봉원동 41-6 구간)



토 지 조 서

○사업명(구간) : 신촌동 근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봉원동 45-1 ~ 신촌동 1-37 구간)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	봉원동	45-1	공	421	125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2	봉원동	40-21	대	1426	4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333	정0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10	가처분	
								정0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21	가처분	
								정0철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33동801호	가처분	
3	봉원동	40-19	공	113	9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333				
4	봉원동	40-17	공	15	13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333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5	신촌동	1-192	천	182	1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6	신촌동	1-115	공	30	1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7	신촌동	1-38	공	799	213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8	신촌동	1-1	공	218	112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9	신촌동	1-85	도	102	4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0	신촌동	1-142	도	231	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1	신촌동	1-37	공	508	152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사업명(구간) : 신촌동 근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신촌동 1-52 ~ 봉원동 41-6 구간)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봉원동	41-7	전	84	8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미등기
2	봉원동	41-6	전	263	23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96-2				
3	봉원동	39-19	도	1	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4	봉원동	39-18	도	44	1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5	봉원동	39-14	도	133	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6	봉원동	39-20	도	68	4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7	봉원동	산2-15	임	90	82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8	봉원동	40-15	전	211	68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9	봉원동	신2-16	임	328	176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신3				
10	봉원동	38-5	도	66	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봉원동	신2-9	임	258	76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신3				
12	봉원동	신2-8	임	1032	58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신3				
13	봉원동	신2-23	공	22	17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신3				
14	신촌동	1-52	공	1939	11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5	신촌동	1-142	도	231	188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6	신촌동	1-37	공	508	143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7	신촌동	1-85	도	102	18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8	신촌동	1-38	공	799	15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 마포구고시 제2024-9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0호(2022.12.22.)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마포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마 포 구 청 장

I. 변경결정 취지

- 2022년 제19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22.06.27.) 심의 결과에 따라 전면공지 조성 방법을 변경하고, 건축계획 변경에 대한 마포구 건축심의위원회(2023.09.14.)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변경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기정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17% 이상	• 부지면적의 32.6% • 세부내용 - 공공임대주택 6.6%	기준 용적률 250%	모든 항목을 충족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 지역필요시설 26.0% - 창업지원센터 13.5% - 거주자우선주차장 12.5%	상한 용적률 600% 부여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8.83% : 21.17%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67.95% : 32.05%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41세대) - 29㎡, 31㎡, 37㎡, 43㎡, 46㎡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 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등 2 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 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및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 용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주민공동시설 446.08㎡ 계획 -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		
변경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17% 이상	• 부지면적의 32.62% • 세부내용 - 공공임대주택 6.74% - 지역필요시설 25.88% - 창업지원센터 13.15% - 거주자우선주차장 12.73%	기준 용적률 250%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8.97% : 21.03%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67.70% : 32.30%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43세대) - 29㎡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 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등 2 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 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및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 용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주민공동시설 352.84㎡ 계획 -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	상한 용적률 600% 부여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2019.06.20.기준)

주2) 향후, 건축설계 결과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단, 비주거 비율은 지상 용적률의 20% 이상,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변경) 사유서

구 분		적용기준	변경내용	변경근거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17% 이상	• 공공기여율 부지면적 변경 - 공공임대주택 6.74% - 지역필요시설 25.88% · 창업지원센터 13.15% · 거주자우선주차장 12.73%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 성화사업 운영기준」 내 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 변경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용적률 10% 이상	• 용적률 비율 변경 = 78.97% : 21.03%(주거 : 비주거)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전체 연면적 비율 변경 = 67.70% : 32.30%(주거 : 비주거)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60㎡이 하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건축계획 변경 - 공공임대주택 (43세대) · 29㎡ 계획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동교로변(15m, 25m), 양화로19길변(8m)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월드컵북로2길변(8m)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1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2m -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공개공지	• 동교로 및 월드컵북로2길 각각부(주요보행 결절점)에 공개공지 2개소 지정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썸지공원 형태로 조성 • 1개소 최소면적 45㎡ 이상 조성 ※ 전면공지와 중복 가능	
변경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동교로변(15m, 25m) 양화로19길변(8m), 월드컵북로2길변(8m)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개공지	• 동교로 및 월드컵북로2길 각각부(주요보행 결절점)에 공개공지 2개소 지정 • 일반인이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1개소 최소면적 45㎡ 이상 조성 ※ 전면공지와 중복 가능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폐지 • 월드컵북로2길변(8m)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신설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2022. 6. 27.) 결정사항 반영

나.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의 29.0% 이상 (1,370.83㎡)	• 공공기여율: 총 32.6%(1,541.12㎡) - 공공주택 20.2%(311.28㎡) - 지역필요시설 79.8%(1,229.84㎡) (창업지원센터 41.4%, 637.31㎡/ 거주자우선주차장 38.4%, 592.53㎡)	
변경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의 29.17% 이상 (1,370.83㎡)	• 공공기여율: 총 32.62%(1,541.86㎡) - 공공주택 20.66%(318.54㎡) - 지역필요시설 79.34%(1,223.32㎡) (창업지원센터 40.32%, 621.68㎡/ 거주자우선주차장 39.02%, 601.64㎡)	

주1) 「서울특별시 역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주2) 공공임대주택은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2023.2.1.)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로 매입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은 토지, 건축물 모두 기부채납함(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위치, 면적(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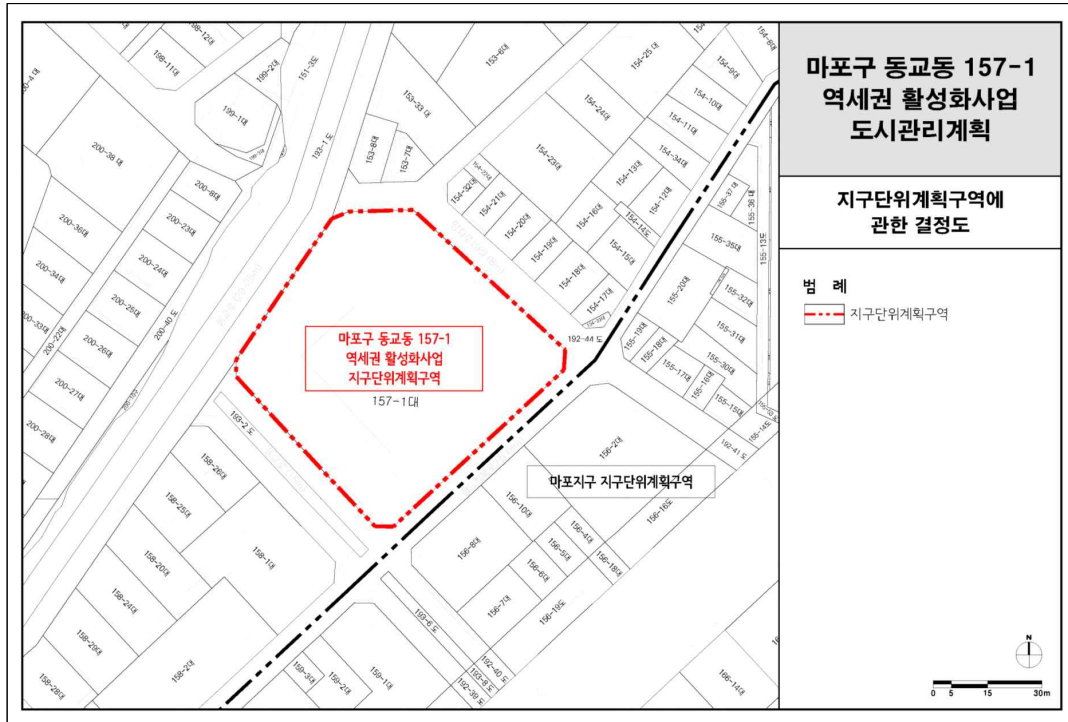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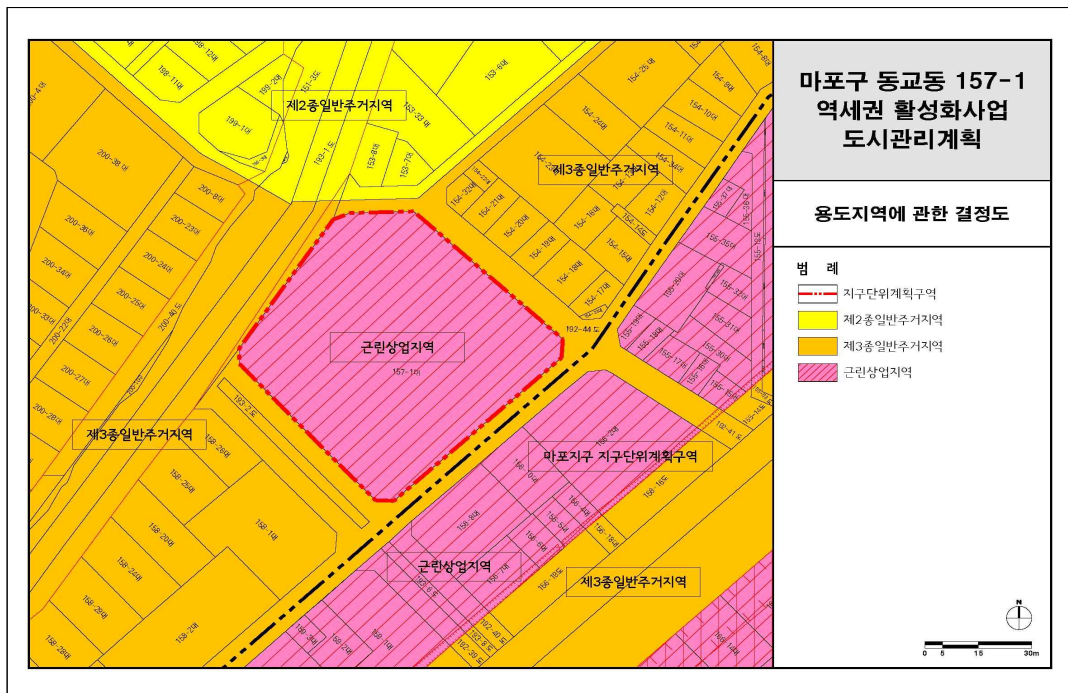
Ⅳ.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5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mapo.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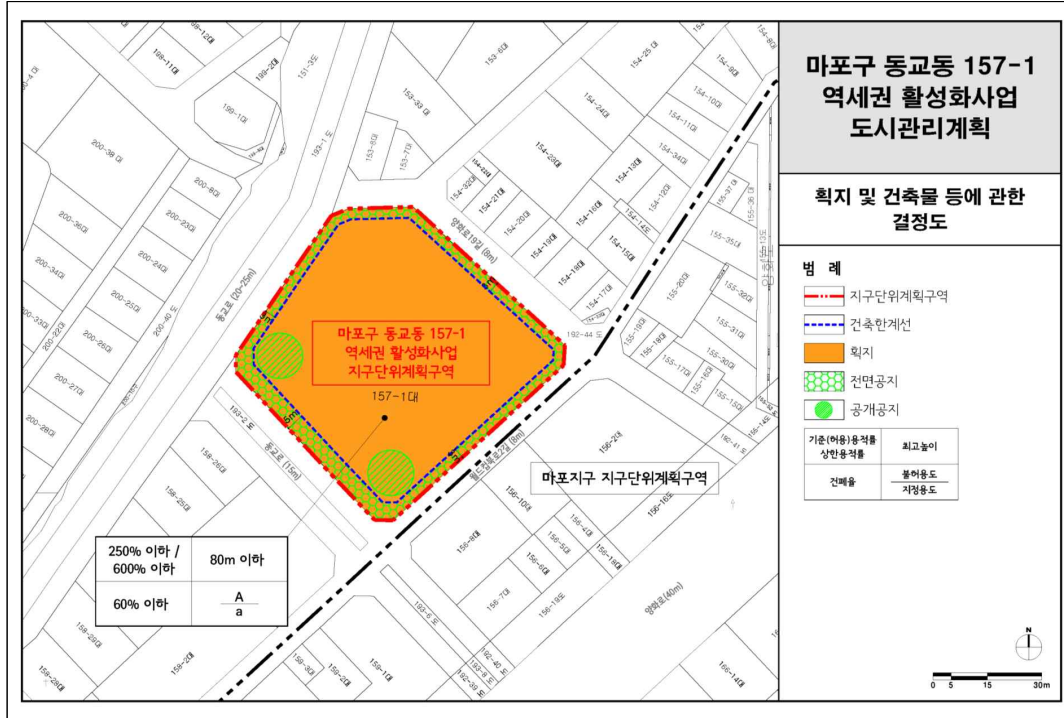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24-87호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광진구 광장동 242-4번지 일대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광장동 37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광진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문의 및 의견제출 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02-450-7673)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다. 열람(안) 주요내용

①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2)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온달공원	소공원	광장동 242-1	1,012	감)1,012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7호 (2016.5.12.)	
신설	1	-	소공원	광장동 248-24일원	-	증)677	67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온달공원	• 소공원 폐지 - A = 1,012㎡	• 공공청사(광장동 주민센터) 이전 및 신축에 따른 폐지
1	-	• 소공원 신설 - A = 677㎡	• 소공원(온달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1)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광장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광장동 242-1	-	증)1,012	1,012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동 주민센터	• 공공청사 신설 - A = 1,012㎡	• 노후청사(44년 경과)인 광장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공공청 사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②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1.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	어린이 공원	광장동 378번지	-	증)2,026	2,026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	• 어린이공원 신설 - A = 2,026㎡	• 소공원(온달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2) 신설

2)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광장동 378번지 일원	3,158	감)2,026	1,132	광진구 고시 제2005-17호 (2005.4.7.)	
변경			광장동 378-26번지 일원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축소 - 3,158㎡→1,132㎡(감 2,026㎡) • 위치변경 - 광장동 378번지 일원 → 광장동 378-26번지 일원	• 온달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 추가 신설(공공공지 축소) 및 위치변경

라. 관계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동대문구공고 제2024-101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내 소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관련 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공원조성계획(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공원종류 : 소공원 1개소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1-4일원
3. 면 적 : 소공원(2,670.80㎡)
4. 조성내용 : 기반시설 468㎡, 휴양시설 8㎡, 운동시설 42㎡, 녹지 및 기타 2,152.8㎡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02-2127-477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1-4일원)

구 분		최 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등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670.8	518	-	-	-	59	
기 반 시 설	소 계	468	468	-	-	-	-	
	도 로	468	468	-	-	-	-	
	광 장	-	-	-	-	-	-	
조경시설		-	-	-	-	-	-	
유희시설		-	-	-	-	-	-	
휴양시설		8	8	-	-	-	15	
교양시설		-	-	-	-	-	-	
운동시설		42	42	-	-	-	6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38	
녹지 및 기타		2,152.8	-	-	-	-	-	
시 설 률 (법정 20%)		(518 / 2,670.8㎡) × 100 = 19.40 %						
건 폐 율 (법정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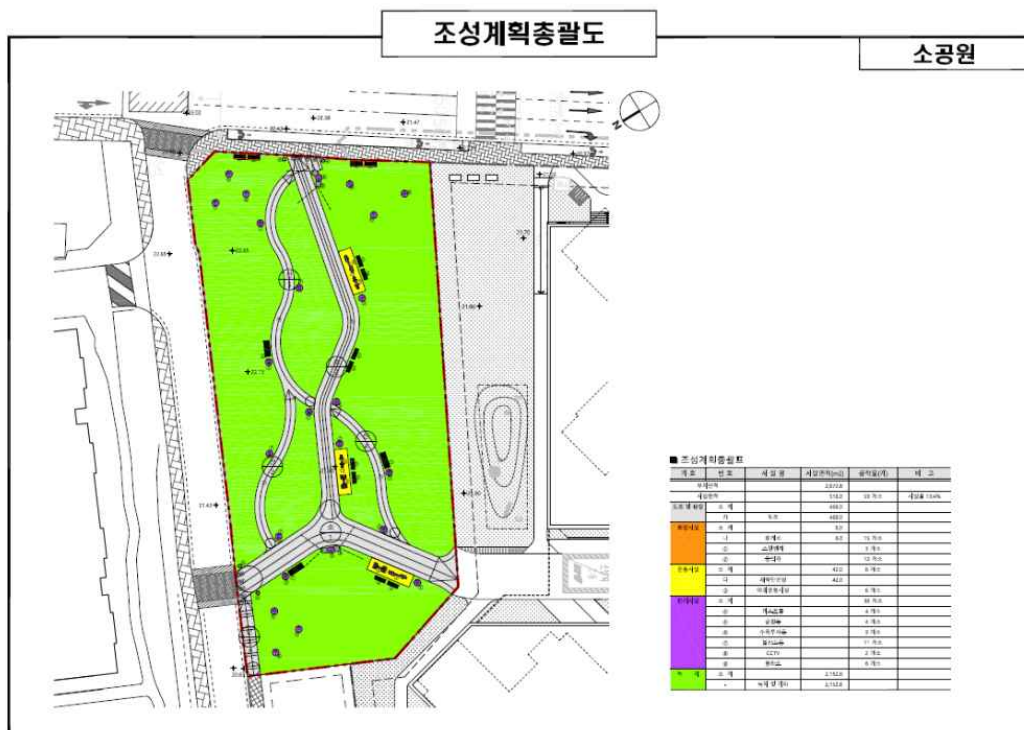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최 초								비 고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670.8	518	-	-	-	-	59	
기반 시설	소 계				-	-	-	-	-	
	소로	소-1	154.1	154.1	-	-	-	-	-	
	소로	소-2	155.4	155.4	-	-	-	-	-	
	산책로	산-1	24.0	24.0	-	-	-	-	-	
	산책로	산-2	39.1	39.1	-	-	-	-	-	
	산책로	산-3	59.3	59.3	-	-	-	-	-	
	산책로	산-4	36.1	36.1	-	-	-	-	-	
휴양 시설	소 계		76.32	76.32	-	-	-	-	15	
	휴게소	나	8	-	-	-	-	-	-	
	스윙벤치	①	-	-	-	-	-	-	3	
	등의자	②	-	-	-	-	-	-	12	
운동 시설	소계		42	-	-	-	-	-	6	
	체력단련장	다	42	-	-	-	-	-	-	
	야외운동시설	③							6	
관리 시설	소 계		24.40	24.40	-	-	-	-	38	
	미시트폴	④	-	-	-	-	-	-	4	
	공원등	⑤	-	-	-	-	-	-	4	
	수목투사등	⑥	-	-	-	-	-	-	9	
	블라드등	⑦	-	-	-	-	-	-	11	
	CCTV	⑧	-	-	-	-	-	-	2	
	블라드	⑨	-	-	-	-	-	-	8	
녹지 및 기타	소계		2,152.8	-	-	-	-	-	-	
	녹지		2,152.8	-	-	-	-	-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96.6	468.0				
신설	소로	소 계			95.7	309.5				
신설		3	1	4.0	37.7	154.1	진입로	대지경계	대지경계	
신설		3	2	2.5	58.0	155.4	접입로	소-1	대지경계	
실설	산책로	소 계			100.9	158.5				
신설		3	1	2	12.0	24.0	연결로	대지경계	소-1	
신설		3	2	1.5	25.6	39.1	연결로	소-1	산-2	
신설		3	3	1.5	39.5	59.3	연결로	소-2	소-2	
신설		3	4	1.5	23.8	36.1	연결로	소-1	소-2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도



◆ 서대문구공고 제2024-1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7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12호(2014.1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8호(2018.12.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1호(2023.04.13.)로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 02-330-17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7-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사업명칭 : 북아현동 1017-8번지 일대 도로개설

다. 사업규모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1	(2)	20	집산도로	982 (80)	북아현동 138-24	북아현동 187-18	일반도로
중로	2	(1)	15	집산도로	514 (75)	북아현동 176-114	대현동 65-16	일반도로
중로	3	(9)	12	국지도로	254 (100)	북아현동 176-87	북아현동 176-111	일반도로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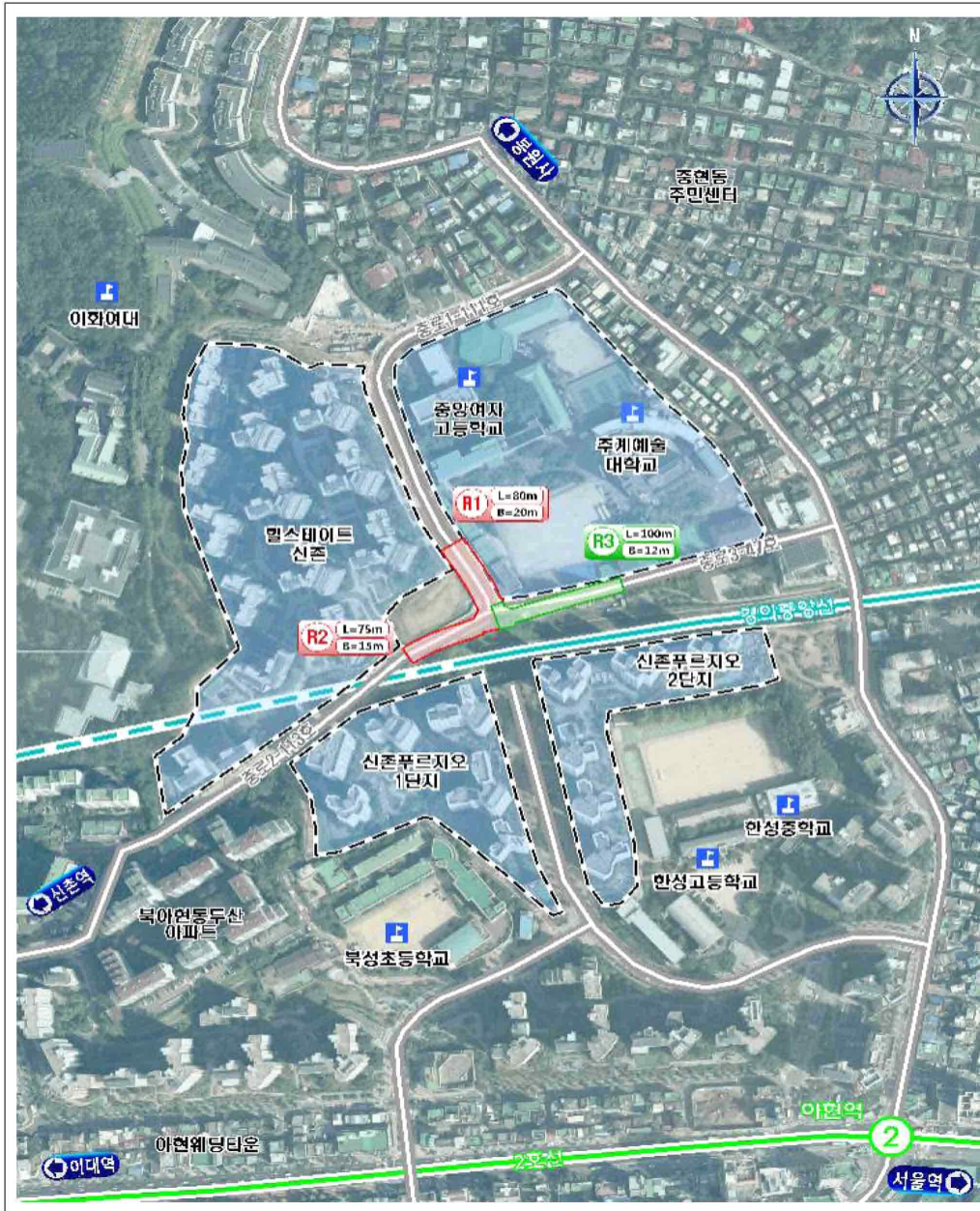
바.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02-330-1770)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참조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위 치 도 (북아현동 1017-8일대)



토 지 조 서

○사업명(구간) : 북아현동 과선교(도로교, 녹지교) 연결도로 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	북아현동	210-24	공	1439.1	57.56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해당사항 없음		
2	북아현동	1017-8	도	11088.7	일부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해당사항 없음		
3	북아현동	1011-11	도	1778.9	일부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해당사항 없음		
4	북아현동	251-95	도	2041	1530.7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해당사항 없음		
5	북아현동	1011-7	도	129.7	129.7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해당사항 없음		
6	북아현동	210-26	도	138.8	138.8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해당사항 없음		
7	북아현동	251-96	도	419.3	54.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해당사항 없음		

◆ 구로구공고 제2024-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호(2014. 1.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 구로구고시 제2020-16호(2020. 2. 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구로구고시 제2023-15호(2023. 1.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고척동 85-41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내역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 기간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고척동 85-41호 주변 도로개설공사 (고척동 85-41 ~ 87-2호)	도로개설 B=6m, L=94m	구로구고시 제2020-16호 (2020. 2. 6.)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구로구고시 제2023-15호 (2023. 1.16.)	

라. 관련 서류 : 게재 생략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4-1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구로구고시 제2021-1호(2021.01.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 구로구고시 제2021-38호(2021.02.2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고시 제201-94호(2021.04.29.) 및 구로구고시 제2022-192호(2022.12.22.), 구로구고시 제2023-170호(2023.09.2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내역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기간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오류동 13-228 ~ 317-1)	도로개설 B=6m, L=95m	구로구고시 제2021-1호 (2021. 1. 7.)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구로구고시 제2021-94호 (2021. 2.25.)	
		구로구고시 제2022-192호 (2022.12.22.)	
		구로구고시 제2023-170호 (2023. 9.27.)	

라. 관련 서류 : 게재 생략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청고 제2024-184호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88호(1984.9.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8호(2018.6.21)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1)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원(면적: 97,360.9㎡)

2) 변경계획 개요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개포 근린공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97,360.9	97,360.9	-	10,373.21	10,963.65	증 590.44

3) 주요(변경) 내용: 개포도서관 신축 및 휴식광장 설치 등

나. 공원조성계획 조서(안) 및 도면(안) : 따로붙임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3)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면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진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진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제	97,360.9	10,373.21	1	1,349.21	2,417.23 (2,101.32)	140	97,360.9	10,963.65	1	1,523.65	14,358.88 (3,685.63)	140	증 590.44㎡
	소 계	6,943	6,943					8,311	8,311					증 1,368㎡
	기반 시설	4,972	4,972					4,972	4,972					-
	광 장	1,971	1,971					3,339	3,339					증 1,368㎡
조 경 시 설		107	107					107	107					-
휴 양 시 설		331	331				63	331	331				63	-
운 동 시 설							2						2	-
교 양 시 설		1,242.04	1,242.04	1	1,242.04	2,246.06 (1,930.15)	1	1,416.53	1,416.53	1	1,416.53	14,187.76 (3,514.51)	1	증 174.49㎡
편 익 시 설		1,750.17	1,750.17		107.17	171.17	6	798.12	798.12		107.12	171.12	6	감 952.05㎡
판 리 시 설							68						68	-
녹지 및 기타		86,987.69						86,397.25						감 590.44㎡
시설률 (법정 40%이하)		10.65% (산출근거 = 10,373.21/97,360.9x100)						11.26% (산출근거 = 10,963.65/97,360.9x100)						증 0.61%
진폐율 (법정 15%이하)		1.38% (산출근거 = 1,349.21/97,360.9x100)						1.56% (산출근거 = 1,523.65/97,360.9x100)						증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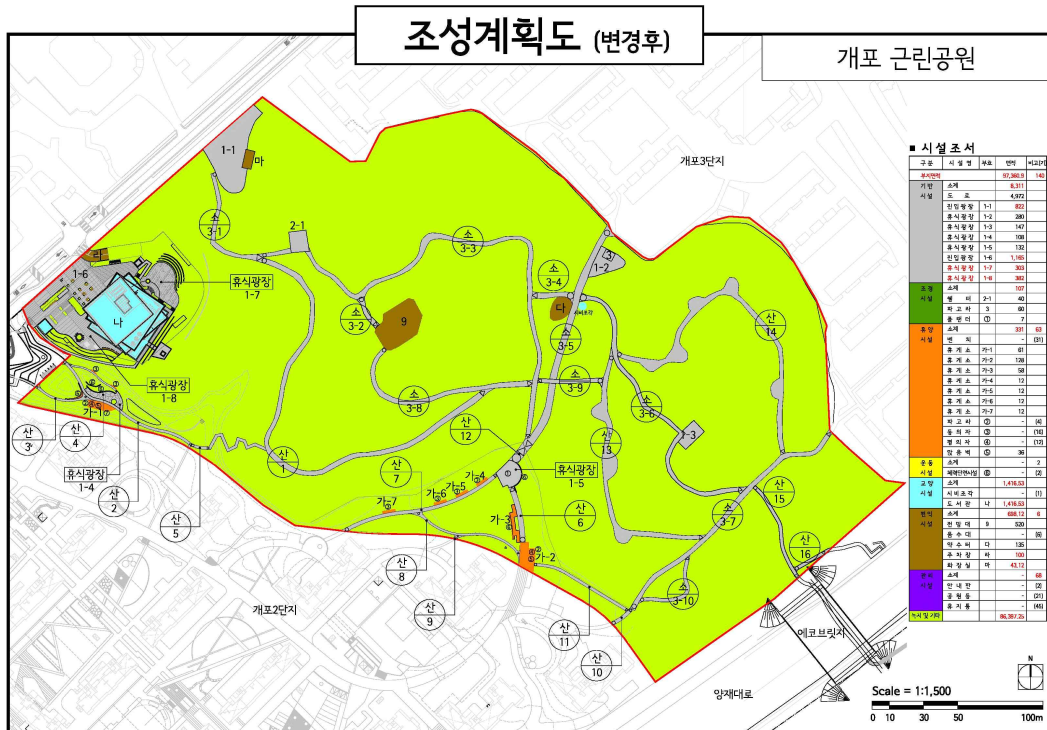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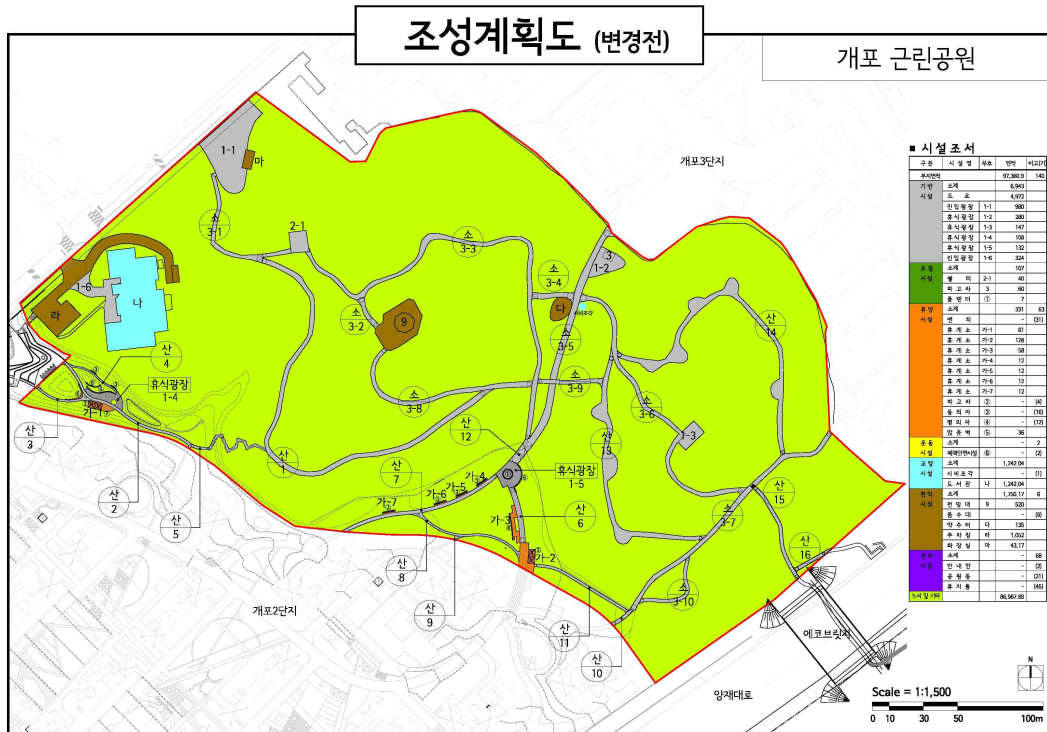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천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중량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중량물 (기)	
합 계	소 계			97,360.9	10,373.21		1,349.21	2,417.23 (2,101.32)	140			97,360.9	10,963.65		1,523.65	14,358.88 (3,685.63)	140	중 590.44			
	도 로			6,943	6,943							8,311	8,311					중 1,368			
	광 장			1,971	1,971							4,972	4,972								
	진입광장	1-1	개포동139	980	980						1-1	개포동139	822	822							
기 반 시 설	휴식광장	1-2	개포동139	280	280						1-2	개포동139	280	280							
	휴식광장	1-3	개포동139	147	147						1-3	개포동139	147	147							
	휴식광장	1-4	개포동139	108	108						1-4	개포동139	108	108							
	휴식광장	1-5	개포동139	132	132						1-5	개포동139	132	132							
	진입광장	1-6	개포동139	324	324						1-6	개포동139	1,165	1,165					중 841		
	휴식광장	1-7	개포동139								1-7	개포동139	303	303					중 303		
	휴식광장	1-8	개포동139								1-8	개포동139	382	382					중 382		
조 경 시 설	소 계			107	107							107	107								
	벤치	2-1	개포동 139	40	40						2-1	개포동 139	40	40							
	파고타	3	개포동 139	60	60						3	개포동 139	60	60							
	플랜터	①	휴식광장1-5	7	7						①	휴식광장1-5	7	7							
	소 계			331	331				63			331	331					63			
	벤치								(31)									(31)			
	휴게소	가-1	공원 내	61	61						가-1	공원 내	61	61							
	휴게소	가-2	공원 내	128	128						가-2	공원 내	128	128							
	휴게소	가-3	공원 내	58	58						가-3	공원 내	58	58							
	휴게소	가-4	공원 내	12	12						가-4	공원 내	12	12							
휴 양 시 설	휴게소	가-5	공원 내	12	12						가-5	공원 내	12	12							
	휴게소	가-6	공원 내	12	12						가-6	공원 내	12	12							
	휴게소	가-7	공원 내	12	12						가-7	공원 내	12	12							
	파고타	②	공원 내			목재			(4)		②	공원 내			목재				(4)		
	등의자	③	공원 내			목재			(16)		③	공원 내			목재				(16)		
	평의자	④	공원 내			목재			(12)		④	공원 내			목재				(12)		
	앉음벽	⑤	공원 내	36	36	석재					⑤	공원 내	36	36	석재					(12)	

구분	시설명	본 경 전						공작물 (기)	본 경 후						공작물 (기)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원면적 (㎡)	구 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원면적 (㎡)	구 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2							2	
	채력단련시설	⑥	후계소 가-1					(2)							(2)	
교양시설	소 계			1,242.04	1,242.04		2,246.06 (1,930.15)	1		1,416.53	1,416.53		14,187.76 (3,514.51)	1	총 174.49	
	사비조각		산채로1					(1)						(1)		
	도서관	나	개포동139	1,242.04	1,242.04		2,246.06 (1,930.15)	나	개포동139	1,416.53	1,416.53		14,187.76 (3,514.51)		총 174.49	
	소 계			1,750.17	1,750.17		107.17	6		798.12	798.12		107.12	6	총 952.05	
평안시설	전망대		개포동139	520	520		64	128		개포동139	520	520		64	128	
	음수대		공원내					(6)		공원내					(6)	
	약수터	다	개포동139	135	135				다	개포동139	135	135				
	주차장	라	도서관	1,052	1,052				라	도서관	100	100				합 952
	화장실	마	전입광장	43.17	43.17		43.17		마	전입광장	43.12	43.12		43.12		합 0.05
	소 계							68							68	
관리시설	안내관		공원내					(2)		공원내					(2)	
	공원등		공원내					(21)		공원내					(21)	
	휴게물		공원내					(45)		공원내					(45)	
누계	소 계			86,987.69						개포동139	86,397.25				합 590.44	
	누계		개포동139	86,987.69						개포동139	86,987.69				합 590.44	

다. 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2,342	4,972				
당초	소로	3	1	2	74	148	전입도로	1-1 전입광장	소-3-3	
당초	소로	3	2	2	21	42	연결도로	소-3-3	9 전담대	
당초	소로	3	3	2	300	600	연결도로	소-3-1	소-3-5	
당초	소로	3	4	2	24	48	연결도로	소-3-5	소-3-3	
당초	소로	3	5	2	144	288	전입도로	단지	산책로-12	
당초	소로	3	6	2	192	384	연결도로	소-3-5	소-3-7	
당초	소로	3	7	2	188	336	전입도로	산책로-10	단지	
당초	소로	3	8	2	121	242	연결도로	9 전담대	소-3-3	
당초	소로	3	9	2	38	76	연결도로	산책로 13	소-3-3	
당초	소로	3	10	2	50	100	연결도로	소-3-7	소-3-7	
당초	산책로		1	1.5	300	450	산책	소-3-1	소-3-8	
당초	산책로		2	1.5	95	143	산책	근린광장	산책로-5	
당초	산책로		3	1.2	32	48	산책	근린광장	산책로-2	
당초	산책로		4	0.9	33	31	산책	근린광장	1-4 휴식광장	
당초	산책로		5	1.5	10	21	산책	산책로-1	산책로-2	
당초	산책로		6	3	33	100	산책	가-2 휴게소	1-5 휴식광장	
당초	산책로		7	2	98	193	산책	단지	1-5 휴식광장	
당초	산책로		8	1.2	68	92	산책	산책로-7	가-2 휴게소	
당초	산책로		9	1.2	3	7	산책	단지	산책로-8	
당초	산책로		10	2	15	29	산책	단지	소-3-7	
당초	산책로		11	1.5	62	93	산책	가-2 휴게소	산책로-10	
당초	산책로		12	5	10	54	산책	1-5 휴식광장	소-3-5	
당초	산책로		13	2	156	555	산책	소-3-7	소-3-7	
당초	산책로		14	2	195	725	산책	소-3-6	소-3-7	
당초	산책로		15	2	60	121	연결도로	소-3-7	양재미로 녹지연결로	
당초	산책로		16	2	20	46	연결도로	산책로-15	양재미로	



◆ 강남구청고 제2024-214호
늘벗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83호(1986.5.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1번지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 늘벗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1)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1번지(면적: 19,812.3㎡)

2) 변경계획 개요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늘벗 근린공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1 번지	19,812.30	19,812.30	-	7,553.49	7,606.92	증 53.43

3) 주요(변경) 내용: 실내놀이터 신축 및 부대 주차장 설치 등

나. 공원조성계획 조서(안) 및 도면(안) : 따로붙임

다.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4)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늘벗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강남구 대치동 501번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계	19,812.30	7,553.49	-	-	-	19,812.30	7,606.92	306.35	306.35	109	-
	소계	5,477.62	5,477.62	-	-	-	5,477.62	5,477.62	-	-	-	-
	도로	2,876.89	2,876.89	-	-	-	2,876.89	2,876.89	-	-	-	-
	광장	2,600.73	2,600.73	-	-	-	2,600.73	2,600.73	-	-	-	-
조경 시설		-	-	-	-	-	-	-	-	-	-	-
휴양 시설		222.55	222.55	-	-	-	222.55	222.55	-	-	69	-
유희 시설		523.02	523.02	-	-	-	814.88	814.88	220.36	220.36	-	증 291.86㎡
운동 시설		1,207.96	1,207.96	-	-	-	915.60	915.60	-	-	18	감 292.36㎡
교양 시설		-	-	-	-	-	-	-	-	-	-	-
편익 시설		122.34	122.34	-	-	-	176.27	176.27	85.99	85.99	-	증 53.93㎡
관리 시설		-	-	-	-	-	-	-	-	-	22	-
녹지 및 기타		12,258.81	12,258.81	-	-	-	12,205.38	12,205.38	-	-	-	감 53.43㎡
시설률 (법정40%이하)		(7,553.49㎡ ÷ 19,812.30㎡) × 100% = 38.13%				(7,606.92㎡ ÷ 19,812.30㎡) × 100% = 38.40%				-		
건폐율 (법정20%이하)		(85.99㎡ ÷ 19,812.30㎡) × 100% = 0.43%				(306.35㎡ ÷ 19,812.30㎡) × 100% = 1.55%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교차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교차물 (기)			
기반 시설	합계			19,812.30	7,553.49	-	-	-	-	-	-	19,812.30	7,606.92	-	-	306.35	306.35	109	-	
	소계		-	5,477.62	5,477.62	-	-	-	-	-	-	5,477.62	5,477.62	-	-	-	-	-	-	
		도로		대치동 501	2,876.89	2,876.89	-	-	-	-	-	대치동 501	2,876.89	2,876.89	-	-	-	-	-	-
	광장	가	대치동 501	2,600.73	2,600.73	-	-	-	-	-	가	대치동 501	2,600.73	2,600.73	-	-	-	-	-	-
		가-1	대치동 501	2,308.21	2,308.21	-	-	-	-	-	가-1	대치동 501	2,445.28	2,445.28	-	-	-	-	-	-
휴양 시설	소계	가-2	대치동 501	155.45	155.45	-	-	-	-	-	가-2	대치동 501	155.45	155.45	-	-	-	-	-	-
			-	222.55	222.55	-	-	-	69	-	대치동 501	222.55	222.55	-	-	-	-	69	-	
	휴게소	나	대치동 501	222.55	222.55	-	-	-	-	나	대치동 501	225.55	225.55	-	-	-	-	-	-	-
		나-1	대치동 501	50.00	50.00	-	-	-	-	나-1	대치동 501	50.00	50.00	-	-	-	-	-	-	-
		나-2	대치동 501	104.30	104.30	-	-	-	-	나-2	대치동 501	104.30	104.30	-	-	-	-	-	-	-
파고라	나-3	대치동 501	68.25	68.25	-	-	-	-	나-3	대치동 501	68.25	68.25	-	-	-	-	-	-	-	-
	①	대치동 501	-	-	-	-	-	-	①	대치동 501	-	-	-	-	-	-	-	3	-	-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육각정	②	대치동 501	-	-	-	-	-	1	②	대치동 501	-	-	-	-	-	-	1	-
	테이블	③	대치동 501	-	-	-	-	-	6	③	대치동 501	-	-	-	-	-	-	6	-
	등의자	④	대치동 501	-	-	-	-	-	51	④	대치동 501	-	-	-	-	-	-	51	-
	평의자	⑤	대치동 501	-	-	-	-	-	6	⑤	대치동 501	-	-	-	-	-	-	6	-
	앉음벽	⑥	대치동 501	-	-	-	-	-	2	⑥	대치동 501	-	-	-	-	-	-	2	-
	소계		-		523.02	523.02	-	-	-	-		대치동 501	814.88	814.88	-	-	-	-	증 291.86㎡
유하 시설	실내놀이터	다	대치동 501	-	-	-	-	-	-	다	대치동 501	417.90	417.90	-	-	220.36	220.36	-	신설 증 417.90㎡
	어린이 놀이터	라	대치동 501	523.02	523.02	-	-	-	-	라	대치동 501	396.98	396.98	-	-	-	-	-	감 126.04㎡
	소계			1,207.96	1,207.96	-	-	-	18	-	대치동 501	915.60	915.60	-	-	-	18	감 292.36㎡	
목조 시설	체력단련장	마	대치동 501	292.36	292.36	-	-	-	-	-	대치동 501	-	-	-	-	-	-	-	감 292.36㎡
	체력단련시설	⑦	대치동 501	-	-	-	-	-	18	⑦	대치동 501	-	-	-	-	-	-	18	-
		⑦-1	대치동 501	-	-	-	-	-	1	⑦-1	대치동 501	-	-	-	-	-	-	1	-

구분	시설명	전						후						비고				
		경			면			경			면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⑦-2	대치동 501	-	-	-	-	-	1	⑦-2	대치동 501	-	-	-	-	-	1	-
		⑦-3	대치동 501	-	-	-	-	-	1	⑦-3	대치동 501	-	-	-	-	-	1	-
		⑦-4	대치동 501	-	-	-	-	-	1	⑦-4	대치동 501	-	-	-	-	-	1	-
		⑦-5	대치동 501	-	-	-	-	-	1	⑦-5	대치동 501	-	-	-	-	-	1	-
		⑦-6	대치동 501	-	-	-	-	-	1	⑦-6	대치동 501	-	-	-	-	-	1	-
		⑦-7	대치동 501	-	-	-	-	-	1	⑦-7	대치동 501	-	-	-	-	-	1	-
		⑦-8	대치동 501	-	-	-	-	-	1	⑦-8	대치동 501	-	-	-	-	-	1	-
		⑦-9	대치동 501	-	-	-	-	-	1	⑦-9	대치동 501	-	-	-	-	-	1	-
		⑦-10	대치동 501	-	-	-	-	-	1	⑦-10	대치동 501	-	-	-	-	-	1	-
		⑦-11	대치동 501	-	-	-	-	-	1	⑦-11	대치동 501	-	-	-	-	-	1	-
		⑦-12	대치동 501	-	-	-	-	-	1	⑦-12	대치동 501	-	-	-	-	-	1	-
		⑦-13	대치동 501	-	-	-	-	-	1	⑦-13	대치동 501	-	-	-	-	-	1	-
		⑦-14	대치동 501	-	-	-	-	-	1	⑦-14	대치동 501	-	-	-	-	-	1	-

구분	시설명	변경			경전			변경			하수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⑦-15	대치동 501	-	-	-	-	-	1	⑦-15	대치동 501	-	-	-	-	-	1	-
		⑦-16	대치동 501	-	-	-	-	-	1	⑦-16	대치동 501	-	-	-	-	-	1	-
		⑦-17	대치동 501	-	-	-	-	-	1	⑦-17	대치동 501	-	-	-	-	-	1	-
		⑦-18	대치동 501	-	-	-	-	-	1	⑦-18	대치동 501	-	-	-	-	-	1	-
	게이트볼장	바	대치동 501	915.60	915.60	-	-	-	-	마	대치동 501	915.60	915.60	-	-	-	-	-
	소개			122.34	122.34	-	-	-	-	-	대치동 501	176.27	176.27	-	-	-	-	증 53.93㎡
편의 시설	주차장	사	대치동 501	-	-	-	-	-	-	바	대치동 501	53.93	53.93	-	-	-	-	신설 증 53.93㎡
	음수대	아	대치동 501	8.09	8.09	-	-	-	-	사	대치동 501	8.09	8.09	-	-	-	-	-
	공중화장실	자	대치동 501	114.25	114.25	-	-	-	-	아	대치동 501	114.25	114.25	-	-	85.99	85.99	-
관리 시설	소개			-	-	-	-	-	-	-	대치동 501	-	-	-	-	-	22	-
	안내판	⑧	대치동 501	-	-	-	-	-	-	⑧	대치동 501	-	-	-	-	-	-	5
	블라드	⑨	대치동 501	-	-	-	-	-	-	⑨	대치동 501	-	-	-	-	-	-	15

구분	시설명	경 전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9-1	대치동 501	-	-	-	-	-	2	9-1	대치동 501	-	-	-	-	-	2	-
		9-2	대치동 501	-	-	-	-	-	4	9-2	대치동 501	-	-	-	-	-	13	-
		10	대치동 501	-	-	-	-	-	2	10	대치동 501	-	-	-	-	-	2	-
	웁스	10-1	대치동 501	-	-	-	-	-	1	10-1	대치동 501	-	-	-	-	-	1	-
		10-2	대치동 501	-	-	-	-	-	1	10-2	대치동 501	-	-	-	-	-	1	-
		소계			12,258.81	12,258.81	-	-	-	-		대치동 501	12,205.38	12,205.38	-	-	-	-
특지 특기 타	특지	-	대치동 501	12,258.81	12,258.81	-	-	-	-	대치동 501	12,205.38	12,205.38	-	-	-	-	감 53.43㎡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	-	-	-	-	
변경					-	2,870.47	-	-	-	
당초		소 계			-	-	-	-	-	
변경					-	1,179.62	-	-	-	
당초	소로	-	-	-	-	-	-	-	-	
변경		3	1	7.0	54.26	365.63	진입로	서측경계	산책로1	
당초		-	-	-	-	-	-	-	-	
변경		3	2	9.0	10.75	96.85	진입로	남측경계	산책로3	
당초		-	-	-	-	-	-	-	-	
변경		3	3	4.0	26.02	136.47	연결로	소로3-1	소로3-4	
당초		-	-	-	-	-	-	-	-	
변경		3	4	5.0	89.07	445.54	연결로	소로3-3	산책로7	
당초		-	-	-	-	-	-	-	-	
변경		3	5	3.0	38.61	135.13	연결로	동측광장	관리사무소	
당초	산책로	소 계			-	-	-	-	-	
변경					-	1,690.85	-	-	-	
당초		-	-	-	-	-	-	-	-	
변경		-	1	3.0	94.73	290.72	산책로	소로3-1	동측광장	
당초		-	-	-	-	-	-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	2	2.0	83.51	169.43	산책로	소로3-1	동측광장	
당초		-	-	-	-	-	-	-	-	
변경		-	3	3.0	174.75	578.35	산책로	산책로7	소로3-1	
당초		-	-	-	-	-	-	-	-	
변경		-	4	3.0	38.94	120.35	산책로	산책로3	소로3-4	
당초		-	-	-	-	-	-	-	-	
변경		-	5	3.0	2.5	8.47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25	
당초		-	-	-	-	-	-	-	-	
변경		-	6	2.5	1.7	4.25	산책로	산책로7	어린이 놀이터	
당초		-	-	-	-	-	-	-	-	
변경		-	7	3.0	45.57	132.16	산책로	산책로8	소로3-4	
당초		-	-	-	-	-	-	-	-	
변경		-	8	3.0	14.38	44.15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7	
당초		-	-	-	-	-	-	-	-	
변경		-	9	3.0	21.66	64.30	산책로	남측경계	어린이 놀이터	
당초		-	-	-	-	-	-	-	-	
변경		-	10	2.0	7.32	14.68	산책로	동측 휴게소	산책로17	
당초		-	-	-	-	-	-	-	-	
변경		-	11	1.5	2.5	3.76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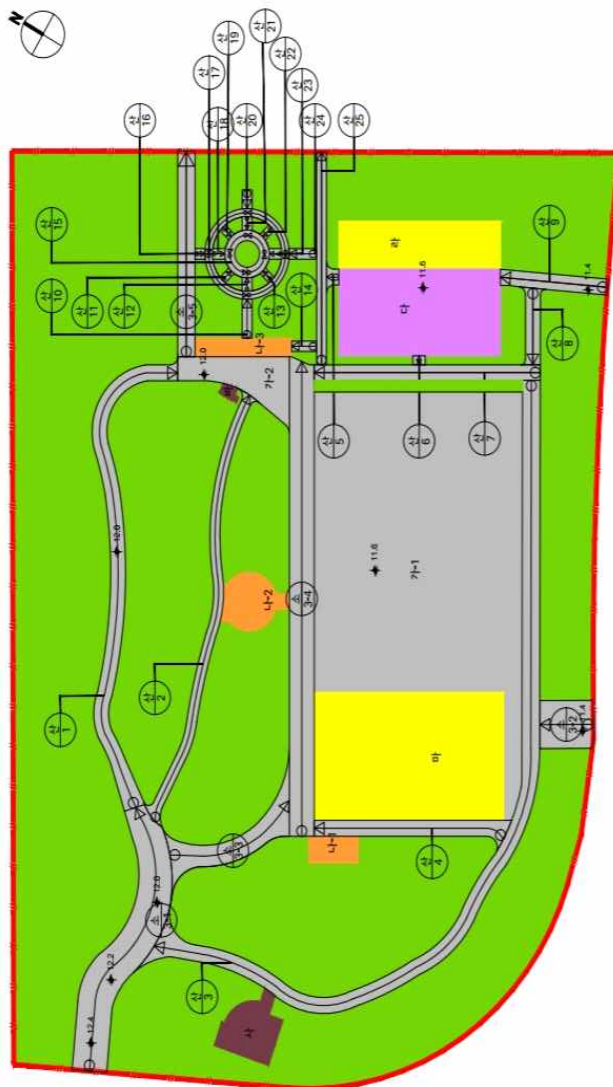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	-	-	-	-	-	-	
변경		-	12	1.5	2.5	5.03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5	
당초		-	-	-	-	-	-	-	-	
변경		-	13	1.5	2.5	3.76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5	
당초		-	-	-	-	-	-	-	-	
변경		-	14	2.0	5.0	9.80	산책로	산책로25	동측 휴게소	
당초		-	-	-	-	-	-	-	-	
변경		-	15	2.0	21.99	44.00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2	
당초		-	-	-	-	-	-	-	-	
변경		-	16	2.0	2.0	4.04	산책로	소로3-5	산책로17	
당초		-	-	-	-	-	-	-	-	
변경		-	17	1.5	48.69	73.04	산책로	산책로16	산책로16	
당초		-	-	-	-	-	-	-	-	
변경		-	18	2.0	2.5	5.03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5	
당초		-	-	-	-	-	-	-	-	
변경		-	19	1.5	2.5	3.76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5	
당초		-	-	-	-	-	-	-	-	
변경		-	20	2.0	3.5	7.04	산책로	대상지동측	산책로17	
당초		-	-	-	-	-	-	-	-	
변경		-	21	2.0	2.5	5.03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	-	-	-	-	-	-	
변경		-	22	1.5	2.5	3.76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5	
당초		-	-	-	-	-	-	-	-	
변경		-	23	2.0	2.5	5.03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5	
당초		-	-	-	-	-	-	-	-	
변경		-	24	2.0	5.5	11.0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17	
당초		-	-	-	-	-	-	-	-	
변경		-	25	2.0	39.93	79.87	산책로	산책로7	대상지동측	
당초		-	-	-	-	-	-	-	-	

한글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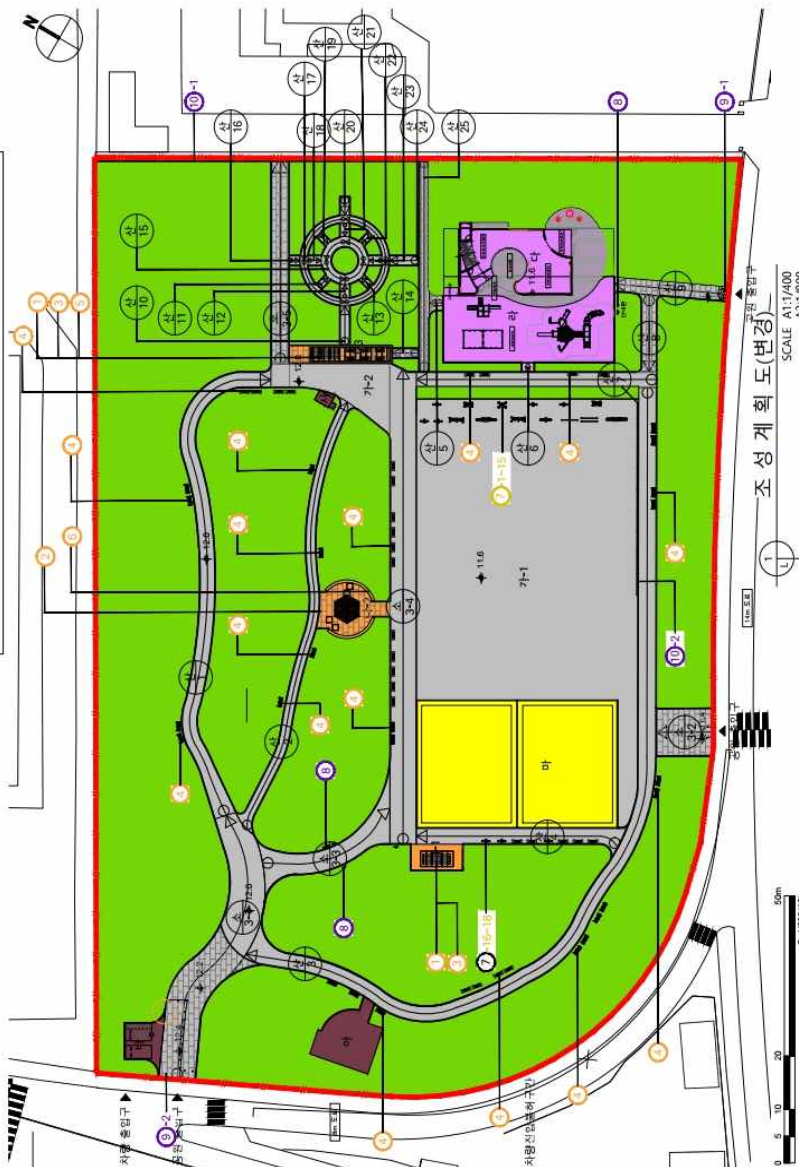
조성계획도(기정)

하
다
리
다
못
리

[illegible][illegible]

조성계 획도(변경)

하
다
리
니
호
리

[illegible][illegible]

조성계획도(변경)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교량안전과 췌삼호건설개발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7층 타-7154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86-1번지 인근	27㎡	한남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현장사무실	2023. 7.24. ~ 2024. 3.15.	2024. 1. 1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사단법인 한국해양교육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52, 한강파라다이스	신곡수중보 상류 1km ~ 잠실대교 (한강)	수상레저사업	세일링요트 3척 모터보트 2척 파티보트 1척	2024.1.17 ~ 2024.12.31.	2024. 1.17.
			마리나사업	세일링요트 2척 모터보트 2척 비즈보트 1척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수상스키 중앙연합회 (대표 김**)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성산대교 ~ 가양대교	수상시설물 550.17㎡	수상레저사업	2024.1.1. ~ 2024.12.31.	2024. 1.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대표 봉**)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청담대교 ~ 동호대교	수상시설물 383.4㎡	수상스키 훈련장	2024.1.1. ~ 2024.12.31.	2024. 1.15.

사업소공고

◆ 서울역사박물관공고 제2024-4호

유 물 구 입 공 고

서울특별시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조례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역사박물관장

1. 구입 분야 및 대상 유물

번호	구입 분야(주제)	주요 구입 대상 유물
1	조선시대 서울	○ 한성부 및 한양 사람들의 의식주 관련 자료 ○ 경화사족·중인 등 관련 자료 ○ 조선시대 서울 관련 회화, 지도, 고문서, 문집 등 ○ 한양도성, 탕춘대성, 북한산성 관련 자료 ○ 『무예도보통지』, 『무과방목』 등 조선시대 군사훈련 관련 자료 ○ 조선시대 소의문(昭義門) 관련 자료 ○ 조선시대 순성(巡城) 관련 자료 ○ 조선시대 사법제도 관련
2	개항·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서울	○ 서울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 ○ 서울의 근대식 출판·인쇄 관련 자료 ○ 서울 거주 외국인 관련 자료 ○ 철도, 전기, 전화, 호텔 등 신문물 관련 자료 ○ 일제강점기 경성부 도시계획, 의식주 관련 자료 ○ 일제강점기 생활사 관련 자료 ○ 러일전쟁~한일병합까지 국권피탈 관련 자료 ○ 개항·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서울 관련 회화, 지도, 사진, 영상, 단행본 등 ○ 근대기 서울 및 서울 근교의 하이킹 관련 자료

번호	구입 분야(주제)	주요 구입 대상 유물
3	해방 이후 서울	○ 서울의 주택, 보건, 위생, 교육 등 관련 자료 ○ 서울의 도시계획, 공업화, 도시화, 교통 등 관련 자료 ○ 이촌향도(離村向都), 인구 등 관련 자료
4	서울 생활사	○ 서울의 결혼 문화 관련 자료 ○ 서울 시민의 소비 경제 활동 관련 자료 ○ 서울 시민의 의식주 생활사 관련 유물 ○ 서울 동북부(노원, 도봉, 중랑, 강북구) 관련 자료 ○ 서울 시민의 출산·육아 관련 자료 ○ 청계천 및 주변 생활사 자료 - 일제 강점기 ~ 현대까지 지도, 사진, 하천관리, 문서 등 - 판자촌 생활 및 위생, 구호 관련 사진, 영상, 생활유물 등
5	특별전 관련	○ 지하철 1, 2호선 건립 관련 자료 ○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회화, 고문서, 외국자료 등) ○ 연지·효제 지역 관련 자료 (동촌, 어의궁, 연동교회·경신학교 등 기독교 선교자료 등) ○ 종로 및 보신각 관련 자료 - 조선시대~현재까지 사료, 홍보물, 사진, 영상 등
6	기타	○ 경교장 및 김구와 주변 인물 관련 자료 ○ 달쿠사 관련 자료 ○ 북촌 한옥 관련 자료 ○ 돈의문, 교남동 등 서대문 일대 관련 자료

2. 참가 자격 :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등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및 불법 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접수 기간 : 2024년 2월 15일(목) ~ 2월 22일(목) 18:00 까지

※주말 제외, 평일 접수 / 2월 2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됩니다.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중 택일

가. 홈페이지 접수 : museum.seoul.go.kr(매도접수 페이지)

나. 이메일 접수 : mkart@seoul.go.kr

※ 접수 완료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가. 홈페이지 접수 : 매도신청 페이지에서 자료입력 및 유물사진 첨부

나. 이메일 접수 : ①, ②, ③번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④유물 사진과 함께 송부

① 매도신청서 1통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 매도신청 유물목록은 ②번 양식에 별도 작성

② 유물목록 1통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통 :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④ 유물사진 파일

- 파일명을 유물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송부
- 파일형식 : JPG, GIF, PNG(1점 당 1파일 이상, 1파일 5MB 이하)

※ 사진 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해 주세요.

6. 실물 접수 :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가. 실물 접수 시 제출 서류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 개인 :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제출(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대리접수 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유물 구입 가격 :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8. 구입 결정

가.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해 구입 유물 선정

나. 선정 유물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다.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9. 소유권 이전 :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전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출처 및 취득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음

다.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

라. 유물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02-724-0158)로 문의

기 타

◆ 강남소방서공고 제2024-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법」 위반 소방시설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부재 및 연락 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강 남 소 방 서 장

예정된 행정처분	1차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당사자	상호	동화지엠(주)
	대표자	최*영
	업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강남2005-2호 (2005-01-19)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62, 202호(일원동)
위반사항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된 상태로 30일 경과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29조제2항	
적용법규	○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제3호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8] 2. 개별기준의 나.의 3) 1차 -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등록취소	

의견제출	기관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정 도 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삼성동)			전화 번호	02)6981-7523
	전자우편	yoyo8889@seoul.go.kr			팩스 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2024년 2월 4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2월 5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7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영등포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더원소방기술	제영등포-2024-0001호 (2024.1.16.)	원종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502호	02-2675-7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관리업담당(☎02-6981-7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 강동구 천호동 660-1번지
 - 면 적 : 7,515.8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로 매설
 - 개 요 : 가스관로 매설
5. 점용기간 : (당초) 2019.01.12. ~ 2024.01.11.
(변경) 2024.01.17. ~ 2029.01.16.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7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84-21 중 일부
 - 면 적 : 75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 내 역 : 반려견 놀이터 1개소
5. 점용기간 : 2024.01.19. ~ 2029.01.18.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06.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2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장(수도권수도사업단)
 - 주 소 :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11(갈현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33-3번지 일원
 - 면 적 : 313.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도권광역상수도(1단계) 노후관 개량사업(2차)
 - 내 역 : 작업구 설치 1개소
5. 점용기간 : 2024.1.22. ~ 2024.5.14.
6. 공사기간 : 2024.1.22. ~ 2024.5.14.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